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2013. 12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미래창조과학부 · 외교부 ·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특허청 · 관세청 · 검찰청 · 경찰청 · 해양경찰청 · 무역위원회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2013. 12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미래창조과학부 · 외교부 ·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특허청 · 관세청 · 검찰청 · 경찰청 · 해양경찰청 · 무역위원회

창조경제,
지식재산권 보호로부터 시작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기발한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에 두고 경제부흥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지식재산의 존중과 보호에 관한 사회의 인식제고와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 혁신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질 때 꽃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기본법('11.5)을 제정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11.7)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국민의 불법저작물 이용경험이 2008년 61.4%에서 2012년 32.4%로 낮아졌고, 위조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 활용 체계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국민과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에 대한 성찰과 함께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이번에 발간하는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수행한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발간될 이 보고서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 12월

국무총리 정홍원

지식재산 보호가 튼튼한 우리 경제를 만듭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는 비단 신산업과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기존 지식의 창조적 활용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ICT와 제조업의 접목, 전통산업의 브랜드화 그리고 문화예술 콘텐츠와 기술의 융·복합 등이 창조경제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자 매개체로서,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존 산업이나 제품의 브랜드, 디자인 및 콘텐츠 등의 가치를 높여 세계적인 명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냅니다.

여기에서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의 결과인 지식재산을 얼마나 적절하게 보호하고 보상하는지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즉, 지식재산이 확대 재생산되어 사회와 경제 전반을 변혁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무단 도용되어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지재권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첫 발간한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에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한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성과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법령 개정을 비롯해서 침해 단속 및 수사 강화, 기술적 보호조치 확산, 교육 및 홍보 확대 그리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 발간이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높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실성 있는 보호정책 수립의 계기가 되는 한편, 그동안 국내외에서 저평가되었던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윤종용

지식재산 보호는 창조경제 생태계의 토대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시대, 우리는 기업 주도의 경제활동을 넘어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세계적 상품과 서비스로 구현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합심하여 추진 중인 창조경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패기를 가진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들의 창의적 지식재산과 혁신적 활동의 성과물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구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과학과 기술, 감성 및 문화가 어우러져 풍요로운 창조경제 생태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고품질의 지식재산권으로 발전되고, 지식재산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보호되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 새로운 산업, 고부가가치 시장과 일자리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성과와 노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매년 발간 예정인 이번 보고서는 지식재산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국내외에 소개하고 공유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여, 창의와 혁신의 열매인 지식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존중되는 창조경제 문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지식재산 보호,
21세기 지식강국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무형의 지식재산은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개인 · 기업은 물론 국가발전의 핵심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활발히 유통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에 따라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민관위원이 합심하여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등 지식재산 창출 · 보호 ·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전국 28개 검찰청에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 침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기술유출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식재산이 활발하게 창출 ·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을 망라한 모든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지식재산 보호 환경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는 지식재산 보호 정책의 현황과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해 주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보고서 발간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모든 관계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보고서가 정부기관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서 널리 활용되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법무부 장관 황교안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끄는 힘, 지식재산

이 세상에는 자신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어도 자신의 것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지식'이라고 합니다.

인류는 앞서 창조되고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가면서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인류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인은 '지식'에 내재하고 있는 나눔과 공유의 가치를 실천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 문화융성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와 혜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이 제대로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정책 발전을 위한 참으로 귀중하고 알찬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지식재산을 통해 소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넓고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를 위해 고견을 전해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과, 발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셨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플랫폼 구축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는 노동, 자본 위주의 전통적 산업 사회에서 지식재산이 국부 창출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12년에 미국 상무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2010년 국내 총생산(GDP)의 35%를 차지하고, 4,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식이 재산이 되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식과 상상력, 창의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 경제의 핵심 기반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발명과 창작을 유도하는 기폭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표권 및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재권 보호 강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지재권 보호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삼성-애플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기업이 국제 지재권 소송의 주된 타깃이 되고 있고, 신흥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 제품을 모방하는 카피켓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지재권 제도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지재권이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분쟁 컨설팅, IP-DESK 등의 지원 사업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지재권 분야의 국제 무역 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그 중심 역할을 맡고, 관련 부처와 기업들이 합심해서 참여한다면 지식재산 강국의 꿈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허청에서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번 보고서 발간이 지식재산 일류 국가 실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 12월

특허청장

목차

Contents

제1장 ›› 지식재산 보호정책 현황

제1절 서론 … 20
제2절 산업재산권 … 24
제3절 저작권 … 38
제4절 신지식재산권 … 41

‹‹ 제2장 지식재산 보호 환경

제1절 국내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 143
제2절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보호체계 강화 … 151
제3절 소프트웨어 보호수준 강화 … 155
제4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160
제5절 지식재산권의 국제협력 확대 … 162
제6절 신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 166

제1절 서론 … 2
제2절 지식재산 보호정책 방향 … 5
제3절 지식재산 관리기관 및 보호정책 추진 체계 … 12
제4절 지식재산 보호법령 … 14
제5절 주요 정책 및 사업 … 15

제3장 ››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성과

제1절 제도개선 … 58
제2절 침해대응 및 단속활동 강화 … 70
제3절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 … 88
제4절 지식재산 보호기술의 고도화 … 103
제5절 예방 및 인식제고 … 111
제6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 지원 … 120
제7절 국제협력 확대 … 128
제8절 부처 간 협업 확대 … 136

‹‹ 제4장
지식재산 보호현안과 향후 대응방향

부록 ››
전문용어, 주요통계, 참고문헌 … 171

제 1 장

지식재산 보호정책 현황

••• 제1절 서 론

토지 · 노동 · 자본과 같은 유형자산이 경쟁력의 원천이었던 산업사회는 정보 · 지식을 활용한 기술력 · 브랜드 · 디자인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였다.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어 제조업보다 지식정보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대되었고, 경제 · 산업구조는 지식재산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 저작권,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 보유 정도와 가치가 미래 성장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지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에 발맞춰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을 통한 가치 창출, 기술혁신 및 산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창의적 지식재산을 산업 전반에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형성하는 등 창조경제 실현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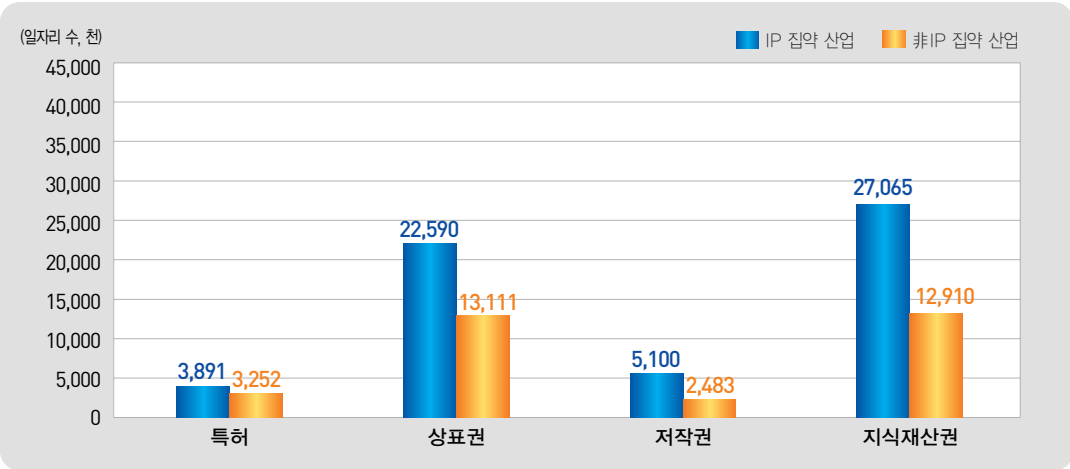

〈그림 1-1-1〉「지식재산과 미국경제」, 미 상무부(2012년 3월)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짐으로써 국가간 · 기업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시대가 도래하였다. 기존 보호무역의 주요 수단이었던 반덤핑 제소 비중이 줄고, 지식재산권침해를 근거로 한 수출입금지 등 국경조치가 강화된 것에서 이러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반덤핑을 통한 무역제재는 '98년 이후 연평균 약 2%씩 감소하고 있으나, 특허침해를 근거로 한 수입금지 결정은 연평균 15%씩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각 국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하기 위해서 핵심 지식재산의 축적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사업의 수익을 무형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또는 핵심특허를 보유한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표준화를 진행하는 등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후발 추격기업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수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냄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는 등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아울러, 강력한 지재권 전략 수립 · 분쟁 대응 등을 위해 지재권 전담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기업의 가치 가운데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식재산의 창출 · 활용 · 보호 능력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 활성화는 기술 간 융 · 복합을 넘어 문화와 기술 산업이 결합된 '창조경제'로 진화함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의 신시장('Blue Ocean' or 'Blue Sky') 창출을 가능케 한다. 미국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이 총 수출의 74%를 차지하고 약 5천 6백만 개의 직 · 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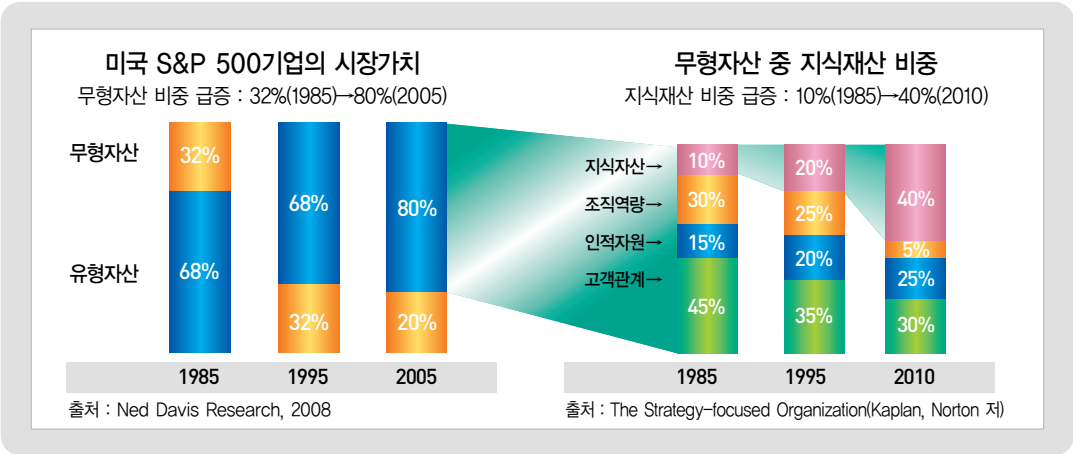

〈그림 1-1-2〉 미국 S&P 500 기업의 시장가치 :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 비중

우리나라는 문화 · 예술 · S/W · 디지털 콘텐츠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의 창출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 부문에서 국내기업의 글로벌화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선도 기업이 되더라도 경쟁기업의 모방과 침해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더욱이 지식재산권침해의 양상과 정도는 나날이 깊어지고 정교해지고 있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식재산의 보호정책을 강화하여야만 급증하는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1) 2012 study by the U.S. Chamber's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2012년 미국 회의소 글로벌 지재권센터 보고서)

지식재산이란[2)]

'지식재산' (IP: 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 정보 · 기술,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지식재산은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 디자인 · 상표,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물, 소프트웨어는 물론 신품종 · 유전자원 · 전통지식 · 빅데이터 등 모든 분야에서 창출 된다. 특히, 경제 · 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신지식재산' 이라고 한다.

'지식재산권' 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의해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4)]로서, 크게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며,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으로 세분화된다. 신지식재산권은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지식 등 과학기술과 지식이 창의적으로 접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표 1-1-1 지식재산권 분류〉

종 류	권 리	정 의	주무부처
산업재산권	특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	특허청
	상표권	자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부여되는 권리[5)]	특허청 관세청
	실용신안권	물품의 형상 · 구조 · 조합에 관한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	특허청
	디자인권	물품의 외관에 관한 미적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 상호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하여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	특허청
저작권	저작권	인간의 지적능력을 통해 창작한 미술, 음악, 영화, 만화, 캐릭터, 건축설계, 시, 소설, 소프트웨어, 게임 등과 같은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	문화체육관광부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지리적 표시 등 부가가치 창출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관한 권리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특허청 등
영업비밀	영업비밀	경제적 가치있는 비공개 기술 · 비기술 정보 등을 법령으로 보호	특허청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자료집(2013.02)

3)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

4)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3호

5) 2004년 개정 상표법은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2012년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의 보호체계를 구축하였음

•••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방향

1. 국내

세계 경제는 창의적인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특허, 디자인,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무형의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산업사회에서 이룩한 성과를 지식기반 사회에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전환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5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동 년도 7월 28일 민관 합동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2011년 11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관한 최초의 중장기 국가전략이자 지식기반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을 마련하였으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과 재원배분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2011년부터 위원회 산하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창출 · 보호 · 활용 · 기반 · 신지식재산 등 5개 전문위원회와 2개의 특별전문위원회, 23개 관계부처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은 지식재산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창출 · 보호 · 활용 분야와 창출 · 보호 · 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분야로 구분된다. 각 분야별로 투입 가능한 정책자원 및 정책과정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별로 핵심과제를 도출할 경우 보호분야는 권리화, 침해방지, 분쟁해결을 정책자원 및 정책과정은 권리 보호의 신속화 및 품질 제고, 국내 및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방지, 분쟁해결의 신속화 · 전문화, 실질적 보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분야의 신속한 권리화 및 보호 수준 제고를 목표로 정책이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 창출 · 보호 · 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식재산 보호분야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비를 목표로 지식재산 심사 · 등록의 안정성 제고,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식재산 분쟁 해결제도 정비를 전략 목표로 하고 있다. 신속한 권리화를 위해 산업재산권 심사처리 기간의 단축 및 품질을 제고하고 글로벌 심사협력 강화 등을 통해 권리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침해의 양상도 다변화되고 있어, 디지털화 등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한 기술개발, 국경조치 강화 및 수사 인력 확충 ·

역량 제고 등 지재권 침해 대응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기술 · 영업비밀의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정비와 정책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보유 재재권에 대한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바, 해외 지재권 지원 기관의 기능 강화 및 일관적 · 체계적인 지재권 통상대응 체제 구축 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수익 누출을 방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여 침해 유인을 차단하고 소송 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1-2-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그림 1-2-2〉 발명의 날

〈표 1-2-1〉「제1차(2012-2016)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비전, 정책방향 및 전략목표

비전 2016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

지식재산 창출 · 보호 · 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5대 정책방향	20대 전략목표
가치 있는 지식재산 창출 체계 촉진	1. 연구개발 체제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2. 콘텐츠, 브랜드 ·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3. 창조형 · 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4. 대학 · 공공(연)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제고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비	5. 지식재산 심사 · 등록의 안정성 제고 6.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7.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보호 강화 8. 지식재산 분쟁 해결제도 정비
지식재산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현	9.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10.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11.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12.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13.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14.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15. 지식재산 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16.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신지식재산 보호 · 육성 체계 정립	17. 신품종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18. 생물자원 보존 · 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19.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20.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 마련

2. 해외 주요국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감에 따라 전통적으로 강력한 지식재산권 제도를 선호해왔던 선진국은 물론이고 과거 지식재산 제도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많은 신흥국들도 자국의 실정에 맞는 친(親)지식재산 정책을 앞 다투어 펼치고 있다.

통상환경 또한 지식재산권과 결부되어 사태와 양상이 보다 복잡하게 되었다.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WTO/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체제 출범 직후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게 TRIPS 협정의 온전한 이행을 집중적으로 요구해왔다. 즉 지재권과 관련한 통상압력의 초점은 개도국의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흥국의 기술과 산업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던 핵심 시장에 새로운 경쟁의 기운이 조성되었다. 과거 단순 모방자 또는 추격자에 머물렀던 신흥국들이 경쟁자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을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봉쇄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최근 국제 특허분쟁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근거한 국경조치 등이 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가. 미국

미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아시아 신흥국이 추격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역정책과 연계한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81), 반도체배치설계('94), 소프트웨어('94), BM특허(Business Model Patent) 도입('98)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재권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특허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Court of Appeal for the Federal Circuit)을 설립함으로써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특허권자의 승소확률이 62%에서 90%로 높아졌다.

2000년 이후에는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親지식재산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품질위주의 특허정책 「2007~2012 전략계획」을 펼침으로써 모방하기 어려운 강한 특허창출을 유도하였다.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기관들 간의 협력 · 조정 강화와 인력 · 예산의 확보를 위해 2008년 10월에는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 조직의 우선화법」(PRO-IP Act of 2008;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8)을 제정하고 지재권 집행 및 단속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 Enforcement Coordinator)을 신설하였다. 이후 2010년

6월에는 PRO-IP Act에 근거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인 "지식재산집행공동전략"을 수립하였다.

나. 일본

일본은 2002년부터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을 표방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총리의 주재 하에 지적재산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지식재산 정책을 범정부차원의 정책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2013년에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저작권·브랜드 등 지식재산전반에 대한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였다. 특히 지식·문화적 재산을 포함한 콘텐츠 관련 산업분야가 향후 일본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반영하여 콘텐츠 비즈니스 및 일본 브랜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식재산 보호정책 차원에서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추진해나갔다. 2003년 관세정률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국경이동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2004년에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소송의 관할권을 일원화하고 지식재산권 위반사항에 대한 통관조치·조사를 세계에서 가장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초기 기본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이를 점차 콘텐츠·국제표준 획득 등의 전략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 지 10년째를 맞이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의 지적재산 정책 비전」을 수립하여 발표(2013.6.7)하였으며, 향후 동 비전을 바탕으로 ①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재시스템의 구축, ② 중소·벤처기업의 지재 매니지먼트 강화 지원, ③ 디지털·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한 환경정비, ④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강화라는 4개의 지적재산 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다. 중국

중국은 1980년대 초 상표법과 특허법을 제정한 후 약 20년간은 전 세계 지재권 분야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으나, 2005년 이후 '국가지식재산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2008년에는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발표하는 등 지재권 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국가 지재권 사업발전 12.5 계획(2011~15)"을 수립하여 동 기간에 사회 전반적 제도개선과 과학기술 업무 진흥, 지재권 보호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중국의 지재권 출원량은 매년 20%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2011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량(526,412건)이 처음으로 미국(504,089건)을 추월하였으며, 2012년에도 발명특허 출원 652,777건, 상표 출원 1,648,316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지재권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타 기업 제품에 대한 모조품 유통 등 권리침해 현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중국 전 지역 법원에서 접수된 지재권 민사사건이 87,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으며, 그중 저작권 소송이 53,848건, 상표권 소송이 19,815건, 특허 소송이 9,680건 접수되는 등 지재권 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중국정부도 이러한 모조품 유통과 지재권 분쟁 최소화를 위해 매년 강력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2013년 8월 중국 상표법을 개정(2014.5.1 시행 예정)하였으며, 중국 특허법과 저작권법 또한 현재 개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액 증액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검토되고 있어서 향후 지재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재권 활용 측면에서의 중요 요소인 지재권 담보대출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중국은 이미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012년도 기준 특허 · 상표 · 저작권 등 지재권 담보 대출액이 383억 1천만 위안(한화 약 6조 9천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무형자산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라. 유럽

유럽은 EU차원에서 지식재산권 제도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1973년에는 '유럽특허조약' (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의 채택으로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에 출원하면 모든 체약국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했으며, 이후 유럽 내 국가별 특허제도를 완전히 대체하는 공동체 특허제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R&D 사업 중 57%는 이미 있는 기술에 대한 투자임을 밝힘으로써 1998년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위원회 지원 R&D 사업에 대하여 특허를 통한 중복투자 여부를 조사토록 하는 등 연구개발 · 기술혁신 정책을 지식재산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지식기반경제의 도전에 대응하고 지식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전략의 필요를 인식하여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 2008"을 발표하여 EU차원에서 지식재산권 제도의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강화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개도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한 침해방지

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현재 각국별로 진행되는 특허소송제도를 개혁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발생하는 특허소송을 전담할 단일 특허법원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유럽단일특허법원 협약에 대하여 각 국별로 비준절차가 진행 중이고, 실무적으로 단일 특허법원에 대한 상세한 절차 규칙(Rules of Procedure)과 소송비용 책정 등을 포함한 제반 준비가 2014년 또는 늦어도 2015년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단일 특허법원을 중심으로 특허 침해 및 무효소송절차가 일원화되면 소송비용이 절감되고 법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각국 법원의 판결이 모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실현할 수 있다.[6]

유럽은 또한 지난 30여년 간 역내 통합 노력의 일환으로 특허의 출원 · 심사 · 등록 전 과정을 포괄하는 특허제도 통합을 시도해왔다. 지난 2012년 12월 EU 회원국들은 이노베이션 보호 증진을 위한 'EU통합특허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으며 EU 회원국인 25개 국가(EU회원국 27개국 중 이탈리아, 스페인 제외)에서 특허 출원 · 심사 등록이 일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출원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EU 통합특허는 제3의 선택으로 기존의 유럽특허, 회원국 국내특허, EU 통합특허 중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는 EU국가 전체에서 유효한 단일 특허의 성격을 지니며 특허절차 일원화로 고비용 · 저효율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7]

6) 정영미, 「유럽특허개혁 프로그램 · 단일특허 및 단일특허법원을 중심으로」, 특허와상표 제812호 6~7면
7) 박진석, '특허제도 통합으로 이노베이션 유럽이끈다', 나라경제, 2013.2

••• 제3절 지식재산 관리기관 및 보호정책 추진 체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정책 관련 추진체계는 2011년 7월 설립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장)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 활용 · 보호 등 각 부문별로 정부 부처에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식재산 보호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 권리별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산권은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 무역위원회) · 기획재정부(관세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집행은 법무부(검찰청) · 안전행정부(경찰청) ·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에서 단속, 수사 등을 포함한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신품종, 생물자원과 같은 신지식재산권의 경우 농림부 및 산림청 등에서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전문적인 지식재산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지식재산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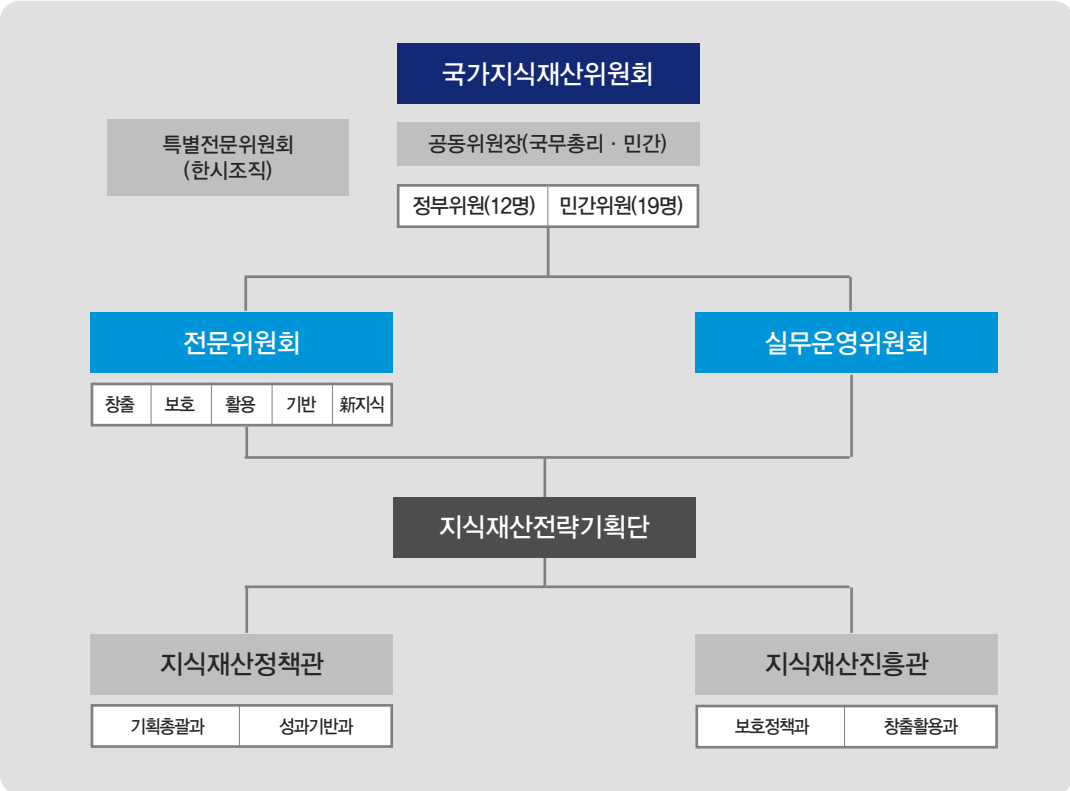

〈그림 1-3-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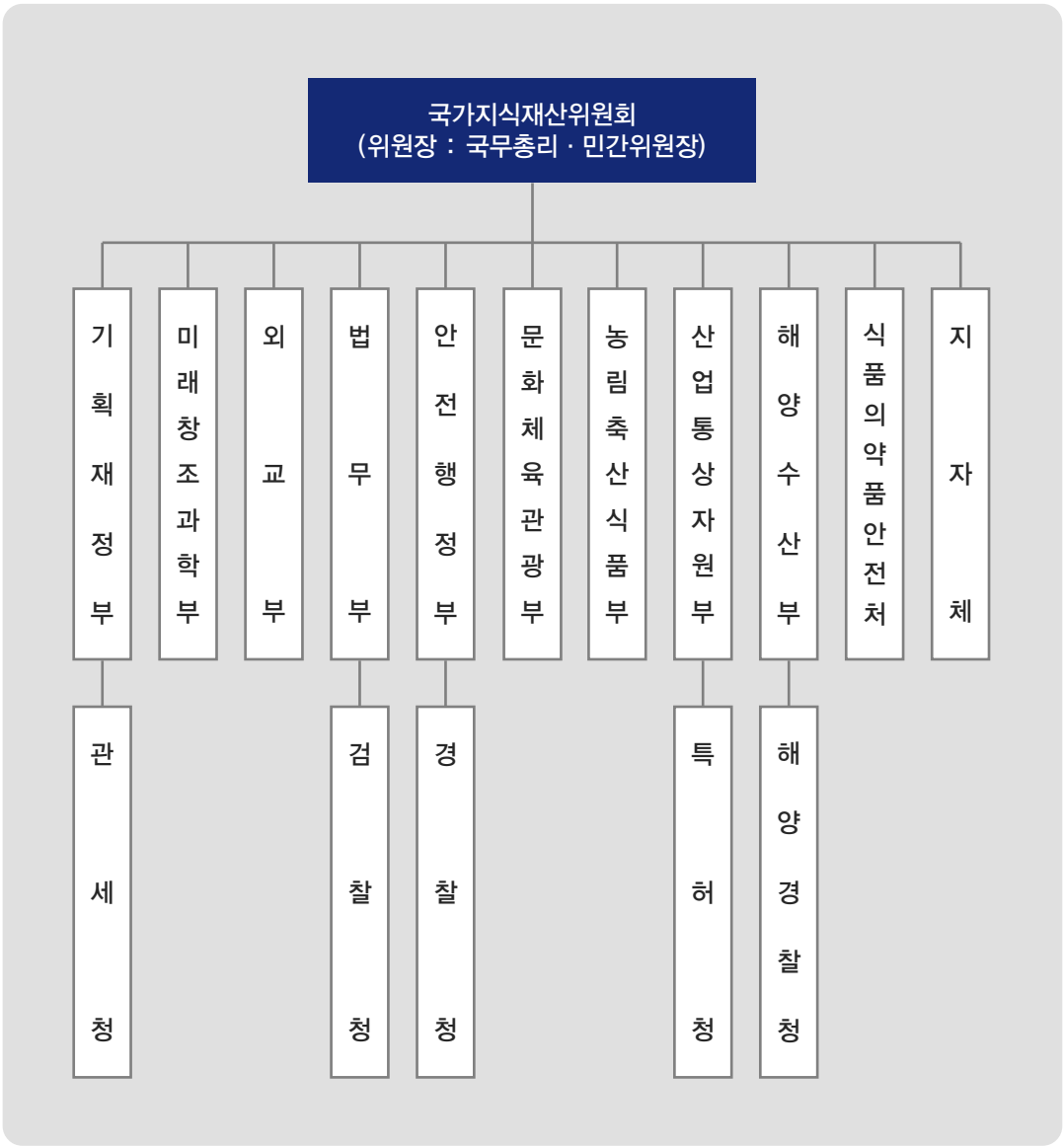

〈그림 1-3-2〉 지식재산 보호정책 관련 정부부처

••• 제4절 지식재산 보호법령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그 개념과 범위가 상이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각 권리별로 법령을 따로 두어 보호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중 상표권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디자인권과 특허권은 각각 「디자인보호법」, 「특허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설계 등의 신지식재산권은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령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최근에는 침해 정도와 양상이 과거보다 정교해지고 교묘해짐에 따라 단일법에 의한 규제 및 보호만으로는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복수의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WTO TRIPS 협정 및 미국 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제적 노력을 통해 세계 각 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경감시키고 있다.

〈표 1-4-1〉 지식재산 관련 보호법령 및 소관부처

법 령	소 관 부 처
지식재산기본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특허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농약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국제사법	법무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무부 안전행정부
관세법	관세청
저작권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 제5절 주요 정책 및 사업

지식재산 보호업무는 분야별로는 크게 산업재산권 분야는 특허청이, 저작권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과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집행업무 중 단속과 수사 등은 기존 검찰 · 경찰의 수사권을 통한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세청, 특허청 등이 특별사법경찰을 개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사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침해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의 침해가 디지털 · 온라인 분야에 대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제도적 · 기술적 보호조치를 선제적으로 개발 · 적용하고 있다.

〈표 1-5-1〉 부처별 지식재산 보호업무

권 리	소관부처	주요 업무	세부 내용
산업재산권	특허청	특허, 상표, 영업비밀 및 디자인 등 국내외 보호활동, 홍보 및 교육 등	특허심판 및 위조상품 단속 등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	국내외 저작권 보호활동, 홍보 및 교육 등 인식 제고활동	저작권침해 단속, OSP 대상 시정 · 권고, 재택모니터링 및 ICOP 운영 등
단속 및 수사 등 집행	검찰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불법복제 및 유통 단속, 수사 등	수사(단속)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수사기법 역량 제고
	경찰청		
	해양경찰청		
	무역위원회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	지재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 위반 등 조사
	관세청	관세 국경관리 등 대외거래 질서 확립	밀수품 단속 및 통관 보류 조치 등

1. 특허청

특허청은 기업활동에 국경이 없어지고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조화 추세에 따라 신속 · 정확한 심사서비스 제공 및 미래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 · 원천특허를 확보한 강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R&D투자 확대 등에 따라 특허출원 4위('11년), 특허생산성 1위('10년), 표준특허 보유 6위('12년) 등 특허의 양적 규모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그러나 핵심 · 원천특허가 외국에 비해 부족한 등 특허의 질적 수준이나 우수 특허보유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확대로 인해 외국기업의 특허공세가 심화되고 위조상품 유통 등 지재권 침해로 인해 해외 진출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됨에 따라 국내 · 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 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은 특허청 내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상표권자와의 공조를 통해 온 · 오프라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특허 등 지재권 분쟁이 심화되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국내기업의 지재권 침해 예방을 위해 분쟁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언론사와의 소통채널 구축으로 분쟁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업종별 단체와의 실무협의회 정기실시, 외국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침해를 축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2조의2에 따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 등이 전송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라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OSP[8]: Online Service Provider)에게 복제 · 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 삭제 · 전송중단, 복제 · 전송자의 계정 정지, OSP의 게시판 정지 등의 명령을 내리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신분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관은 2008년 9월부터 저작권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수사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와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관련 분쟁의 알선과 조정, 저작권 연구, 저작권 정책수립 지원, 저작권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저작권 인식 개선, 저작권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저작권단체연합회 산하의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법 제13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불법복제물의 수거 · 폐기 및 삭제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온 · 오프라인 상의 불법복제물을 단속하고 있다.

3.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합동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26개 검찰청에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전담부장 및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합동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상 음악, 영상물 불법 다운로드 · 게시 등 저작권 침해사범과 유명 상품의 상표를 위

8)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와 정보사이의 복제 · 전송 등 교류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

조하여 부착한 가방, 운동화, 의류 등의 위조상품 판매사범 등을 단속하고 있다. 일반 사법경찰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세청, 특허청 내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여 합동단속을 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상위 집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 침해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침해사범 상담 · 신고 창구를 개설 · 운영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 배포 · 전송 · 사용행위 및 음반 · 비디오물 · 게임물의 불법복제 · 판매행위, 특허 · 상표도용 ·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지식재산 전반에 관한 침해신고에 대해 수사한다.

4. 경찰청 · 해양경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첨단산업 기술의 유출 및 상표법 위반 물품의 수입 · 유통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 단위로 「지능범죄수사팀」을 두어 지능적으로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하여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유명브랜드 가방 · 의류 · 의약품의 위조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유형의 상표법 위반사범에 집중해왔으나, 최근 선박 및 선박엔진의 설계도를 경쟁국으로 유출하는 산업기술유출사범을 검거하는 등 그 수사대상 및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향후 지식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상표 뿐만 아니라 저작권 · 디자인 · 영업비밀 · 산업기술 등 지식재산권 전반으로 그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청 등 관련부처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5. 관세청

관세 · 국경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관세청은 상표권 · 저작권 · 식물품종 · 지리적 표시 등 기존 단속대상의 범위를 특허권 및 디자인권까지 확장시켜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 중국 · 일본 · EU 등 주요 교역국의 수사당국과 실시간 밀수정보 교환 및 공조수사로 해외 공급망까지도 단속대상으로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인터넷 무역환경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에까지 원산지 둔갑 및 상표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와 전국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원산지 표시 단속 · 관리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SNS기반의 일대일 통신수단을 활용한 신종수법의 불법 수입물품의 국내 반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사이버 감시단을 활

용한 적극적인 단속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 · 미 FTA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시행으로 원산지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기관 간 FTA 활용컨설팅 분야를 조정하였다.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검증은 관세청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해외시장 진출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며, 금융지원 등의 종합지원은 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6.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으로서 1987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 · 구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통해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중,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가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제도이다.

무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역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조사실이 있고 무역조사실은 무역구제정책팀, 산업피해조사팀, 덤핑조사팀, 불공정무역조사팀의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역구제정책팀은 무역구제제도 운영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 조정 및 산업경쟁력 조사,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조사 등 무역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피해조사팀은 덤핑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조사와 세이프가드 조사업무를 담당한다. 덤핑조사팀은 반덤핑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 조사,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물품의 수입과 보조금율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불공정무역조사팀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포함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 2 장

지식재산 보호 환경

••• 제1절 서 론

1. 국제 환경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발간한 2013 세계경쟁력연감(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평가대상 148개국 중 25위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6단계 하락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도 전년대비 8단계 하락한 4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경쟁력과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격차가 매년 2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표 2-1-1〉 WEF · IMD 발표 우리나라 연도별 지재권보호 수준('09~'13)

구분 \ 년도		'09	'10	'11	'12	'13
WEF	국가경쟁력	19	22	24	19	25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41	44	46	40	48
IMD	국가경쟁력	27	22	22	19	22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33	32	31	31	40

* 출처 : 기획재정부

가. 국제 특허분쟁의 증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기업의 국제특허분쟁 건수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소송 형태에 있어서도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실정이다.

〈표 2-1-2〉 우리나라 기업 형태별 국제특허분쟁 현황

기업 형태		'08	'09	'10	'11	'12	'13. 9	계
대기업	제 소	34	21	10	65	5	4	139
	피 소	70	63	65	150	173	206	727
소 계		104	84	75	215	178	210	866
중소기업	제 소	18	20	9	18	5	3	73
	피 소	46	47	96	45	41	44	319
소 계		64	67	105	63	46	47	392
기 타	제 소	4	1	2	0	0	1	8
	피 소	9	2	4	2	0	1	18
소 계		13	3	6	2	0	2	26
합 계		181 (14.1%)	154 (12.0%)	186 (14.5%)	280 (21.8%)	224 (17.4%)	259 (20.2%)	1,284 (100%)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속한 기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치임/기타는 연구소, 개인 등이 포함된 수치

특히 2000년대 초반 미국을 중심으로 출현한 제품 생산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로열티, 라이선스 등)을 챙기는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 또는 NPEs(Non-Practicing Entities))은 해외 수출 국내 기업을 주요 소송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으로 대변되는 ICT산업의 급성장과 이로 인한 매출액의 증대가 그 주된 원인이다.

〈표 2-1-3〉 NPEs 업체로 인한 연도별 국제특허분쟁 피소 현황

연도	'08	'09	'10	'11	'12	'13. 9.	총 계
미국	38	32	47	95	155	193	560 (88.6%)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나. 신흥 IP강국의 성장

중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의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급성장('11년 특허출원건수 52만여 건으로 세계 1위 부상) 등 주요국의 견제 등이 심화되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국내 환경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추진한 결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5년(2009~2013년) 연속으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은 미국의 스페셜 301조[9] 보고서가 최초 발표된 1989년부터 2008년까지 우선감시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이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2009년 이래 5년 연속으로 미국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등 보호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는 앞서 발표한 '2013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삼진아웃제, 웹하드 등록제 등의 선진적 제도 도입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집행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표 2-1-4〉 2013년 미국무역대표부(USTR) 지정 감시대상국 현황

구 분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 (Watch List)	
국 가 명	알제리	비베이도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벨라루스	자메이카
	칠레	볼리비아	쿠웨이트
	중국	브라질	레바논
	인도	불가리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캐나다	파라과이
	파키스탄	콜롬비아	페루
	러시아	코스타리카	필리핀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루마니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타지키스탄
		이집트	트리니다드토바고
		필란드	터키
		그리스	투르크메니스탄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베트남
합 계	10개국	30개국	

*출처 : 2013 Special 301 Report

9) 미국의 무역상대국이 미국업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을 말한다. 미국 업계의 청원에 의해 교역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 통상법 제301~309조(레귤러301조)를 1988년 강화시킨 것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직권조사를 규정하였다. 규정의 내용이 기존의 통상법 301조나 슈퍼 301조와 동일하여 스페셜 301조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순위는 세계 48위 수준(2011년 WEF IP보호지수, 위조상품·불법상품에 대한 집행력 평가)으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보호집행력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3년간 지식재산 관련 정부 예산은 2010년 8.3조원에서 2012년 9.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예산 편성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중 연구개발(R&D) 예산의 비중이 86.3%('12년)를 차지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예산이 지식재산의 창출 분야에 집중 편성되어 지식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등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의 양적 규모는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 2011년도 공공 및 민간부문 전체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49조8,904억원으로 세계 6위(GDP 대비 2위), 특허출원 4위, 과학기술논문 수 11위(2010년도 기준)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그러나 질적 수준에 있어서는 이러한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적자는 2000년도 25억3,000만 달러에서 2010년도 58억2,000만달러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또한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이 전체 기업의 약 19.2%에 불과하며, 지재권 관련 연간 투자비용은 평균 약 1.5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인력·정보·자본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전략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상황이다.

특히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조 2,185억원(2012년)으로 불법복제물 및 위조상품의 불법유통에 따른 시장질서 왜곡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지재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의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미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새로운 지식재산, 일명 '신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식량안보 및 세계 종자시장 성장에 따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식물 신품종,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막대한 부가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생물자원을 비롯하여,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을 포함하는 전통자원, 기타 지리적 표시와 같은 식별표지 등도 신지식재산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신지식재산 분야는 현재 그 중요성 및 활용가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권리화 모호, 체계적 확보 및 관리시스템 미흡 등으로 충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산업재산권

1. 특허 · 실용신안권

가. 창출단계

1) 특허 · 실용신안의 양적 증가

2012년 신규 설정등록은 119,820건으로 전년대비 14%이상 증가하였으며, 각 권리별로 보면,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19.8%, 8.5% 증가하였다. 특히, 실용신안은 2006.10. 1.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폐지로 정상적인 심사처리 기간을 거쳐 등록됨에 따라 등록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8년부터 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0]

〈표 2-2-1〉 최근 5년간 특허 · 실용신안 설정등록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 권리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특 허	83,523	56,732	68,843	94,720	113,467
실용신안	4,975	3,949	4,301	5,853	6,353
합 계	88,498	60,681	73,144	100,573	119,820

특히, 2012년 12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발표한 '2012년 세계 지식재산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허의 출원 · 등록 · 누적 면에서 모두 세계 4위를 차지하여 양적 기준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한편, 중국은 출원(1위), 등록(3위), 특허축적 역량(3위)에서 모두 우리보다 앞서고 있고, 우리나라의 1위 수출교역국으로서 향후 우리 기업과의 지재권관련 분쟁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재권 보호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10) 특허청, '2012년도 지식재산 백서', ('13. 5)

2) 특허 역량의 편중

우리나라의 특허 역량은 그 양적 규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에 편중되어있다. IT분야의 지식재산권 역량에 대해 미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가 매년 기업,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등 5,000여개 기관들의 특허능력을 분석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통신 인터넷 장비, 통신 인터넷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 공학, 반도체 제조 등 17개 분야별로 특허 포트폴리오의 양적 측면(특허출원수, 특허성장지수)과 질적 측면(영향력, 독창성, 보편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특허능력(특허능력=당해년도 특허출원수×특허성장지수×특허영향력×특허독창성×특허보편성)을 평가하여 상위 20대 기관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2012년 보고서를 살펴보면 각 분야에서 상위 20위에 속한 기업 수의 총합은 미국(213개)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본(47개), 유럽(40개), 한국(7개), 중국(3개) 순이었다.

〈표 2-2-2〉 2012년 IEEE평가 분야별 및 국가별 상위 20위 기관수

(단위 : 개)

분 야	국 가					
	한 국	미 국	유 럽	일 본	중 국	기 타
반도체제조	2	13	0	2	0	3
통신 · 인터넷서비스	2	10	4	2	0	2
전자	1	6	2	10	0	1
복합	1	12	0	2	0	1
화학	1	8	4	7	0	1
과학장비	0	16	2	2	0	0
대학 · 교육 · 연수	0	19	0	0	1	0
반도체장비제조	0	13	2	3	0	2
생명공학 · 제약	0	16	4	0	0	0
의료기기 · 기구	0	18	2	0	0	0
자동차 · 부품	0	7	4	8	0	0
정부기관	0	11	2	2	0	5
컴퓨터소프트웨어	0	17	1	1	0	0
컴퓨터시스템	0	8	2	2	1	5
컴퓨터주변기기 · 스토리지	0	12	0	6	1	1
통신 · 인터넷설비	0	15	3	0	1	1
항공우주방위	0	12	8	0	0	0
총 합	7	213	40	47	3	23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13. 01)

이 중 한국은 반도체 제조분야 2개사, 통신/인터넷분야 2개사, 전자분야 1개사, 복합분야 1개사, 화학분야 1개사로 총 17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만 7개 기업이 상위 20위권에 포함되었다. 그 결과 반도체, 전자, 통신 등 전통적으로 강세인 분야에서의 소수 기업들은 강한 지식재산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타 분야 기업들의 역량은 미흡하고, 생명공학, 자동차, 항공우주, 소프트웨어 등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가 매우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활용단계

1) 지식재산의 매각 · 이전

기업의 경우 2011년, 2012년 지식재산을 매각 · 이전한 비율은 5.2%로 같은 수준을 유지한데 반해 지식재산을 매각 · 이전한 기업의 평균 건수는 2011년 4.06건에서 2012년 4.38건으로 증가하였다. 대학 및 공공(연)의 경우 2012년 지식재산을 매각 · 이전한 비율은 20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평균 매각 · 이전 건수는 2011년 36.78건에서 2012년 21.14건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적은 건수이지만 매각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평균 건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갖고 온 것으로 보여진다. 즉 기업의 경우 매각 · 이전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적지만 그 건수는 많은 반면에, 공공(연)의 경우에는 반대로 매각 · 이전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는 많지만 그 매각 · 이전 건수는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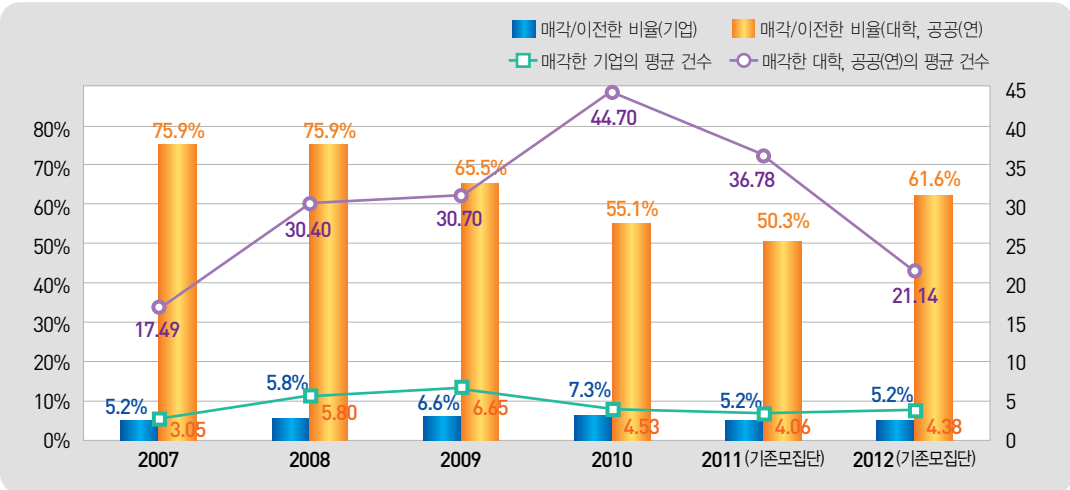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2.)

〈그림 2-2-1〉 지식재산 매각 · 이전 추이 ('07~'12)

2) 특허권 활용

2012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평균 활용률(사업화하거나 방어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비율)과 평균 사업화율은 모두 2011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매각 · 이전 보다는 사업화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대학 및 공공(연)의 경우는 개발한 원천 기술을 사업화하기에는 제도 ·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활용보다는 매각 · 이전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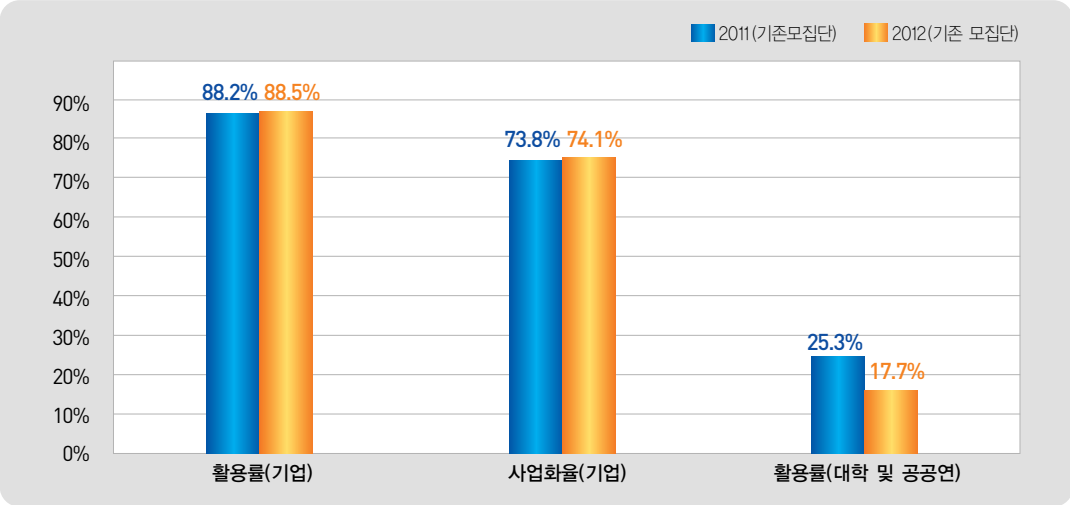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2.)

〈그림 2-2-2〉 특허 활용률 및 사업화율 평균

3)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2012년 서비스 수지가 1998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26억 8천만달러 흑자를 보였으나, 상표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는 49억5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양적인 특허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기술수준의 부족과 특허전문관리기업의 적극적인 공세 강화로 지식재산권 분야는 만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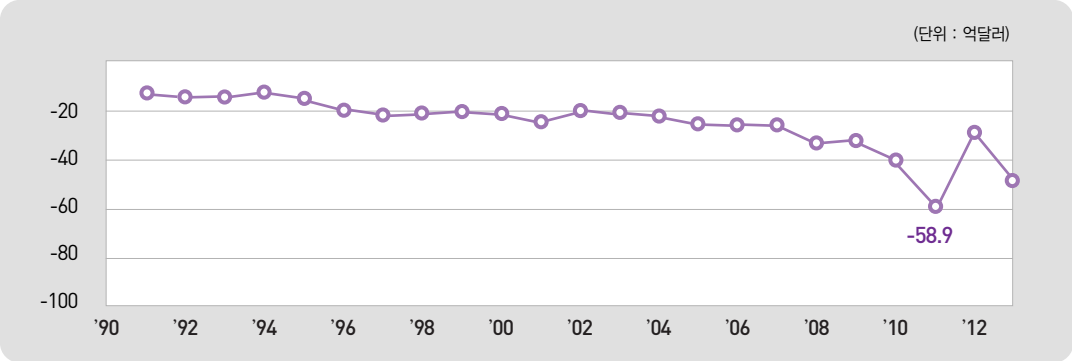

* 출처 : 한국은행 2012

〈그림 2-2-3〉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 추이

지식재산권 관련한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내 IT 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출 증가와 비례하여, 해외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사용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300개 상장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로열티 지불 기업(11.7%)이 로열티 수령 기업(4.3%)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1]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원천 기술보다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한국 기업들의 규모와 위상의 증가에 따라 해외 특허관리전문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들의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활동의 증가도 최근의 적자 심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해외진출 단계

1) 경쟁기업의 특허공세 심화와 관련 인프라 부족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외국 기업의 특허공세가 심화되고 있다. 삼성과 애플 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주도권 다툼은 2011년 특허분쟁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들의 발광다이오드(LED) 시장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필립스, 니치아 등 다국적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수시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자국 기업의 요청에 따라 수입물품의 지재권 침해여부를 조사한 사례는 2007년 이후 연평균 22.6% 증가하고 있다.

11) 대한상공회의소, '국내기업의 지식재산 유출 피해실태와 정책과제', (2012.12.06)

특히, 국내 기업이 제소하는 경우보다 피소되는 경우(77.5%)가 훨씬 많으며, 분쟁 상대기업은 주로 미국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63.9%), 향후 특허출원건수가 많은 중국에서의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IT분야에서의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66%), 자동차 · 섬유 · 철강 등 타 산업분야로도 지재권 분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재권 분쟁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다. 2011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며, 지재권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19.2%에 불과하며, 지재권 관련 연간 투자비용도 평균 약 1.5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그 대응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발명가 ·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선진국 기준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며,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변리사 · 변호사 등의 법률서비스 인력, 기술금융 및 사업화 등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전문가, 창의적 발명을 할 수 있는 창작자 등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 특허전문기업(NPE)의 공세 강화

미국 특허조사기관인 「Patentfreedom」의 2013년 1월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12년 NPE에 의해 가장 많이 소송을 당한 기업 2, 3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위인 Apple사는 44건이었고, 삼성전자는 37건, LG전자는 24건 이었다. 삼성전자는 2011년 43건에서 다소 줄어들었지만, LG전자는 스마트폰 판매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표적이 되어 12위에서 3위로 급상승하였다.

〈표 2-2-3〉 NPE와의 법정 분쟁 상위 10대 기업

(단위 : 건)

기업명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Apple	18	26	34	43	44	165
삼성전자	12	10	21	43	37	123
LG전자	13	10	23	29	24	99
Verizon	13	13	17	25	24	92
HTC	15	11	23	31	23	103
Sony	13	22	20	32	22	109
AT&T	17	16	22	31	22	108
Google	10	16	10	30	22	88
Amazon	5	13	20	35	20	93
Research in Motion	15	11	13	28	20	87

* 출처 : Patentfreedom(2013. 01)

한국 기업들의 IT분야, 특히 모바일, 통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냄에 따라 관련 특허를 집중 확보하고 있는 NPE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는데, 미국의 인터디지털(InterDigital)은 2005년 말부터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이동통신 관련 특허소송을 벌여 2011년 매출 3억 174만달러 중 39.1%인 1억 1천808만달러를 한국 기업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벌어 들였다.

캐나다 NPE인 모사이드(MOSAID)도 2011년 매출 8천 53만 캐나다달러의 46.8%(3천 767만 캐나다 달러)를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과의 특허분쟁에서 벌었다. 또 다른 NPE인 아카시아 리서치도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주요 수입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인터디지탈, 모사이드, RPX(Rational Patent Exchange)가 한국에서 거둔 수익이 공시된 것만 1,740억원에 달한다.[12]

국가간 지식재산 라이센싱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13], NPE기업의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 일반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등이 NPE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특허전문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JP Morgan 등의 금융기관과 대학 재단들이 NPE에 지분 투자를 늘리는 등 금융산업과 NPE의 융합이 증가하고 있어 NPE의 적극적인 공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상표 · 디자인권

가. 창출단계

1) 상표 · 디자인 창출의 양적 증가

2012년 신규 설정등록은 124,049건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였으며, 상표, 디자인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9.3%, 9.4% 증가하였다.[14] 이러한 등록 증가율은 특허청의 정책강화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즉, 2013년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의 후속조치로 상표 · 디자인 심사품질제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표가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식별성 요건을 완화하여 포지티브(Positive)심사를 하고, 2017년까지 상표는 3개월, 디자인은 5개월 이내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12) 연합뉴스, '작년 IT기업 등의 로열티로 10조원 국외유출' (2013.01.23)
13)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4년 1천억 달러 규모였던 국가 간 지식재산 라이센싱 시장은 2011년 약 2.5배 성장한 2천 4백억 달러에 달하는 급격한 성장을 이룸
14) 특허청, '12년도 지식재산 백서', ('13. 5)

〈표 2-2-4〉 최근 5년간 상표 · 디자인 설정등록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 권리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상 표	65,583	53,155	53,136	71,255	77,903
디 자 인	39,858	32,091	33,697	42,185	46,146
합 계	105,441	85,246	86,833	113,440	124,049

2) 악의적 등록 상표의 증가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해 경쟁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식별표시로서, 상품의 신뢰성과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와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표제도를 악용하여 선사용자의 상표를 먼저 출원 · 등록하여 이익을 챙기는 악의적 상표 사냥꾼이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써, 상표브로커인 K씨는 유명 여성그룹인 '소녀시대'의 이름을 도용하여 의류 · 완구 · 광고대행업 · 이미용업 · 도시락밥 · 참기름 등 수백 개의 품목에 '소녀시대' 상표를 등록하였다. 유명 가수나 유명 TV프로그램 등의 이름을 악용하는 이른바 '상표브로커'들이 출원한 상표는 1만 1,543건, 등록된 상표는 1,0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디자인 산업의 발전

디자인 전문회사 수는 1997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1997년 80개이던 것이 2006년 1,432개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7년부터 자격요건을 강화[15]하여 2012년 3,519개사가 등록되었다. 또한 2010년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시장규모는 7조900억원으로 미국(80조원), 영국(23조 3천억원), 일본(20조3천억원)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 디자인 전문회사 및 산업규모

연도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디자인전문회사 수	1,432	1,121	1,635	2,227	2,582	3,061	3,519
디자인산업규모	68,687	–	52,318	–	70,900	–	–

*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통계조사」

* 디자인전문회사 수는 매월 조사 ** 디자인산업규모는 2년마다 조사

15) 자본금 5천만원 이상에서 매출액 2억원 이상, 전문인력 3인이상에서 분야별 전문인력 3인이상으로 변경

나. 활용단계

1) 프랜차이즈 현황

상표 활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상표의 사용허락에 의한 상표사용일 것이며, 프랜차이즈가 대표적이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의 사업 아이디어와 가맹점 사업자의 소자본이 결합한 사업 시스템으로, 자영업자 증가와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 현상 등으로 인해 산업의 비중 및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산업 규모를 보면, 2010년 매출액 96조원, 고용 133만명으로 명목 GDP대비 7.8%, 총고용 대비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가맹본부 수는 총 2,956개, 가맹점 수는 18만개에 이르고 있다.

〈표 2-2-6〉 프랜차이즈 산업규모 현황

(단위 : 조원/만명)

구 분	1999	2002	2005	2008	2011
매출액(조원)	45.0	41.6	61.3	77.3	95.6
고용(만명)	55.6	56.6	83.2	100.1	132.8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13.5.29)

2) 디자인의 활용

산업계의 디자인 활용분야를 보면, 시각디자인이 4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품디자인(43.2%), 포장디자인(24.5%), 환경디자인(22.4%)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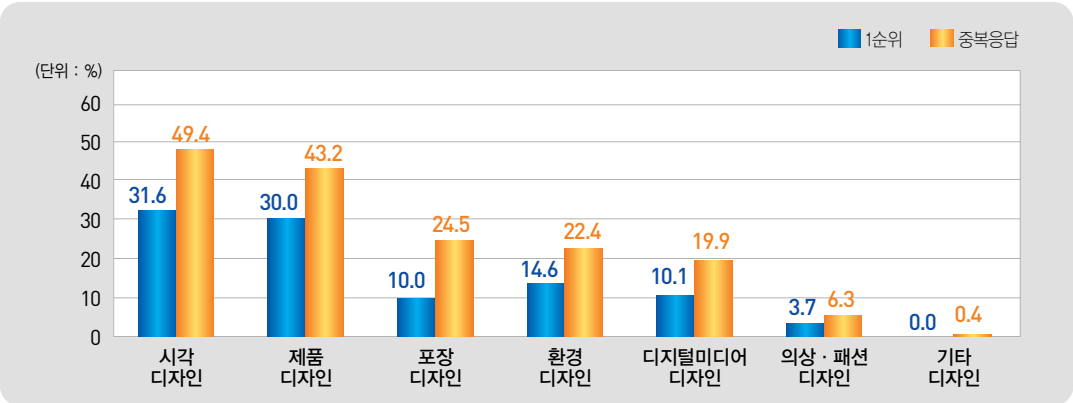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2011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그림 2-2-4〉 디자인 활용 분야(복수응답)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시각디자인분야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시설관리업(76.7%)에서의 시각디자인분야 활용률이 가장 높았다. 한편 건설업에서는 환경디자인분야의 활용률이 97.4%로 가장 높아 다른 업종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제품디자인(61.6%), 포장디자인(38.3%)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판 · 영상 · 정보업에서는 디지털미디어디자인의 활용률이 60.5%로 높았다.

〈표 2-2-7〉 프랜차이즈 산업규모 현황

(단위 : %)

구 분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환경 디자인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의상패션 디자인	기타 디자인
디자인 활용기업 평균(전체)		49.4	43.2	24.5	22.4	19.9	6.3	0.4
업종별	제조업	49.1	61.6	38.3	12.0	11.2	9.2	0.3
	건설업	28.9	15.3	1.3	97.4	7.8	4.0	0.0
	출판/영상/정보	52.6	18.3	3.6	3.6	60.5	3.4	1.0
	전문/과학/기술	48.3	21.6	12.0	45.5	20.8	1.0	0.8
	사업시설관리	76.7	21.5	9.0	8.4	11.3	0.2	0.0

*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2011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다. 해외진출 단계

1) 국내 상표의 무단 선등록 증가

해외에서 상표출원 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재권 침해 유형 중 하나는 국내 상표를 무단으로 선등록하는 경우이며, 무단 선등록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 상표 출원을 진행할 때 주로 대리인이나 에이전트 또는 제3자 등이 우리 기업의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먼저 등록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표 이전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독점판매권 등 경영상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해외 출원 시 먼저 상표등록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IP-DESK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IP-DESK는 현재 중국, 미국 등 4개국 · 9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침해방지를 위해 전문가 상담, 각종 등록비용의 지원,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IP-DESK는 침해조사 지원을 통해 2011년에 21억원의 모조품을 몰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2)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의 실효성 상실

불법복제물 및 위조상품의 불법유통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지재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침해 및 국내 기업의 핵심·첨단 기술의 해외유출 피해도 확산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 보호집행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표 2-2-8〉 국가별 지식재산권 위반사범의 단속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합계
중국 [A]	23,203	5,961	4,577	8,580	7,300	6,574	56,195
([A] / [B]*100)	(96.3%)	(91.8%)	(89.2%)	(89.5%)	(90.6%)	(95.6%)	(93.3%)
홍콩	351	188	48	22	9	150	768
베트남	113	174	42	13	19	5	366
인도네시아	27	101	26	36	19	1	210
싱가포르	4	4	–	159	–	2	169
태국	105	20	6	14	1	8	154
필리핀	8	5	77	23	5	18	136
미국	22	6	80	3	5	4	120
대만	28	2	22	–	9	–	61
일본	14	2	2	9	2	9	38
기타국	232	33	251	728	691	207	2,042
합계 [B]	24,107	6,496	5,131	9,587	8,060	6,878	60,259

* 출처 : 관세연감(관세청)

주요 사례 **산업재산권 보호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

2010년 4월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자, 특허청은 같은 해 9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를 출범시키고 3개 지역사무소에 단속인력을 배치했으며, 2011년 12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장비를 갖춘 '온라인 수사'를 출범시켜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했다. 상표특사경 출범 이후 2012년도에만 위조상품사범 30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13만 점을 압수하는 등 위조상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3. 영업비밀

가. 창출단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11~'12년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역량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출된 산업기술 유형은 수행중인 과제 결과데이터(38.0%), 최종 연구결과(35.9%), 주요 설비 설계도(30.7%)순으로 창출단계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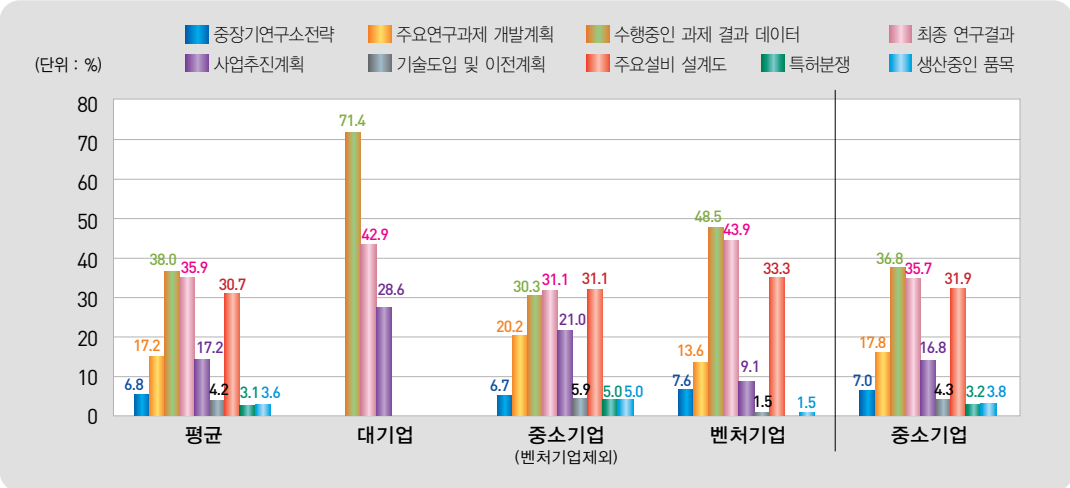

*출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안역량 수준 실태조사」

〈그림 2-2-5〉 유출 산업기밀 유형(복수응답)

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보안 역량수준은 43.8점으로 취약 수준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75.4점으로 양호 수준이었으나, 중소기업(벤처기업 제외)은 42.6점, 벤처기업은 42.8점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2010년과 비교하여 평균 보안 역량 수준은 전반적으로 하락 하고 있어, 영업비밀의 보호 인식과 관리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인식제고와 계속적인 시설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주요 사례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

C사의 부설연구소에서 유전자 진단 기기 및 치료제를 개발하던 연구원 5명이 집단으로 회사를 그만둔 뒤, 회사를 창업함. 이들은 각 분야별 전문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C사에서 지난 2년간에 걸쳐 개발한 유전자 분석 장비 기술을 이용하여 유사제품을 생산, C사보다 먼저 제품 판매에 나섬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나. 활용 단계

활용 단계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은 기술거래와 협력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히 공동연구개발, 합병, 조인트벤처, 라이센스, 하청 라이센스 등의 협력단계에서 영업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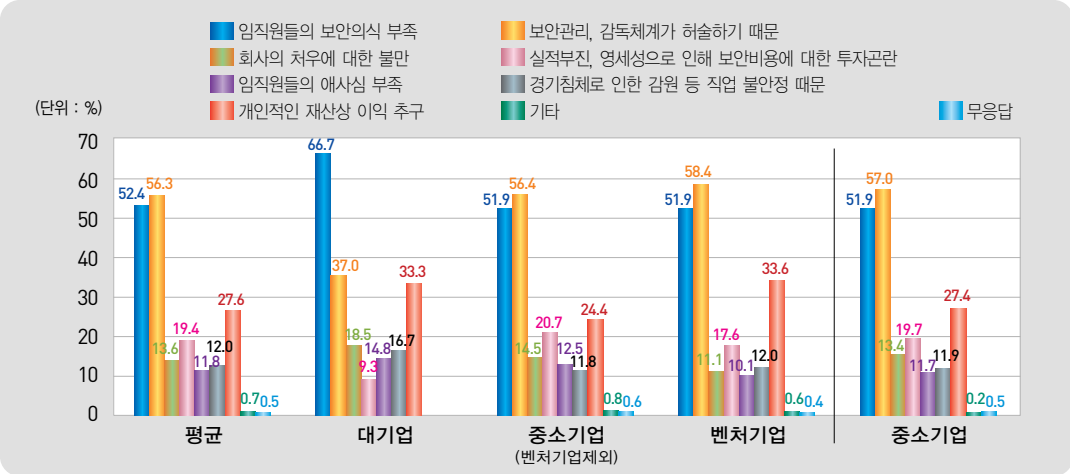

〈그림 2-2-6〉 기술유출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복수응답),

교섭과정에서 자사가 보유한 개발 노하우를 포함한 도면 등 정보를 상대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결렬되는 경우에 기술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보안의식과 관리체계의 구축이 중요한데, 영업비밀 유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보안관리 및 감독체계 허술(56.3%), 임직원 보안의식 부족(52.4%), 개인적인 재산상 이익추구(27.6%)의 원인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있어 보안의식 제고와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요 사례 **협력 사업에서의 기술유출 사례**

네트워크 및 IT인프라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K사는 대기업 계열사인 한 정보통신 업체와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던 도중, K사와 협력하던 업체가 내부 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연구개발 협력을 중단. 얼마 후 해당 협력업체는 그동안 K사와 함께 개발해온 솔루션 소스를 이용하여 먼저 신제품을 출시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챙김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다. 해외진출 단계

해외에 진출한 현지 한국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기업 391개사 중 91개사(23.3%)가 현지 진출 이후 회사 내부의 중요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출 경험이 있는 91개사 중 1회 유출이 57개사(62.6%), 2회 유출이 24개사(26.4%), 3회 이상이 7개사(7.7%)로 나타났다.

유출자는 현지 채용 직원이 74개사(81.3%)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협력업체 관계자 34개사(37.4%), 본사 파견 직원이 20개사(22.0%), 기술자문 또는 컨설팅 관계자 20개사(22.0%), 경쟁업체 관계자 17개사(18.7%), 현지 대리인 17개사(18.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채용 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

〈표 2-2-9〉 중요정보 유출횟수

(단위 : 건, %)

전체		1회		2회		3회 이상		무응답	
건	%	건	%	건	%	건	%	건	%
91	100.0	57	62.6	24	26.4	7	7.7	3	3.3

〈표 2-2-10〉 중요정보 유출 관계자

(단위 : 건, %)

본사 파견 직원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경쟁업체 관계자		기술자문 또는 컨설팅 관계자		현지대리인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	22.0	74	81.3	34	37.4	17	18.7	20	22.0	17	18.7

* 복수응답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율은 유출경험이 있는 91개사 기준

주요 사례 해외 진출 기업의 기술유출 사례

보안 카메라 전문 생산업체인 A사는 중국 심천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뒤 제조업체를 선정하여 제품생산에 착수함. 하지만 제품이 생산 · 판매되고 있던 도중 현지에서 고용한 현지 생산직 직원이 A사의 제품 회로도를 몰래 절취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함. 유출자는 제품 도면을 가지고 다른 도시로 이동, 그곳에서 유사한 물건을 제조 ·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김. 또한, 유출자가 제품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유통시킴으로써 전체 제품가격이 하락하였으며, 불법복제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가 손상됨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제3절 저작권

1. 불법복제물 유통 감소

정부의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추진과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로 2012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약 3,0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6% 감소하였으며,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규모는 약 2조 2,1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6.2%로 전년 대비 2.6%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우리 국민들의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률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불법복제물 시장이 점차 합법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3-1〉 연도별 저작권 침해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률	42.4%	35.9%	35.3%	32.4%
불법복제물 유통량	23억 9,602만 개	18억 9,571만 개	21억 27만 개	20억 6,000만 개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8,784억 원	5,102억 원	4,220억 원	3,055억 원
합법저작물 시장규모(A)	8조 1,507억 원	8조 9,347억 원	10조 8,153억 원	11조 4,963억 원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B)	2조 2,497억 원	2조 1,172억 원	2조 4,987억 원	2조 2,186억 원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C=A+B)	10조 4,005억 원	11조 520억 원	13조 3,140억 원	13조 7,148억 원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B/C)	21.6%	19.2%	18.8%	16.2%

*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13)」

2.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증가

인터넷 이용이 대중화 되고 디지털파일 형태의 콘텐츠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으로 콘텐츠 합법 유통시장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2012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유형별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살펴보면, 40.5%가 토렌트를 통해서 이뤄졌고, 웹하드 36.1%, 포털 12.1%, P2P 11.4%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면서 웹하드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유통량이 증가하였고, 2012년 5월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유발된 풍선효과로 인해 토렌트를 통한 유통이 웹하드를 추월하였다.

〈표 2-3-2〉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유통량 변화

구 분	P2P		포털		웹하드		토렌트	
	유통량 (천개)	증감(%)	유통량 (천개)	증감(%)	유통량 (천개)	증감(%)	유통량 (천개)	증감(%)
2010년	442,362	-48.4	304,884	-11.5	860,379	48.4	-	-
2011년	245,067	-44.6	293,981	-3.6	731,532	-15.0	525,724	-
2012년	209,359	-14.6	222,704	-24.2	664,758	-9.1	745,067	41.7

*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13)」

3. 시장 침해율 감소 시 생산 및 고용 증대

시장의 성장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법 · 제도 강화 및 불법복제물 단속 등 불법복제 유통 근절 노력을 통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감소 시(16.2%→10.0%) 생산 유발효과는 1조 5,141억 원, 고용유발은 1만 3천명으로 전망된다.

〈표 2-3-3〉 시장 침해율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단위 : 억원, 명)

산업분야	생산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세수 증대효과	영업잉여 유발효과
음악산업	3,425	4,094	1,884	102	296
영화산업	3,152	3,772	1,198	133	203
방송산업	303	92	130	1	23
출판산업	490	312	174	21	20
게임산업	2,463	1,729	1,257	15	239
콘텐츠산업 합계	9,834	9,999	4,644	271	779
기타산업	5,308	3,436	2,371	270	871
전체산업	15,141	13,435	7,015	541	1,650

*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13)」

4.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감소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The Software Alliance)은 매년 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43%에서 2010년, 2011년 각각 40%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평균 42%보다 낮고, 아시아 평균 6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OECD 평균 26%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지속적인 불법복제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간 피해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고가(高價)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2-3-4〉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규모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불법복제율	한국 평균	43	41	40	40
	세계 평균	41	43	42	42
	아시아 평균	61	59	60	60
피해액(백만달러)		622	575	722	815

* 출처 : BSA-IDC, 「2011 BSA Global Software Piracy Study」 Ninth Edition, May 2012.
* 주. 2013년부터는 BSA-IDC가 격년으로 침해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여 2012년 침해규모가 수록되지 못함.

5.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

중국 · 태국 · 필리핀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류열풍으로 인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유통환경은 한류시장의 개척 기회를 넓히고 있지만, 동시에 콘텐츠의 해외에서의 불법복제, 불법유통으로 우리 콘텐츠업체의 해외투자유인을 감소시켜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의 세계 시장 확대와 경제적 수익 향상을 위한 해외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표 2-3-5〉 중국 내 한국 저작물 침해현황 모니터링 결과

콘텐츠 분야	온라인 유통 콘텐츠 수량	합법유통 수량	불법유통비율
드라마	4,649	3,960	14.8%
영 화	2,912	1,767	39.3%
음 악	4,301	497	88.4%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 모니터링 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 제4절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과 같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이외의 새로운 형태의 지적창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총칭하며, 식물 · 동물신품종, 인공지능, 트레이드드레스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최근에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및 3D 프린팅 등 여러 재산권들이 교차하여 적용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지식재산이 갖는 부가가치의 한 예로서, 「Global And U.S. Industry Analysis」의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1975년 120억 달러에서 2010년 698억 달러로 5배 이상 성장하여 2020년이면 16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6]

또한, 온라인을 통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는 연간 50조 5천억원에 달하고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2013년 기업대기업(B2B)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기업대소비자간(B2C) 거래규모의 10배에 이르는 14조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17]하고 있다.

이러한 신지식재산권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기인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인 지식재산과 마찬가지로 창작이나 개발에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이 드는 반면 그 복제 또는 침해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체계의 환경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1. 신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환경

현재 신지식재산은 그 보호 영역이 하나의 법 체계에서 보호되거나,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상표법, 또는 특별법에서 부분적 또는 중첩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16) Global Information Premium market research reports
17) 디지털 타임즈, 2013년 1월 2일 19면 기사

그 예로 비즈니스 모델 발명과 생명공학에 관한 발명을 특허법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18]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식물발명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무성번식 식물발명 뿐만 아니라 유성번식 식물발명도 특허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19]하였다.

상표법에서는 '입체적 형상 · 색채 · 홀로그램 ·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도 보호대상에 포함[20]시킴과 더불어 한 · 미 FTA 발효에 따라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을 신설하여, 소리 · 냄새상표가 상표법상의 보호대상[21]임을 규정하였고,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형태로 상표법에 의해 보호[22]되고 있다.

한편, '글자체'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상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저작물성을 인정해 오지 않았으나, 컴퓨터에서의 사용을 위한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23]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글자체를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24]

신지식재산권의 보호영역이 하나의 법 체계 내에서 보호될 수 없는 성질의 내용인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법 또는 저작권법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법 체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국내법상 특별법을 통해 보호되는 신지식재산권으로는 다음과 같다.

〈표 2-4-1〉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체계

법 률	보호대상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 설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지리적표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트레이드드레스, 도메인이름, 지리적표시 등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도메인이름

18) 특허청, 「컴퓨터발명 관련 심사기준」, 2005 ; 특허청,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2010.
19) 구특허법 제31조 규정 삭제.
20) 상표법 제2조 1호 가목.
21) 2012년 3월 15일 시행
22) 상표법 제2조 3의4호.
23) 대법원 2001. 6.26. 선고 99다50552
24) 디자인보호법 제2조 1의2호, 제44조 제2항

2. 식물신품종 보호 환경

가. 보호체계

식물신품종의 개발은 식물이라는 특성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투자비가 집약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개인 또는 기업에 의한 식물신품종의 개발과 연구에 대한 투자는 미비한 실정이며, 예시적으로 종자기업 중 매출액이 가장 큰 농우바이오의 경우 지난해 연구개발비 지출은 92억 3천 만원이고, 동부팜한농은 종자 이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199억 6천 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반면, 다국적 종자기업인 몬산토의 연구개발비는 50배 이상인 1조 6천 억원[25]에 달한다.

따라서, 단기간에 식물신품종에 대한 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농가에 대한 품종보급률을 높여 해외로의 로열티 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적 식물신품종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 국내 농작물 중심의 보호

국내 농작물 관련한 식물신품종의 개발과 이에 따른 심사와 등록은 국립종자원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립종자원은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고품질 종자공급 확대로 농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품종보호제도 운영, 주요농작물생산, 공급, 민간육종활성화, 종자유통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육상식물이 아닌 해양수산식물의 신품종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신품종개발보급센터의 설립을 통한 구체적인 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미생물과 동물자원의 보호 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2) 국내 산림품종 보호

산림부문의 신품종은 전통적인 육종방법이나 일반의 육성자가 개발하기 힘든 시간적, 장소적 특이성으로 인해 국가차원(산림청)에서 산림신품종의 개발촉진, 산림용종묘의 국가 관리체계구축, 생산성 증대 및 산림유전자원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5) 경기일보 2013.11.18자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분야 신품종의 품종보호권을 부여하는 심사 · 등록의 절차를 주관하고 있으며, 산림용 종자의 채취과정을 확인하여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는 DNA 분석기술 등을 개발하여 불량종자의 원천적 유입을 막고,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불량종자의 유통 및 이를 사용한 양묘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 국제적 보호 –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은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가간 협력과 법규 및 제도의 조화 등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조직으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과수, 화훼, 농작물 등 다양한 식물신품종을 자체 개발하여 2012년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육성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식물신품종 보호 활동

1) 골든시드 프로젝트(GSP; Golden Seed Project)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수출전략 종자개발 및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부 · 청(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진흥청 · 산림청)협력 R&D 프로젝트로서,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종자시장 선점을 통한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1,000만 달러 수준의 국가 전략형 수출 종자 20개 이상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4-2〉 GSP 사업단 및 제1단계('13~'16) 투자계획(안)[26]

구 분	품 종	'13년도 투자규모 (정부출연금)	제1단계 투자규모 (정부출연금)
GSP 채소종자사업단	배추, 무, 수박, 고추, 파프리카	67억 원	393억 원
GSP 원예종자사업단	양배추, 토마토, 양파, 감귤, 백합, 버섯	60억 원	475억 원
GSP 수산종묘사업단	바리과, 넙치, 전복, 김	28억 원	286억 원
GSP 식량종자사업단	벼, 감자, 옥수수	21억 원	205억 원
GSP 종축사업단	돼지, 닭	14억 원	174억 원
5개 사업단	20개 품목	190억 원	1,533억 원

26)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동향」, 제23권 p 88.

2) 정부보급종 확대

국내의 식량보급에 중요성이 큰 작물로서 벼, 보리, 콩, 옥수수 등의 신품종을 정부 주도하에 개발하여 이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개발된 품종에 대해서는 국내 농가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개인 육성자 지원

국가 주도적인 품종 개발에 따라 확보된 기술은 각 부처의 품종기술 지원사업, 품종개발비 지원사업, 품종출원비용 지원사업, 해외연수 지원사업, 육종방법 교육 등을 통해 기업 및 농가에 제공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 개인 차원에서 활용되고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3. 지리적 표시 보호 환경

가. 보호 환경의 체계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는 상품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에 의존하는 제품의 품질,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를 말하며,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WTO/TRIPS)에서는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의 개념을 도입한 이래로, 2004년 개정 상표법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표 2-4-3〉 지리적 표시 보호 소관부처와 근거법

	법 령 명	소 관 부 처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3조, 제32조 내지 제55조,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표법 제2조, 제3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23조, 제50의3조, 제66조, 제71조, 제73조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체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보호와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이 되지 않은 지리적 표시라 할지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상표법상 보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1999년 1월에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여 이듬해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상표법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를 도입하여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보호하고,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2년에는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제'를 신설하였다.

지리적 표시제는 FTA(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더욱 주목받았는데, 한국과 칠레, 미국, EU(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에는 지리적 표시 보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EU와의 FTA에서는 목록 교환을 통해 한국 64개, EU 162개의 지리적 표시를 서로 보호해 주기로 하였다.

2) 타 법상의 보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는 원산지 허위표시방지규정(라목), 출처지오인혼동방지규정(마목) 및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규정(제3조의2)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특별보호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17호에 의한 등록배제효가 부여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에 의한 사용금지효가 부여되므로, 국내 등록을 받지 않아도 등록에 의한 법적 효과와 사실상 동일한 보호가 인정되고 있다.

나. 지리적 표시 보호 활동

1)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지리적 표시제는 농식품의 품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농식품의 지리적 표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리적 특산물의 품질향상, 지역특화 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2-4-1〉 지리적 표시 예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상표권의 일종으로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됨으로써 보호된다. 보호를 위한 출원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여야 하며,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상표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와 저촉방지 규정을 두어, 이중적 권리의 발생에 의한 사후적 분쟁을 조절하고 있다.

3)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

특허청은 2012년에 상표법을 개정하면서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 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표장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으로 보호하고 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4호의2).

4) 지리적 표시 보호범위 확대(한 · EU 자유무역협정)

한 · EU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을 통해 지리적 표시 보호범위를 '동종상품' 으로 규정함으로써, '동일상품' 보다 보호범위를 확대하였고, 이를 상표법에 반영하기 위해 후출원배제효, 사용금지효를 기존의 '동일상품' 에서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 으로 일괄 확대하였다.

4. 유전자원 보호 환경

가. 보호체계[27)]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은 신품종 개발, 신약개발 등 생명산업의 소재로서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외 생태적, 생물자원적, 사회적 가치 등 그 중요성이 증대[28)]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법적 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법률 제11257호,

27) 2012년 국내 각 부처를 기준으로 함

28) 예시적으로 중국 토착식물 '스타니아니스' 에서 추출한 조류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3,000억 달러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특허청, 신지식재산의 동향분석 및 법적 보호 방안 연구)

2012.2.1)하였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작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표 2-4-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제7조 및 제8조)
-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제10조)
-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및 획득 신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제17조 및 제18조)
- 생물자원 이익 공유 및 전통지식 보호(제19조 및 제20조)
- 외래생물종의 체계적인 관리(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09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정보 등을 포함하는 '생명연구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농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11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하고, 현재 국내외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확보 · 관리 및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해 외국인 등이 농수산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농수산생물자원에 취득하는 경우와 국민 등과 공동으로 농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개정법 제8조, 제9조), 국외로 반출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하여는 국외반출 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개정법 제16조).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등에 대하여 농수산생물자원에 대한 허가 등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개정법 제19조).

〈표 2-4-5〉 유전자원 보호의 소관부처와 근거법

소관부처	법률명
환경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1. 제정)
	제2조 제1호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상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 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25. 전부개정)
	제2조 제5호 "농수산유전자원"은 농수산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의미하고, 이 중에서 종자 · 영양체(營養體) · 화분(花粉) · 세포주 · 유전자 · 잠종(蠶種) · 종축(種畜) · 수산종묘(水産種苗) · 난자(卵子) · 수정란(受精卵) · 포자(胞子) · 정액(精液) · 세균(細菌) · 진균(眞菌) 및 바이러스 등을 포함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6.10.4. 제정)
	제2조 제4호 "해양생물자원"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遺傳資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생물적 구성요소를 말함
미래창조과학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09.5.8. 제정)
	제2조 제1호 "생명연구자원"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정보를 말함

나. 국내 유전자원 보호 · 관리 실태

국내 유전자원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국가생명연구자원 현황 파악 및 공동 활용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목적으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29]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30]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29) KOBIC;(Korean Bioinformation Center); http://www.kobis.re.kr
30) 근거: 생명연구자원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 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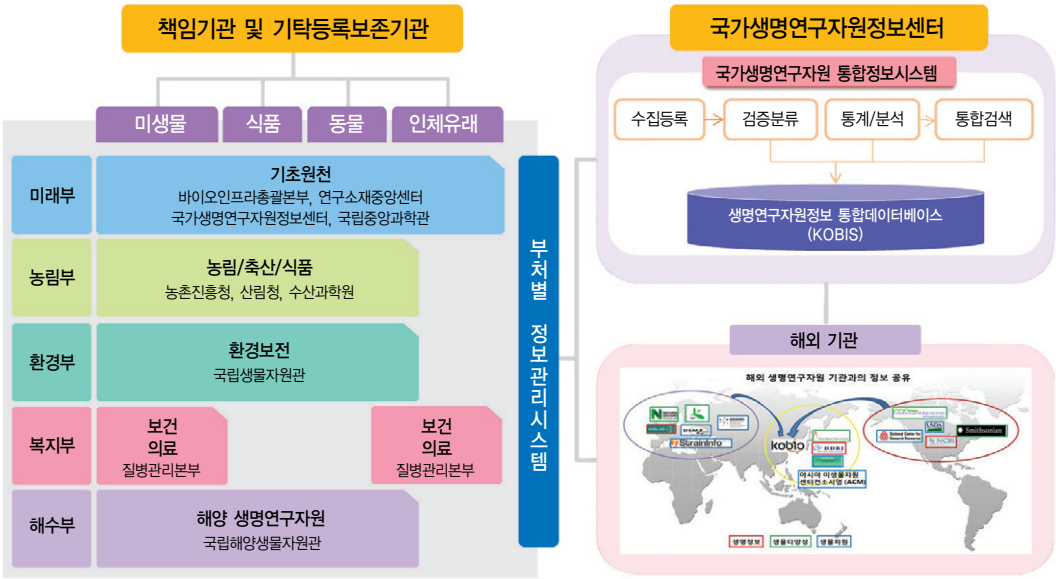

〈그림 2-4-2〉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KOBIS)' 추진체계

1)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은 자연환경보전법 등 생물다양성의 발전에 관한 국가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으로, 각종 동식물의 생육현황을 파악하고 생태적 위해성 및 자연훼손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방지하며, 특히 우리나라 고유종과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관리와 서식지 보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BRC; Biological Resource Center)는 기존의 유전자은행(KCTC;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의 업무를 바탕으로 생물자원의 연구개발, 국내 · 외 생물소재은행(Culture Collections)간의 네트워크 구축, 생물자원의 정보화 및 대외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미생물자원센터로 확대 개편된 조직으로서, 생명공학 발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표준미생물주, 동 · 식물세포주, 유전체 연구소재, 수정란, 생물자원정보 등을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고, 국내 · 외 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 외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2002년부터 국책 유전자원 지원 및 활용사업으로 국내 유전자원의 탐색, 수집, 동정, 보존, 분양을 통한 생물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생물다양성의 확보를 위해서 1995년부터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주관으로 농업과 관련된 세균, 곰팡이, 버섯 등의 미생물 유전자원의 수집, 분류, 보존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물 생육과 연관된 토양 미생물, 작물 병원성 미생물, 한국 전통 식품의 발효에 관련된 미생물들을 수집, 보존 및 분양하고 있다.

4)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농촌진흥청은 유전자원 확보 등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식물유전자원에 있어서 '12년 20만점 수준을 '13년에는 원예 ·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21만점 수준까지 끌어 올리고, 그 증식, 보존, 특성평가를 강화하였으며 민간분양을 '13년에는 2만점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여 골든시드 식량 사업단을 '13년 5월에 출범하였다.

산림청의 경우 산림분야 유전자원은 '12년 말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을 중심으로 약 100만점을 수집 ·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수목원에서는 우리나라 자생식물 1,900여 종의 식물과 외국에서 들여온 수종을 포함하여 총 2,775종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5)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는 각 분야별(식물, 미생물, 버섯, 가축, 곤충 등)로 독립된 서비스구조를 농업유전자원정보 포털서비스 구조로 개편하였으며 식물, 미생물, 동물 등 지방기관, 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전체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자원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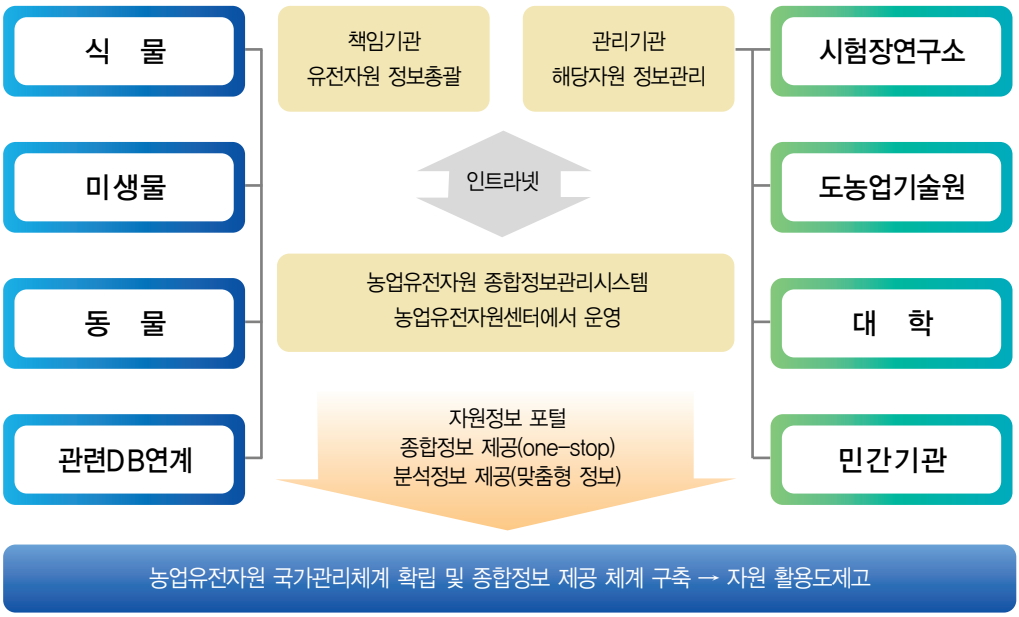

〈그림 2-4-3〉 농업유전자원 정보종합관리체제[31]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는 수원에 종자 50만, 미생물 5만점을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농업식물유전자원 154,695점을 보존 중이며, 미생물, 영양체, 동물 등을 합하면 약 26만 5천 점에 육박한다. 한편, 당 센터는 2009년 국제생물다양성연구소(BI)가 인증하는 '국제 유전자원 협력훈련센터'로 지정되어 국제 유전자원 관리 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다.

5. 전통문화표현물 보호 환경

가. 보호 환경의 체계

전통문화표현물이란 민간전승물 또는 민속문화재로 표현되며, 어떤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을 의미한다. 국내외적으로 전통문화표현물을 기반으로 한 창작 및 상업 활동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해당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내에서도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이와 유사한 문화재, 유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등에 관한 「문화재보호법」을 두고 있으나 보호 목적과 내용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31)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http://www.genebank.go.kr/

나.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 활동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각 국의 인식과 요구가 커지면서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논의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2000년 WIPO 총회결과로 WIPO 유전자원 · 전통지식 · 민속표현물 정부간위원회(IGC; Intergovernmental Committee)가 설치되었으며, 2001년 제1차 정부간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3년 제25차 정부간위원회까지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정부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조약안이 도출되었으나, 각국은 상이한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아직도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간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참가하며 쟁점사항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을 점검하고, 국내 전통문화표현물 이용 실태와 사례 연구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방안 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다.

6. 퍼블리시티권(Publicity) 보호 환경

가. 보호 환경의 체계

퍼블리시티권이란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퍼블리시티의 보호에 대하여는 보호의 방법, 객체, 보호의 정도 등 국제적으로 확립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판례도 축적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분쟁과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활동

인터넷에 의한 정보의 양산과 연예산업의 확대로 인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양한 연구와 현황 분석, 산업 규모 조사, 경제적 효과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각도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제도의 미비로 인해 법적 해결 방법에 많은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7. 기타 이슈

가.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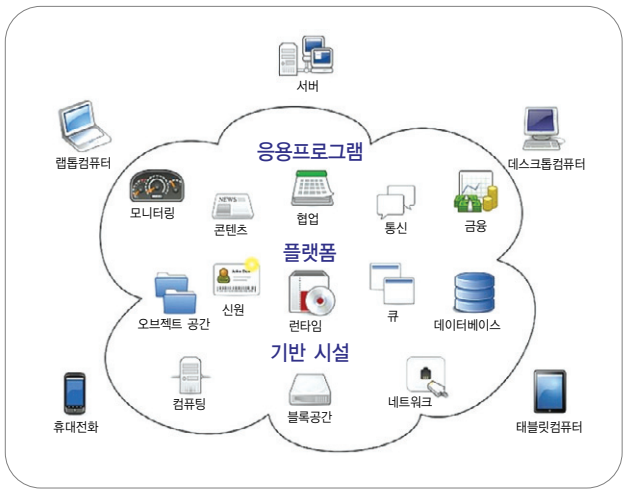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기반(Cloud)의 컴퓨터기술(Computing)을 의미하며 클라우드(Cloud)는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 숨겨진 복잡한 인프라 구조, 인터넷을 뜻한다.

클라우드는 사용자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각종 정보통신 기기로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 기초하여 사용자는 데이터를 신뢰성 높은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개인이 가지고 다녀야 하는 장비나 저장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공서에서 그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처럼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특허권)」에 관한 경계가 모호해 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최근 EU를 중심으로 저작권의 핵심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창작성' 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저작권의 기본 이념인 표현방법에 대한 보호가 아닌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 기능에 대한 보호가 시도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 접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의 가공과 활용기술의 보호는 단순히 저작권 또는 BM 특허로 보호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나.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연속적인 계층의 물질을 뿌리면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부가 제조 기술의 일종으로서 1980년 초반 미국의 3D시스템즈사가 최초로 개발하면서 최근에는 2D 프린터와 유사한 속도로 구현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진행 중이다. IT분야 리서치 회사 가트너에 따르면 3D 프

린팅 시장이 2012년 16억 8천만 달러(약 1조 8천억 원)에서 2016년에는 3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D 프린터를 통해 디지털 형태의 파일만 가지면 누구나 전문기술 없이도 입체적 형상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해져, 향후 형태모방과 관련된 지재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저작권을 포함한 지재권 관점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D 프린터는 캐드데이터 파일만 있으면 누구나 전문지식이 없어도 신속 · 간편하게 입체적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현재 산업분야에서는 대량생산에 앞서 소량으로 시제품을 신속하게 제작하여 실험 및 테스트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개인분야에서도 예술 및 디자인 · 교육 · 취미생활 분야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장비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개인사용이 늘어나며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재권 침해 문제에서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는 분야이다.[32]

3D 프린터 사용과 관련된 지재권의 침해문제는 지재권 부여 대상물의 디지털화, 전송 및 공유, 3D 프린터를 통한 형상 등 3개 단계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다. 권리의 경우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침해를 고려할 수 있는데 특허권 침해의 경우 개인적, 혹은 실험 · 연구 등을 목적으로 특허발명품을 3D 프린터로 제조하는 행위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제조 · 사용 · 양도 · 수입 등 상업적 실시를 할 경우에는 응당 특허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상표권 침해는 물품에 표시된 표장(mark)부분을 삭제하고 3D프린터로 물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으나 물품의 형상 자체가 상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을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하고 이것이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 침해는 비평,교육 및 사적인 복제 등 공정이용 목적을 제외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대상물을 디지털 파일화하는 행위는 당연히 저작물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해당 디지털 파일을 거래 또는 공유하거나 3D 프린터로 제조하는 행위 역시 응당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3D 프린터를 이용한 형태모방과 관련된 법원의 공식적 판결은 아직 보고된 바 없으나, 미국의 경우 3D 디지털 파일 공유사이트인 Thingiverse에서 유명보드게임 Warhammer의 캐릭터 형상을 3차원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작 · 공유했다하여 게임제조사 Games Workshop과 파일을 제작하여 업로드한 개인 간에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바 있으나 양자 합의된 사례가 있었다.

32)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주최, 추계학술대회, (2013.11.23.), 김지훈 사무관(특허청) 발표자료 참조

제 3 장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성과

••• 제1절 제도개선

1. 지식재산권 법령 제 · 개정

가. 특허법

특허청은 한 · 미 FTA 타결에 따른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령을 개정하였다. 법 개정을 통해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은 물론, 소송과정에서 알려지게 된 영업비밀이 보호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을 방지하며 손해입증이 용이해지는 등 효과적인 특허권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표 3-1-1〉 법령개정 주요 내용(시행 2012.3.15.)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 (제30조제1항)	•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전에 자신의 발명을 공지한 경우 12개월(기존 6개월)이내 출원 시 등록 가능
특허권 취소제도의 폐지 (제116조 삭제)	• 특허발명의 불실시에 따른 특허권 취소제도 폐지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92조의2, 3, 4 ,5)	• 특허권이 일정기간(예: 출원일로부터 4년) 이내 설정등록되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 연장(단, 출원인 때문에 지연된 기간은 제외)
비밀유지 명령제도 (제224조의3, 4, 5)	• 특허침해에 관한 소송 중 알게된 영업비밀에 대해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령

나. 상표법

1) 한 · 미 FTA 이행을 위한 상표법 개정

특허청은 한 · 미 FTA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소리 · 냄새 등의 비 시각적인 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법을 개정하였다.

〈표 3-1-2〉 법령개정 주요 내용

비시각적 상표의 보호 (제2조제1항제1호다목)	• 소리 · 냄새상표를 상표법상 보호대상에 포함
증명표장제도 도입 (제2조제1호제4호)	• 상표의 품질 보증기능 강화 및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
전용사용권의 등록의무 제도 폐지 (제56조, 제58조)	• 상표사용에 대해 전용사용권을 별도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발생 인정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제67조의2)	• 상표권자가 피침해로 인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금액 또는 일정한도의 금액을 손해로 인정
비밀유지 명령제도 (제97조의7, 8, 9)	• 상표권침해에 관한 소송 중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해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령

2) 한 · EU FTA 이행 상표법 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의 보호강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몰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추가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등 상표권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상표법을 개정하였다.

〈표 3-1-3〉 법령개정 주요 내용(시행 2012.1.1.)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 (제7조 제1항 제16, 17호)	•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 거절
추가지정 상품의 효력 명시 (제47조 제1항)	• 추가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그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명시
권리침해에 대한 몰수 확대 (제97조의2 제1항)	•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에 대한 몰수 대상 품목에 침해물 제작에 사용된 재료를 추가

다. 디자인보호법

1) 한 · 미 FTA 이행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한 · 미 FTA 협정의 이행을 위해 침해소송단계에서의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송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1-4〉 법령개정 주요 내용(시행 2012.3.15.)

비밀유지 명령제도 (제81조의2, 3, 4)	•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소송 중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해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령

2) 한 · EU FTA 이행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디자인의 실시행위, 등록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행위 및 재심에 따라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행위에 '수출'을 포함함으로써 등록디자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3-1-5〉 법령개정 주요 내용(시행 2011.7.1.)

디자인권의 침해 행위 확대 (제63조)	• 등록디자인의 침해 범위에 '수출'하는 행위를 포함

3) 디자인보호법 전부 개정(시행 2014.7.1.)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디자인 창작요건을 강화하고, 관련디자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통해 핵심디자인이 보다 장기간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우수 디자인이 해외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 국제출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표 3-1-6〉 디자인보호법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복수디자인 (제41조, 제65조)	• 무심사 품목 • 최대 20개까지 인정 • 전체 등록 / 전체 거절	• 심사 / 무심사 품목 모두 가능 • 최대 100개까지 가능 • 일부 등록 / 일부 거절
확대된 선출원 (제33조제3항)	• 본인 출원도 적용	• 본인 출원은 제외
존속기간 (제91조)	•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직권보정 (제66조)	• 없음	• 명백한 오기인 경우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가능
신규성 상실 예외 (제36조제2항)	• 출원시 주장, 출원일 후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 거절이유통지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의견서에 의해 주장
관련디자인제도 도입 (제35조)	• 독자적인 권리범위 인정 안됨	• 관련디자인제도로 변경 – 독자적인 권리범위 인정
재심사 청구사유 (제48조, 제64조)	• 도면의 보정에 대해서만 재심사 청구 가능	• 보정사항 전부에 대해 재심사 청구 가능
디자인 무심사 (용어변경)	• 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	•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출원
국제출원제도 (제173조)	• 국가별 출원	• 국가별 출원 • WIPO를 통해 다수국가 일괄출원

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1) 한 · 미 FTA 이행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특허청은 한 · 미 FTA 협정의 이행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에 침해소송단계에서의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송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1-7〉 법령개정 주요 내용(시행 2012.3.15.)

비밀유지 명령제도 (제14조의4, 5, 6)	• 부정경쟁 등 권리침해에 관한 소송 중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해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령

2) 한 · EU FTA 이행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금지, 지리적 표시의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등 지리적 표시 보호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표 3-1-8〉 법령개정 주요 내용(시행 2011.10.1.)

지리적 표시의 사용 금지 (제3조의2)	•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금지
지리적 표시의 침해 구제 (제3조의2)	• 지리적 표시의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 손해배상 등 구제절차 마련
부정경쟁행위 조사 업무 (제7조)	• 특허청장,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공동사무로 조정

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률 포섭범위 확대(시행 2014.1.31.)

최근 특허청은 상표법, 저작권법 등 기존의 지식재산권 개별 법률로는 보호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까지도 적절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타인의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하였다.

이로써 현행의 한정 · 열거주의적 부정경쟁행위 정의에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 적용 포섭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재권 침해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제2조 제1항 차목)

마. 저작권법

1) 한 · 미 FTA 이행 저작권법 개정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한 · 미 FTA의 합의사항에 따라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였다.

〈표 3-1-9〉 법령개정 주요 내용(시행 2012.3.15.)

조 항	주 제	내 용
제2조 제22호	복제의 범위에 일시적 저장 추가	·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도 도입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제57조	배타적 발행권의 도입	· 배타적 권리를 모든 저작물의 발행 및 복제 · 전송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타적 발행권에서 출판권을 제외하여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
제102조	OSP의 책임제한 요건 구체화	·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OSP의 책임제한 규정 추가
제103조의3	복제 · 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제도 도입	· 권리주장자가 소 제기 등을 위하여 OSP에게 복제 · 전송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 부여
제104조의 4,5,6,7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행위 금지	·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무력화하는 행위, 위조라벨을 배포하는 행위,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녹화 · 공중송신하는 행위 및 방송 전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행위 등을 금지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실손해 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중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 등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제129조의2	정보제공 명령제도 도입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우 등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

2) 한 · EU FTA 이행 저작권법 개정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6월 30일 저작권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표 3-1-10〉 법령개정 주요 내용(시행 2013.7.1.)

조 항	주 제	내 용
제39조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제85조의2	방송사업자의 공연권 인정	•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연권 인정
제102조	OSP 면책규정 명확화	• OSP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 면책요건을 명확히 규정
제104조의2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와 예외 규정 신설

3)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시행 2013.10.17.)

과거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만 명시되어 있어 다른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의 보호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2013년 10월 17일 청각장애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각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 도입된 청각장애인 정보 접근권 조항은 공표된 저작물 등을 수화 또는 자막으로 변환, 이러한 수화 또는 자막을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33조의2)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체계

가. 특허청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과 산업재산권 보호기반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0년 4월에 실효성 있는 단속권한을 행사하고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며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격상시키기 위해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범위에 특허청,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근무하며 위조상품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하였으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38호), 이들은 수사관할에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및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였다.

이후 특허청은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2010년 9월 특별사법경찰대(2013. 10월 현재 22명)를 조직하여 서울(7명), 부산(4명), 대전(11명) 각각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단속인력을 배치하여 위조상품 유통 · 판매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2011년 12월 특별사법경찰대 서울사무소 내 사이버 전문 수사관 4명과 디지털 포렌식[33](Digital Forensic), IP추적 장비 등을 갖춘 온라인 수사반을 출범시켜 전 방위적인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33) 전자증거물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휴대폰, PDA, PC, 서버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는 디지털 수사과정, '컴퓨터 법의학' 이라고도 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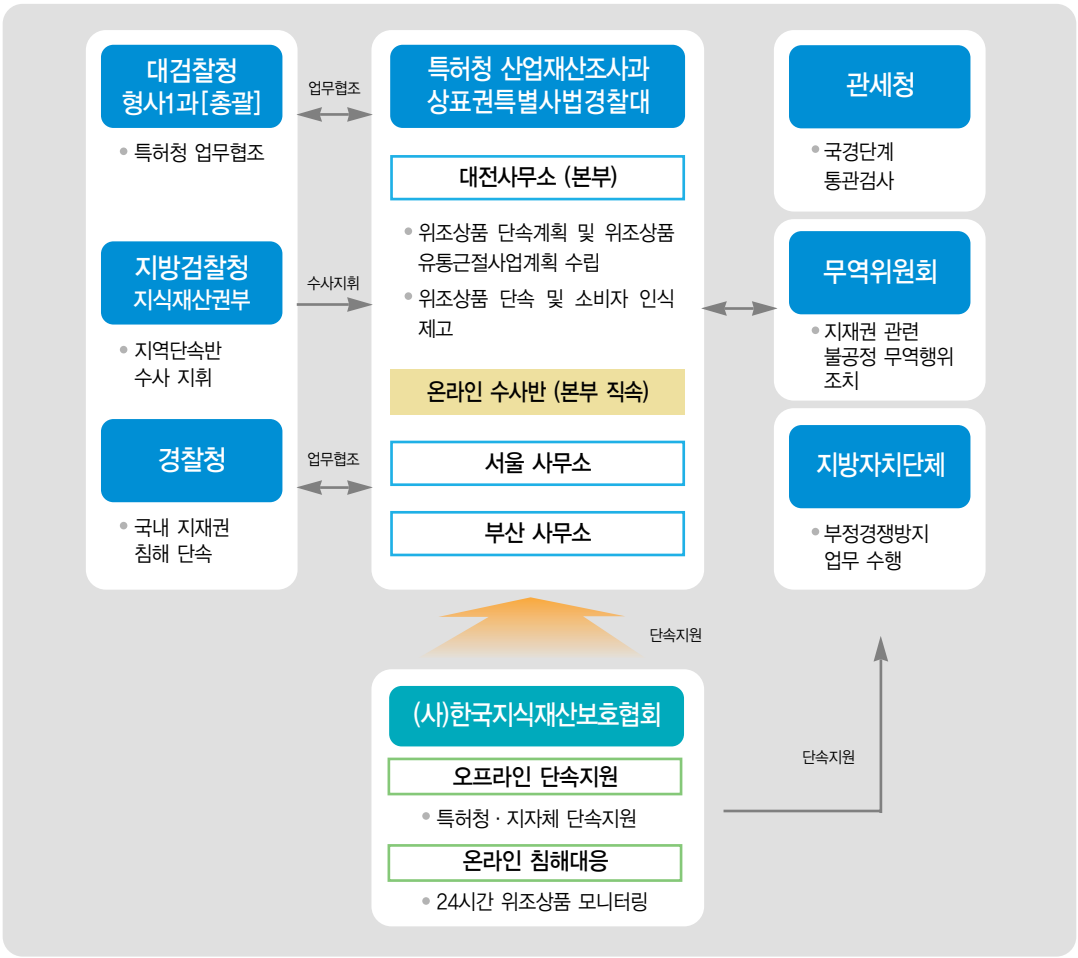

〈그림 3-1-1〉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체계

나. 관세청

관세청 조사총괄과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범위 즉,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의 단속범위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이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한 · EU FTA 발효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세관의 통관단계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물품 등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관세청은 현재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각 지역별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총 47개 세관에서 약 550명의 특별사법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포렌식 장비, 컨테이너 검색기 등 첨단 과학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간 약 5,000건, 정품시가 5조 5천억원의 적발 실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유해 먹거리 및 의약품 불법반입 원천차단,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 검찰 · 경찰청(해양경찰청 포함)

검찰과 경찰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위조상품의 제조 · 판매자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위조상품 추방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대검찰청에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전담 수사반'을 설치하고 전담부장 및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합동수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상의 음악, 영상물 불법 다운로드 · 게시 등 저작권 침해사범, 가짜 유명상표 부착 가방, 운동화 등 위조상품 제조 · 판매사범 등을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위조상품의 제조 · 유통 · 판매자에 대한 수사 및 검거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단속 활동에 있어서 계층조직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다. 지방경찰청의 경우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단속보다는 위조상품 제조자와 유통자에 대한 수사 · 검거에 대한 기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지역 경찰서에서는 위조상품을 수거하고 그 판매자를 고발조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등 핵심기술이 수 · 위탁거래 관계에서 대기업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이에 2007년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 임치(任置)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 하에 서로 합의에 따라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특정 기관에 보관해둠으로써 기술유출의 위험을 줄이는 제도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가장 큰 효용성은 개발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을 개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자료를 공적 기관에 임치시키게 되면 보관된 자료 자체는 더 이상 유출되지 않고 기술자료를 백업해두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므로 자료의 멸실이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기술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기업의 측면에서도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파산이나 폐업, 또는 더 이상의 영업이 불가능하여 기술자료의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료를 맡겨둔 공적 기관으로부터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마.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각종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무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물품 등의 수출 · 수입 · 판매 · 제조행위의 중지, 당해 물품 등의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정정광고,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최종판정이 내려지므로 법원판결에 비해 신속하고 근본적인 제재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tc.go.kr)

〈그림 3-1-2〉 무역위원회가 제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5가지 유형

또한,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감시 · 적발을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이 빈발한 13개의 업종 단체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불공정무역행위조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정책자문을 위해 지재권 분야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지재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WTO TRIPS) 협정의 이행 및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를 국내 · 외로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고 지리적표시제(GI; Geographical Indication)를 도입하였다. 지리적표시제는 명성 · 품질 및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의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보성녹차'가 제1호로 등록된 이후 2013년 5월 현재 농산물 85개, 임산물 45개 등 130개 단체가 등록되어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리적 표시 제품의 품질수준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리적 표시에 대한 유사 · 허위표시, 내 · 외부 포장 및 광고물 용기의 포장 등을 통한 오인표시 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침으로서 보호상품의 명칭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사. 문화체육관광부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관련 정부조직체계는 그림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과 저작권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저작권법 제2조의 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동법 제113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물의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저작권특별사법경찰[34]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저작권보호센터」[35]는 저작권법 제133조에 따른 불법복제물의 수거 · 폐기 및 삭제 등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민간부문의 저작권 보호를 지원한다. 민간부분에서는 저작권법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내용에 따라 각 분야별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구성되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권 관리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 9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5개 지역에 사무소(총28명, '12. 12. 31 기준)를 두고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35) 저작권보호센터는 2005년 4월 설립되어 저작권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불법복제물의 수거 · 폐기 및 삭제 등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온 ·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을 단속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오프라인팀, 사이버팀, 기술연구팀, 클린사업팀, 조사홍보팀, 기획전략팀으로 구성되어 온 · 오프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뿐만 아니라 건전한 저작물의 유통환경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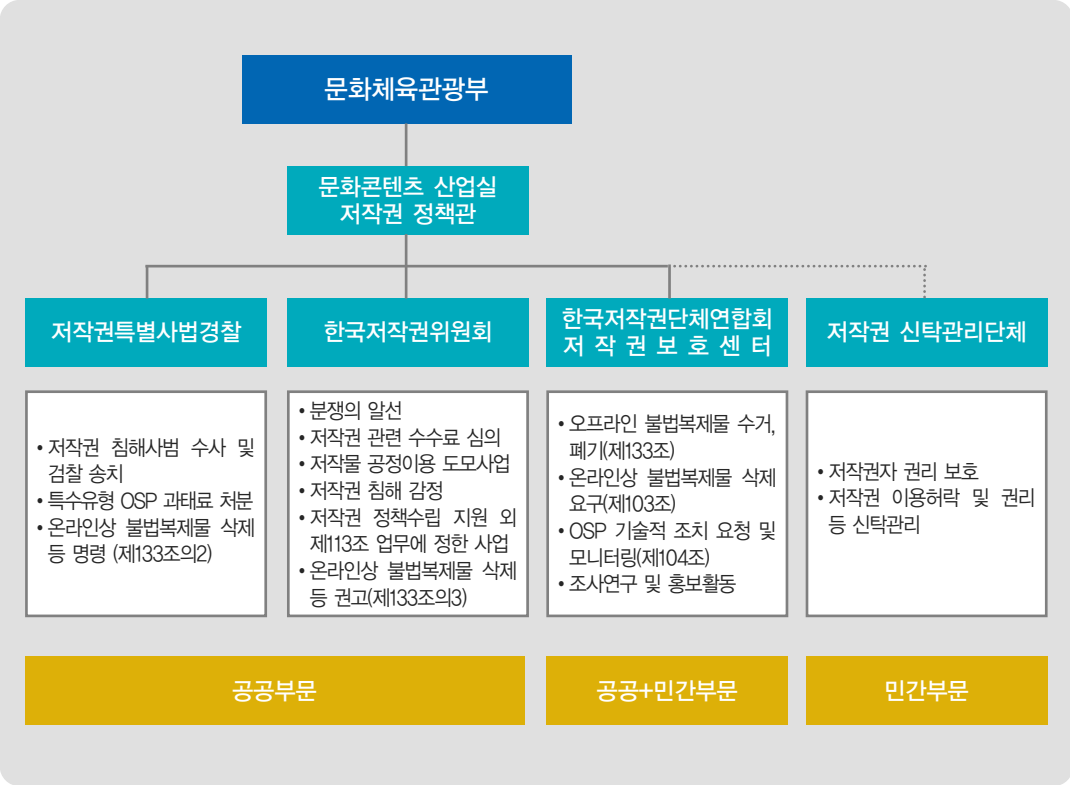

〈그림 3-1-3〉 저작권 보호 관련 조직체계

••• 제2절 침해대응 및 단속활동 강화

1. 산업재산권 분야 침해 및 단속 현황

가.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대 출범(2010.9)을 계기로 사법기관의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위조상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상습 위조상품 판매사범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특별사법경찰대 도입 전 · 후 단속실적을 비교하여 보면 월 평균 형사입건은 약 9배, 압수물품 수량은 약 19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특별사법경찰대 도입 이후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전문성을 가지고 소규모 영세판매업자보다는 위조상품 제조 및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에 주력한 데 기인한다.

〈표 3-2-1〉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의 위조상품 단속 실적

구 분		특사경 도입이전 ('10.1~8)	특사경 도입 이후			
			'10.9~12	'11	'12	'13.9월
형사입건	인원(명)	15	45	139	302	300
	압수(점)	2,860	28,629	28,589	131,599	221,915

압수물품에 대한 분석 결과, 유명브랜드 상품을 모방한 가방류, 의류, 장신구류, 신발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정품시가로 환산하면 145억원이 넘는다.

〈표 3-2-2〉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의 위조상품 적발 수량

품 목	가방류	의류	장신구	신발류	안경류	시계류	기타	계
적발수량 (점)	6,560	36,045	4,072	44,622	2,994	199	37,107	131,599

향후, 온 ·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위조상품 척결을 위해 상습 · 고질적인 제조 · 유통업자에 대한 특별단속, 위조상품 유통 빈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뿐만 아니라 가짜 의약품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제조 · 유통업자 등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참 고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위조상품 단속 사례**

경기도 생활용품 공장 단지 내에 의류 위조상품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나이키, 아디다스 등 가짜의류를 제작해 도 · 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제조업자 검거(의류 2만5천여점 현장압수)

〈위조상품 제작에 사용된 부자재〉

〈현장 단속 압수물품〉

나. 관세청의 위조상품 단속

관세청은 본청 및 전국 세관(출장소 포함 총 47곳)에 위조상품 단속 전담반을 설치하고 상품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위조상품의 수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청이 국내시장 내에서의 위조상품 단속을 관할하고 있다면, 관세청은 위조상품의 수출입을 적발하여 국내시장으로의 유입을 막고 해외로의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1997년 이후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세관직원에게 부여함에 따라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등의 범칙조항에 해당하는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해 입건 및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6조 14호)

또한, 관세청은 통관단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표권 등 지재권의 세관 권리보호 신고 및 수출입 통관보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내역을 세관으로 신고하면 수출입 검사과정에서 침해의심 물품 발견 시 수출입자 및 권리자 통보, 자료 확인 등을 통해 침해여부를 판단하여 통관보류 및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밀수 · 관세포탈 · 부정수입 등 관세사범, 공항 · 항만에서 발생하는 마약사범, 원산지 위반 및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 등 대외무역사범, 수출입 · 환적과 관련된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수출입과 관

련된 외환사범을 단속한다. 전국 47개 세관에 약 550명의 조사요원들이 포렌식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등 첨단과학장비, 마약탐지견 등을 활용하여 연간 약 5,000건, 5조 5천억원 규모의 상품을 적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된 불법 위조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2012년에는 587건을 적발 · 조치하였으며, 수입된 위조상품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오픈마켓사업자, 인터넷포털사업자 등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모니터링을 불시에 실시하고 있다.

〈표 3-2-3〉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적발건수	금액	적발건수	금액
상표권 침해	485	5,965	508	7,642
저작권 침해	37	1,590	66	1,604
특허권 침해	–	–	1	66
기타 침해	8	6	13	20

* 기타 : 디자인, 부정경쟁방지 위반 등

다. 검찰 · 경찰청 (해양경찰청 포함)의 위조상품 단속

대검찰청은 전국 26개 검찰청에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전담부장 및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합동수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상의 음악, 영상물, 인터넷 상의 음악, 영상물 불법 다운로드 · 게시 등 저작권 침해사범, 가짜 유명상표 부착 가방, 운동화 등 위조상품 제조 · 판매사범 등을 단속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특허청 내 특별사법경찰대를 지휘하고, 필요에 따라 합동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표 3-2-4〉 검찰청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단속인원(명)	160,887	81,831	82,966	84,001

경찰청은 온 ·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의류, 가방 등 해외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상표권 침해를 지속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 대부분이 타인 명의의

통장,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단속을 회피하는 등 갈수록 지능적인 범죄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법행위 발생 시 집중수사를 통해 운영자를 신속하게 검거함으로서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표 3-2-5〉 경찰청의 상표권 침해사범 단속 실적

구 분	발생건수(건)	검거인원(명)	기소(명)
2009년	4,105	4,946	4,303
2010년	3,172	4,466	3,642
2011년	2,178	2,831	2,093
2012년	1,640	2,378	1,732

해양경찰청은 주요 명품브랜드의 가방 · 의류 · 의약품의 위조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유형의 상표법 위반사범 단속에 집중하여 왔다. 특히, 2012년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등에 대한 기획수사 활동을 통하여 해외 명품가방 · 시계 · 의약품 등을 불법제조 · 유통시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표권 위반사범 42명을 검거하였으며 압수금액은 547억원 상당이었다. 향후, 지식산업의 보호차원에서 상표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 디자인권 · 영업비밀 · 산업기술 등 지식재산권 전반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대상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표 3-2-6〉 해양경찰청의 상표권 침해사범 단속 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단속인원(명)	39	38	52	42
압수금액(억원)	500	247	82	547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의약품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의약품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단속 및 근절을 위해 관세청 · 경찰청과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불법의약품 유통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의 불법광고를 통한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등 13개 업체대표와 마약류 · 의약품 인터넷 판매 단속업무 협력체계(MOU)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정화활동을 펼치는 한편, 학생 · 주부 ·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 의약품 안전지킴이' 의 운영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3-2-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의약품 단속 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온라인 게시물 삭제(개)	449	822	2,409	10,912	14,592
고발 · 수사의뢰(명)	11	48	15	14	88

참 고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불법 의약품 단속 사례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정집을 위장한 창고에서 비아그라 37만여정, 포장용기, 사용설명서 등 총 58만 여점(정품시가 371억원)의 가짜 약품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제조업자 등 가족일당 검거

〈불법의약품 단속 현장〉

〈압수한 가짜 비아그라〉

마. 지방자치단체의 위조상품 단속

특허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조사 권한을 각각 가지고 있다. 지자체의 위조상품에 대한 조사는 특허청으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해 오던 것을 2011년부터 지자체의 공동사무로 조사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있다. 각 급 지자체는 관할구역의 소상인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조사활동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와 함께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권고 이행여부 확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소상인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의 문제점 및 위법성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3-2-8〉 지자체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위조상품 합동단속 실적

(단위 : 명, 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9월	계
시정권고	3,570	2,044	2,325	1,778	9,717
시정여부 확인	-	-	92	359	451
적발물품	19,234	10,821	9,246	8,596	47,897

바.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IPOMS: Intellectual Property Online Monitoring System) 운영을 위탁하여 위조상품 판매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IPOMS)는 국내 유명 오픈마켓과 개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상시 수집하여 이들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동 시스템은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게시물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 담당자를 통해 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의심키워드, 블랙리스트, 가격정보, 이미지 정보 등과 비교하여 위조상품 판매정보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 시스템을 통해 식별된 위조상품 판매의심 정보는 전문성을 갖춘 모니터링 담당자의 분석 및 상표권자의 감정 등 침해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오픈마켓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관하여 판매 게시물 및 ID삭제, 사이트의 접속 차단 · 폐쇄 등으로 처리된다.

동 시스템은 기능 개선을 통해 모니터링 범위를 포털사이트, SNS, 해외(중국) 오픈마켓으로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 위조상품 유통정보 및 해외에서 유통되는 국내 기업의 위조상품 정보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 방위적 모니터링 체계 및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3-2-9〉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실적

(단위 : 건)

구 분	'10년	'11년	'12년	'13.9월	계
오픈마켓 판매중지	2,890	3,566	4,256	3,081	13,793
쇼핑몰 접속차단 · 폐쇄	207	364	505	682	1,758
계	3,097	3,930	4,761	3,763	15,551

2. 저작권 분야 침해대응 및 단속활동 강화

가. 단속활동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 부산 · 광주 · 대전 · 대구 다섯 개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표 3-2-10〉 연도별 주요 단속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증 감
특별사법경찰 사법처리(송치)	1,116명	1,803명	61.6%
한국저작권위원회 시정권고	107,724건	250,039건	132.1%
저작권보호센터 복제 · 전송중단 요청 및 수거 · 폐기 등	377,549건 86,607,707점	921,211건 177,007,537점	143.9% (104.4%)
온라인 재택모니터링 운영	263,286건 80,458,992점	412,278건 109,882,656점	56.6% (36.6%)
불법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82,621건 3,161,355점	491,253건 65,132,086점	494.6% (1,960.3%)

나. 주요 활동 성과

1)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 · 분석 수사지원체계 운영 확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는 해당 관할지역 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 수사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증거수집 · 분석 수사지원 등 과학적 수사기법 운영 강화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지원체계 운영의 확대에 따라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저작권 침해사범 송치 건수도 2008년 11명, 2009년 312명, 2010년 716명, 2011년은 1,116명, 2012년 1,803건으로 증가하였다.

〈표 3-2-11〉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수사지원 현황

(단위 : 건)

구 분	문화체육관광부							검찰	기타	계
	본부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소계			
사전조사	0	2	2	2	2	2	10	0	0	10
증거수집	0	2	2	2	4	2	12	0	0	12
증거분석	0	23	16	15	26	22	102	0	0	102
증언	0	0	0	0	0	0	0	0	0	0
기타지원	0	0	0	0	0	0	0	0	0	0
'13년	0	27	20	19	32	26	124	0	0	124
'12년	1	118	65	42	61	24	311	11	1	323
'11년	2	28	14	26	8	3	81	204	6	291
'10년	–	18	39	17	20	–	94	–	–	94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수사지원은 2010년 94건, 2011년 291건, 2012년 32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2년에는 웹하드 기획수사(16개 업체 31개 사이트)를 통해 증거자료 수집 · 분석지원을 하였다. 2013년 상반기에는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인 토렌트 사이트(10개 사이트)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124건을 지원하여 저작권법 위반사범 수사지원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시정명령) 최근 웹하드 등록제 시행, 검 · 경의 수사단속 강화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폐쇄형 커뮤니티, 웹하드 등의 카페 등 보다 은밀화 복잡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9년에 통합저작권법에 의한 시정권고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하여 35,345건의 권고조치를 한 이후 2010년에는 85,085건, 2011년에는 107,724건, 2012년에는 250,039건 등 매년 권고조치를 확대해 가고 있다.

〈표 3-2-12〉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건수

연 도	처분명	OSP	건 수
2010년	경 고	40	696
	삭제 또는 전송중단	5	43
	계정정지	3	11
	합 계	48	750
2011년	경 고	15	220
	삭제 또는 전송중단	15	220
	계정정지	4	17
	합 계	34	457

*2012, 2013년 시정명령 조치건수 없음

(시정권고) 2009년 7월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50여만 건의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률은 99%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 조치는 시정권고 불이행 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하고 있다.

〈표 3-2-13〉 연도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건수

구 분		연간실적	시정권고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2009년	합 계	35,345	13,466	21,840	39
	웹하드	33,644	12,612	20,995	37
	P2P	773	579	194	–
	포털 등	928	275	651	2
2010년	합계	85,085	42,794	42,200	91
	웹하드	82,413	41,458	40,864	91
	P2P	2,140	1,070	1,070	–
	포털 등	532	266	266	–
2011년	합계	107,724	54,504	53,106	114
	웹하드	101,359	51,282	49,963	114
	P2P	1,041	522	519	–
	포털 등	5,324	2,700	2,624	–
2012년	합계	250,039	130,304	119,560	175
	웹하드	135,961	72,516	63,270	175
	P2P	344	172	172	–
	포털 등	113,734	57,616	56,118	–
2013년 6월말	합계	55,162	28,155	27,007	–
	웹하드	20,612	10,757	9,855	–
	P2P	32	16	16	–
	포털 등	34,518	17,382	17,136	–

3) 불법 소프트웨어(S/W) 점검 및 컨설팅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 공공기관 ·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S/W 불법복제 점검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S/W 관리 소홀 및 의식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S/W 관리 가이드와 점검용 프로그램 배포를 확대함으로써 불법 S/W 점검 및 컨설팅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 · 소기업에도 무료로 S/W 관리체계 컨설팅을 실시하여 2012년까지 720개 기업체 · 공공기관이 컨설팅을 받았다. 또한 공정한 S/W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외 21개 S/W 저작권사가 참여한 '2012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생한마당'을 개최하고, 총 9회에 걸쳐 전국 공공기관의 S/W 관리 담당자 537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림 3-2-1〉 2012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생한마당

〈그림 3-2-2〉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담당자 교육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활동과 더불어 S/W의 효율적 관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13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책자를 발행하였다. 「2013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에는 라이선스 정의, 관리 절차 등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S/W 관리대장, 서약서도 참조로 수록되어 있다. 책자에는 일반인들이 혼동하기 쉬운 무료와 유료 S/W에 대한 설명이 있어 그 S/W 관리 구축의 전반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2-3〉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4) 저작권 상설단속반 운영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 · 장치 · 정보 · 프로그램에 대한 수거 · 폐기 및 삭제업무를 저작권보호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2007년부터 상설단속반을 구축 · 운영함으로써 온 · 오프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오프라인) 상설단속반 운영을 통한 오프라인 수거 · 폐기 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불법복제물 단속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SD카드, USB, 외장하드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복제물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일명 '효도라디오'가 큰 유행을 타면서 해당 기기에 불법복제물을 넣어 판매하는 업자들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표 3-2-14〉 최근 4년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실적

(단위 : 건, 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말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음악	367	35,163	310	458,522	150	41,227	326	412,100	362	775,160
영상	873	380,769	430	310,355	435	211,491	535	209,539	365	81,013
출판	541	11,956	704	18,902	489	16,541	537	17,224	281	8,127
게임	2	1,480	9	6,529	–	150	1	427	–	5
합계	1,783	429,368	1,453	794,308	1,074	269,409	1,399	639,290	1,008	864,305

* '건'은 단속을 통해 적발한 노점상(제작공장 등) 수를 의미하며, '점'은 적발한 불법복제물의 수를 의미함

(온라인)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산에 따라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가 급속히 늘어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는 24시간 365일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 · 요청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36]을 개발 · 운영하고 있으며 킬러 콘텐츠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36)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Illegal Copyright Obstruction Program)은 불법복제물의 자동 검색과 증거 수집, OSP에 대한 불법복제물 복제 · 전송 중단 요청을 자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상설단속반의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표 3-2-15〉 최근 4년간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실적

(단위 : 건, 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말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음악	4,802	1,011,707	16,240	1,220,551	28,993	2,039,991	37,344	3,998,851	13,848	1,613,609
영상	150,355	4,413,577	221,382	2,436,669	277,559	2,705,055	766,463	5,220,243	94,466	964,478
출판	5,553	14,387,822	7,929	20,244,886	22,466	28,048,143	31,724	41,507,614	7,732	12,822,940
게임	16,991	101,724	28,969	168,579	25,958	179,672	31,451	114,101	9,954	26,128
만화	2,327	7,179,732	3,888	10,324,682	16,430	53,337,106	28,562	125,482,653	9,841	47,856,968
SW	-	-	-	-	5,069	28,331	24,268	44,785	6,612	11,081
합계	180,028	27,094,562	278,408	34,395,367	376,475	86,338,298	919,812	176,368,247	142,453	63,295,204

* 상기 실적은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및 재택모니터링 실적을 포함하고 있음

5)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택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하여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재택모니터링은 휴일 없는 주 · 야간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09년 35명, 2010년 71명, 2011년 100명, 2012년 100명, 2013년 350명으로 재택모니터링 요원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불법콘텐츠 유통 방지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불법복제물이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K-pop 등 킬러 콘텐츠와 토렌트 등의 신규 침해유형 서비스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3-2-4〉 2013 재택모니터링 요원 발대식

〈그림 3-2-5〉 2013 재택모니터링 요원 교육

〈표 3-2-16〉 최근 4년간 재택모니터링 실적

(단위 : 건, 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말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음악	4,200	514,133	6,877	736,533	11,275	1,210,329	27,351	2,969,024	10,734	1,135,465
영상	145,140	4,298,193	196,767	2,295,964	196,160	2,264,515	295,305	3,055,388	28,063	286,480
출판	5,329	13,330,594	7,889	20,111,250	17,439	24,625,504	27,109	34,000,473	5,150	8,436,961
게임	9,359	67,427	22,466	128,677	20,456	130,067	25,558	89,450	7,342	16,139
만화	1,947	6,289,896	3,718	9,875,833	15,867	52,223,470	16,383	69,729,984	5,162	19,381,312
SW	-	-	-	-	2,089	5,107	21,012	38,337	5,722	9,094
합계	166,877	24,500,243	237,717	33,148,257	263,286	80,458,992	412,718	109,882,656	62,173	29,265,451

6) 오프라인 실버감시원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일어나는 불법복제물 판매현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휴 고령 인력에게 고용시장 재진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버감시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 인력으로 구성된 실버감시원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서의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불법복제물 판매현장 발견 시 단속기관에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3-2-17〉 실버감시원 제보를 통한 단속 실적

(단위 : 건, 점)

구 분	제보실적(건)	단속 실적(건)	단속 실적(점)			합계
			음 악	영 상	게 임	
2012년	1,291	406	96,484	40,587	292	137,363
2013년 6월	1,006	333	264,747	22,716	5	287,468

7)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이트를 관리함으로써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유통시키는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클린사이트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합법 서비스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 · 배포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스스로가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림 3-2-6〉 클린마크

클린사이트 지정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과 평가위원회의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클린사이트에게는 클린마크를 부여하고, 온 · 오프라인상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클린사이트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3-2-7〉 클린사이트현황

3. 신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의 성과

가. 식물신품종 보호정책의 성과

1) 첨단기술 활용의 종자관리체계 구축

국립종자원은 핵산 분석법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품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각 품종에 적용하고 있으며, 딸기의 경우 26개 단순 반복 염기서열 마커를 이용하여 딸기 101품종에 대한 핵산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표 3-2-18〉 품종식별 마커를 이용한 DNA 구축 현황

구분	작물명	활용기법	품종수	구분	작물명	활용기법	품종수
채소류	고 추	SSR[37]	672	채소류	양파	SSR	137
	수 박	SSR	300		딸기	SSR	21
	멜 론	SSR	180	과수류	복숭아	SSR	143
	토마토	SSR	122		사과	SSR	61
					블루베리	SSR	40
	배 추	SSR	435	화훼류	장미	SSR	70
	참 외	SSR	108	식 량 작 물	벼	SSR	373
	당 근	SSR	22			SNP	78
	호 박	SSR	167		보리	SSR	71
	무	SSR	288		콩	SSR	148
	상 추	SSR	171		옥수수	SSR	90
	오 이	SSR	175	버섯류	느타리	SSR	69
계 : 22작물 3,941 품종							

* 출처 : 국립종자원 "종자관리 주요통계" (요약).

37) SSR(Simple Sequence Repeat) : 반복염기서열 분석법, 염색체 내의 특정 부위에 분포하는 단순 반복 염기서열의 차이를 이용한 유전자 분석법

2) 작물군별 품종보호권 등록 현황

1998년 1월 1일에서 2013년 10월 31일 까지의 작물군별 품종보호권은 총 4,699 건이 등록되었고, 그 중 내국인의 품종보호권은 총 3,537건으로서 1,162건의 외국인 등록 건수에 비해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품종보호권은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그 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개인 육성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런 현황은 외국에서의 품종등록이 종자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농업분야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된 산림분야의 경우 2009년 밤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46건이 등록되었고, 수산분야의 경우 출원된 품종을 심사중이며, 등록된 품종은 없다.

〈표 3-2-19〉 민간육성품종 출원 및 등록 현황(2013년 10월 31일 현재)

구분 / 작물	계						국 내						외 국			
	계	개인	종자업계	지자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업계	지자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업계	국가
화훼류	2,676	352	1,238	532	533	21	1,531	319	126	532	533	21	1,145	33	1,112	0
식량작물	742	22	29	60	574	57	739	21	27	60	574	57	3	1	2	0
채소류	733	23	552	44	89	25	727	23	546	44	89	25	6	0	6	0
과수류	255	92	25	39	95	4	251	91	22	39	95	4	4	1	3	0
특용작물	168	5	20	18	120	5	167	5	19	18	120	5	1	0	1	0
버섯류	89	21	14	32	20	2	86	19	13	32	20	2	3	2	1	0
사료작물	22	3			19		22	3	0	0	19	0	0	0	0	0
산 림 조경수	14	12			2		14	12			2					
계	4,699	530	1,878	725	1,452	114	3,537	493	753	725	1,452	114	1,162	37	1,125	0

* 출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공보 제184호", p252

나. 지리적표시 보호정책의 성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는 '02년 보성녹차 1호 등록을 시작으로 147건이 등록되었고,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06년 장흥 표고버섯 1호 등록을 시작으로 212건이 등록[38]되었다('13년 9월 현재).

38) 농식품부, 지리적 표시보호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보도자료 참고자료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사이트 http://www.naqs.go.kr, 산림청 인터넷 사이트 http://www.forest.go.kr,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사이트 http://www.nfqs.go.kr 참조

〈표 3-2-20〉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현황 ['13년 9월 현재]

연도	등록수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09	23	영천포도, 영주사과, 서생간절곶배, 무주사과, 함평한우, 삼척마늘, 김천자두, 영동포도	문경오미자, 무주머루, 울진송이, 횡성더덕, 약양대봉감, 영동곶감, 가평잣, 홍천잣	보성벌교꼬막, 완도전복, 완도미역, 완도다시마, 기장미역, 기장다시마, 장흥키조개
'10	18	진도대파, 김천포도, 원주치악산복숭아, 영월고춧가루, 예산사과, 영광찰쌀보리쌀, 여수돌산갓 여수돌산갓김치, 청도한재미나리, 담양딸기, 보성웅치올벼쌀, 사천풋마늘	정선곤드레, 보은대추, 청도반시,거제맹종죽순, 태백곰취, 인제곰취	
'11	19	고령수박, 의령망개떡, 강릉한과, 금산깻잎, 괴산찰옥수수, 인제콩, 김포쌀, 영광한우	덕유산고로쇄수약, 진도구기자, 횡성참숯, 담양죽순, 무주머루와인, 충주밤, 함양곶감	완도김, 완도넙치, 장흥김, 장흥매생이
'12	15	나주배, 창녕마늘, 고흥한우, 진도검정쌀, 거문도쑥, 부산대저토마토	울릉도 우산고로쇠 수액, 강릉개두릅, 화순작약, 화순목단, 원주 옻 칠액	여수굴, 남원미꾸라지, 고흥미역, 고흥다시마
'13	2	안성배	무주 천마	

한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특허청의 등록건수는 2008년에는 5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 48건이 등록[39]되었다.

〈표 3-2-21〉 연도별 단체표장 등록건수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단체표장 등록(출원)건수	5 (8)	10 (20)	55 (71)	15 (18)	48 (66)

다. 유전자원 보호정책의 성과

국내 유전자원 표본은 약 15,789종 137만 점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식물 유전자원 표본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50,000점, 광림산림박물관에서 10,740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4,100점을 각각 보유하고 있고, 동물 유전자원 표본은 국립중앙과학관에 852,000점, 농업과학교육원에 297,580점, 세계해양생물전시관에 20,126점이 소장되어 있다. 특히 곤충의 표본은 국내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45개소에 150만점 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9) '2012지식재산통계연보', p112, 특허청

〈표 3-2-22〉 국내 생물자원 보유 성과

보유 기관	생물자원의 종류	총 보유 수
환경부 (야생 생물)	동 물 : 18,000종, 식 물 : 8,000종 기 타 : 25,000종	총 28,500종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용 생물)	미생물 : 23,000, 동 물 : 800 곤 충 : 7,100, 기 타 : 20,000	총 51,500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 (농림업 관련 생물)	농업생명자원 : 316,769점, 산림생명자원 : 1,035,517점 수의생명자원 : 4,311점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농수산생명자원 시행계획" p.7	총 1,356,597점
해양수산부 (해양 생물)	어 류 : 40종, 패 류 : 20종 기 타 : 10종	총 70종
보건복지부 (인간 및 병원성 미생물)	인간생체자원 : 232건, 병원성미생물 : 2,000종	총 2,232건

라.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의 성과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개념과 보호범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적 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내 실태 조사 및 연구 활동이 꾸준하게 이루어졌다. 2007년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WIPO 논의 및 국제 동향 파악, 2010년 선진국과 개도국의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주요 입법 및 분쟁사례 조사를 위한 연구, 2012년 국내 전통문화표현물 유형 분석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한 연구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단기적으로 국제적 논의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제적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력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성과

연예, 오락 시장뿐만 아니라 문화, 스포츠 산업까지 광범위하게 퍼블리시티권 시장이 확대되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2년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실태 조사,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국내와 해외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산업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일부법률개정안 등의 법안이 발의되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제3절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

1. 심판 및 소송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자는 국가의 사법기관을 통해 민 ·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지방법원에 침해금지소송,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의한 불복이 아닌 당사자 간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분쟁의 당사자는 특허청 소속의 특허심판원에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무효심판, 특허정정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적극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보다 신속하면서도 향후의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심결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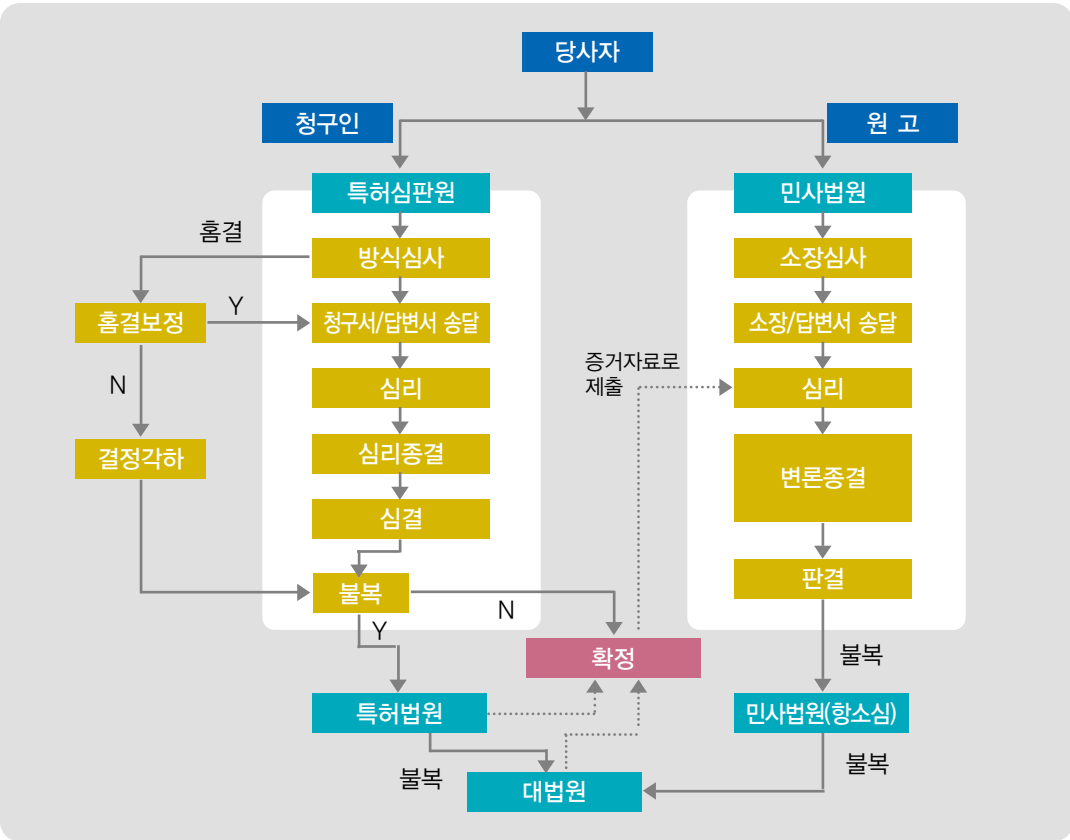

〈그림 3-3-1〉 특허심판 및 특허민사소송 흐름도

한편,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로서, 특허심판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2심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가.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1) 국내 심판건수 추이

2000~2012년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산업재산권 심판은 161,659건으로서, 2000~2008년 사이에 산업재산권 심판이 매년 평균 1,600건씩 증가하였고, 2008~2010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의 이유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완만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14,747건이 청구되었다.

2) 국내 소송건수 추이

2002~2011년 사이에 발생한 전체 산업재산권 소송사건은 특허법원에서 1088건, 대법원에서 406건으로서, 2002~2008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나 2008~2010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의 이유로 오히려 감소한 후 2011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나. 접근 편의성 제공

1)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운영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는 지역의 지식재산보호의 활성화 및 변리서비스의 접근 용이성 제공 등을 목적으로 특허청이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마다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현재 31개지역에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중소 · 벤처기업의 경우 특허전문인력 부족, 자금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력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므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판, 심결취소소송 등의 분쟁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특허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민원이나 문의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민원상담창구를 구축하여 특허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별, 심사별, 분쟁별 대응의 절차적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분쟁에 대한 사전 준비를 요하는 일

반인 및 사업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특허고객상담센터는 CQM(Contact Center Qualified Mark) 및 KS 인증을 획득하였고, 'PC 원격지원 상담서비스'와 '엔젤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고객상담센터는 개설 초기인 2002년에는 연간 17만 6,168건(월 평균 1만 9,574건)의 전화상담이 이루어졌으나, 2012년에는 연간 68만 2,324건(월 평균 5만 6,860건)의 전화상담이 이루어져 2002년 대비 190%가 증가하는 등 매년 이용 고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다. 법률 자문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하여 특허청에서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출원 · 심사 · 등록에 대한 제반절차 등 권리획득방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쟁대응능력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고장 · 심판청구서 · 의견서 · 준비서면 등의 작성방법, 심판 · 소송 쟁점의 파악방법, 권리범위해석 방법 등 절차적 · 실체적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표 3-3-1〉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법률상담 연도별 실적

구분	지재권 관련 상담					서류 작성	기타	합계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내방자 상담	순회 상담	소계			
'07년	2,348	904	915	540	4,707	405	48	5,160
'08년	2,736	1,142	1,122	719	5,719	458	63	6,240
'09년	3,269	1,175	1,261	682	6,387	462	74	6.923
'10년	3,658	1,085	1,155	710	6,608	500	13	7,121
'11년	4,445	1,290	1,652	622	8,009	652	9	8,670
'12년	5,883	1,565	2,289	582	10,319	801	12	11,132
'13. 10	10,488	751	2,014	406	13,659	599	7	14,265

라. 분쟁대응 컨설팅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분쟁대응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되어 국제 특허분쟁대응 컨설팅 지원 및 분석사업 지원, 특허분쟁대응을 위한 지재권 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3-3-2〉 분쟁대응 컨설팅 주요 내용

컨설팅 종류	수출 전 사전분석	특허 보증대응	전시회 참가전 분쟁예방	분쟁확대 예방전략	라이센스 전략	권리행사 전략	분쟁피해 예방전략
지원권리	특허, 디자인			특허, 디자인, 상표(권리행사 전략)			
컨설팅 지원상한	40백만원			50백만원(상표 20백만원)			
	협의체 : 25백만원(1개 기업당)						
지원비율	중소기업 70% / 중견기업 50%						

1)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

컨설팅 지원사업은 수출 시 또는 전시회 참가 시 해외경쟁사와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납품기업의 특허보증을 요구받은 우리기업에게 분쟁발생이 예상되는 해외경쟁사 특허에 대한 분석, 무효전략 및 회피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경쟁사로부터 경고장을 수령한 경우 경고장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받은 경우 협상전략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침해소송 발생 시에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법률 및 기술검토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2) 컨설팅 지원성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한 지재권분쟁 컨설팅은 2011년 72개사를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110개사로 그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 특히 '12년에는 총 110개사 지원을 통해 467.4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투입된 예산의 13.16배에 해당한다('12년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기술과 가치, '12.12).

〈표 3-3-3〉 분쟁대응 컨설팅 주요 지원 현황

구분	수출 전 사전분석	특허보증 대응	전시회 참가	분쟁확대 예방	라이선스 전략	분쟁피해 예방	권리행사 전략	합계
2009	1	1	1	21	14	5	2	45
2010	22	4	3	16	9	15	9	78
2011	20	7	1	19	–	17	8	72
2012	58	6	2	19	2	13	10	110
'13. 5.	25	4	–	9	4	4	5	51
합 계	126	22	7	84	29	54	34	356

마.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시행

최근 인터넷 발달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음악, 영상물 불법 다운로드, 게시 등 저작권침해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고, 일부 법무법인 등이 합의금 종용 수단으로 고소를 하는 사례가 빈발함으로써 청소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유발하고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무분별한 고소로 인한 폐해를 막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인터넷 저작권 침해사범 남고소에 따른 처리 지침'을 수립하고 2009년 3월부터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확대 시행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였다.

시행 초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저작권법 위반 사건 중 청소년(미성년자)들만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교육의 효과가 상당하고, 침해자의 대부분이 고의보다는 과실에 의한 침해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2009년 3월에는 시행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도 기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확대하여 2012년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 2,856명(성인 2,760명, 미성년자 9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2.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1)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의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엄격한 소송절차에 따른 법관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합의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이는 소송의 지연 및 비용부담에 따른 불만에서 시작된 새로운 분쟁해결방법으로 제도권 안에서 행해지는 법원이 아닌 여러 행정기관이나 단체가 조정기관을 두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2) 지식재산권 분야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필요성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있어 법관이 아닌 전문가의 조력 하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해결 절차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분쟁의

당사자에게 절차의 주재자가 조력하여 분쟁의 당사자로 하여금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기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지식재산 분야 분쟁해결 기관으로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을 행하는 기관과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중재기관이 있다.

나. 한국저작권위원회

1) 목적과 근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는 저작권법 제112조, 제113조, 제119조에 따라 조정과 감정이 있다.

2) 조정

① 조정부의 구성

조정위원은 저작권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 학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된 합의 7부와 변호사 1인으로 구성된 단독 4부 등 총11개의 조정부를 두고 있다. 조정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상호 양보와 타협을 유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게 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② 조정의 대상

조정의 대상으로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분쟁, 저작재산권에 관한 분쟁,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 보상금에 관한 분쟁이 있다.

③ 성과

2012년의 조정 신청 건수는 총 78건이었으며, 그 중 21건이 성립되었다. 유형별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의 비중이 높으며, 연극저작물, 건축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등에 대해서는 조정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 2013년 상반기의 경우 총 55건이 신청되었으며, 그 중 24건이 성립되었다. 유형별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어문저작물, 인접저작물에 대한 신청이 여전히 비중이 높았으며 전년도 대비 음악저작물에 대한 조정 신청은 낮았다. 대신 미술, 사진, 영상, 연극 저작물에 대한 조정신청이 늘어나 조정 신청 저작물의 다양화가 나타났다.

〈표 3-3-4〉 연도별 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건수

분야 / 연도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2차적 저작물	저작 인접물	데이터 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계
1988~2007	315	118	5	192	7	154	31	7	46	2	33	3	211	1,124
2008	9	15	–	5	–	10	3	–	4	–	1	2	13	62
2009	10	3	1	7	–	11	–	–	2	1	4	–	16	55
2010	18	6	–	12	–	7	2	1	1	–	7	–	8	62
2011	26	1	–	11	–	7	5	2	–	–	11	–	19	82
2012	17	13	–	1	–	4	–	–	–	–	10	–	33	78
2013.6	12	2	1	5	–	3	3	–	–	–	6	–	23	55
계	407	158	7	233	7	196	44	10	53	3	72	5	323	1,518

3) 감정

① 감정의 수행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그 침해 여부에 대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는 경우 각 저작물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정전문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

② 감정의 대상

감정은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ⅰ)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저작권 침해 감정, ⅱ) 소프트웨어의 완성(하자)도, 유사(복제)도, 개발비 등을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감정, ⅲ)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대한 감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감정은 컴퓨터프로그램과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자료(설계서, 매뉴얼 등)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기타 전자적 정보에 대한 감정을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 분쟁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소프트웨어 계약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③ 성과

2012년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의 일반 저작물 19건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40건 등 총 59건의 감정이 의뢰되었고, 33건의 감정결과를 의뢰

기관에 통보하였다. 2013년 상반기에는 일반 저작물 10건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22건 등 총 32건의 감정이 의뢰되어 18건의 감정결과를 통보하였다.

〈표 3-3-5〉 연도별 감정 의뢰 현황

구분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기타
2008년	1	–	–	–	–	–	–	–	47	–
2009년	–	1	–	–	1	–	–	–	42	–
2010년	8	1	–	5	1	–	–	–	38	1
2011년	4	1	–	3	1	–	1	–	27	–
2012년	7	2	–	7	–	1	1	–	40	1
2013년	1	2	–	3	–	–	–	2	22	2

한편, 현재 감정전문위원회는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개의 위원회에서 SW 감정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두 개의 위원회에서 일반 저작물 감정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2012년에는 26회의 감정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30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2013년 상반기에는 19회의 감정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개의 안건을 심의하여 2012년보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1) 목적과 근거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분쟁이 더욱 복잡화 ·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기존 소송제도 이외에 산업재산권 전문가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이 필요하여 발명진흥법 제41조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1995년부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2) 위원회 구성과 조정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자이며, 위원은 산업계 · 학계 · 법조계 · 비영리민간단체 등 15인 이상 ~ 40인 이하로 구성된다.

조정대상은 산업재산권의 침해 · 양도 · 실시 및 직무발명 보상에 관련된 분쟁으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발명진흥법 제44조)

3) 조정 신청 현황 및 성과

1995년 동 위원회 운영 이후 2012년까지 접수된 조정신청은 총 104건으로 연평균 약 6건 정도이며,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총 25건으로 성립율은 24%이다.

〈표 3-3-6〉 연도별 조정 신청과 성립 현황

연 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신 청	4	2	13	15	7	5	3	15	5	5	5	5	5	4	4	3	2	2	104
성 립	2	–	7	4	3	–	–	2	1	1	–	1	1	–	1	–	–	2	25
불성립	2	2	6	11	4	5	3	13	4	4	5	4	4	4	3	3	2	–	79

* 출처 : 특허청 2009 지식재산백서, 2009년~2012년 자료는 정보공개시스템 공개정보

라. 대한상사중재원

1) 중재의 성격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불복 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단 1회의 중재판정으로 분쟁이 종료되고, 중재 소요기간은 약 4~6개월 정도로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하고 있다.

2) 위원회 구성과 중재절차

중재인은 법조계, 실업계, 학계,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2013년 8월 현재 총 1,09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 중재인은 분쟁당사자가 직접 선정하거나 중재원에서 추천한 중재인 후보 중에서 선임하게 된다. 중재절차는 일반절차와 신속절차로 나뉘어지고, 신속절차는 당사자 간에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중재사건이나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국내중재사건에 적용하며,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함으로서 중재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3) 중재 신청 현황 및 성과

지식재산 침해 관련 분쟁 및 기술, 지식재산권 계약관련 분쟁에 대한 1997년부터 2008년까지의 중재신청 건수를 보면 대부분 10건 미만으로 분쟁에 대한 중재 신청건수는 적은 편이고, 신청된 분쟁 금액면으로 보면 대부분 10만불 이상의 고액이다.

〈표 3-3-7〉 연도별 상사중재에 의한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건수 및 금액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약건수	12	8	2	9	8	10	12	17
금 액	3,084	32,903	7,505	11,795	12,083	4,063	8,336	10,415

*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 단위 : 건, US$1000 / ** 기술계약과 지식재산권 계약을 합친 현황임

마.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1) 목적과 조정대상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가 투기의 대상이나 또는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주소를 보다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4년에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주소의 등록 · 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전담하고 있다.

2) 위원회 구성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 3년)되며, 법률 제16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인터넷주소에 관한 법률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대학교수, 변호사, 변리사, 관련연구자 등으로 구성된다.

3) 중재 신청 현황 및 성과

2002 ~ 2004년까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126건으로서, 그 처리에 있어서 이전 42건, 말소 48건, 기각 12건, 합의취하 18건 및 수수료 미납 취하 6건에 이르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328건이 접수되어 그 신청 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신청 건의 처리는 이전, 말소 및 합의에 의한 취하를 중심으로 분쟁조정이 성립되고 있다.

〈표 3-3-8〉 2005년 ~ 2012년까지의 신청 · 조정 처리현황

처리 결과	이전	말소	기각	당사자 이전 합의에 의한 취하	수수료 미납 등에 의한 취하	소제기로 인한 조정절차 중지	총 건수
사건 수	92건	163건	18건	41건	13건	1건	328건

* 출처 : 도메인이름분쟁백서(2012)

3.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처분

무역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화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를 통해 관세법 337조를 기반으로 구제를 시행하고 있고, 1988년의 관세법 개정 이후 이용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무역위원회(KTC; Korea Trade Commission)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무역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무역위원회(KTC)의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제도는 특허심판 및 소송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등의 타 제도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구제건수가 2001년 이후 평균 3~4건 내외로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40]이며 또한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공세에 대하여 수세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가. 무역위원회(KTC)

1) 조사 및 판정절차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누구든지, 서면으로 신청가능하며, 조사개시결정 후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 제재조치에 대한 수단 및 수준을 결정한다.

40) 나종갑 (2008) "미국 · EU 및 일본 등 주요국의 지적재산권침해무역구제관련규정연구" 무역구제 계간지 29호

〈표 3-3-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절차

조사 신청
(신청인 ⇨ 무역조사실)
- 누구든지, 서면신청(조사신청서+증빙자료)
-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직권조사
-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무역조사실 / 위원회보고
① 신청기간,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 보완
② 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

잠정조치
① 신청인의 잠정조치 신청(담보제공)
② 무역위원회가 시행여부 결정
③ 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명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무역조사실
- 서면조사 원칙, 면접 또는 현지조사 가능
- 외부전문가 감정, 기술설명회 등
- 사유발생시 조사 중지 및 종결
-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 · 판정

의견수렴
- 판정 전, 제재조치(안)에 대한 (피)신청인의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최종판정
무역위원회
① 조사개시 후 6개월내 판정(2월씩 2회 연장 가능)
-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 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

② 지재권 침해 기판정물품 확인

제재조치 시행
무역위원회 ⇨ 피신청인
- 시정조치 명령(시정조치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
(피)신청인 ⇨ 무역위원회
-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이의신청 심의 · 결정
무역위원회
-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30일 연장 가능)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및 처리현황

최근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를 중심으로 조사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향후 지재권 중에서도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3-3-10〉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현황

구 분	'01 이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지재권침해	115	4	5	4	6	4	3	3	5	13	5	8	7	182
원산지 표시위반	54	4	–	1	–	–	1	2	3	2	2	2	–	71
허위 · 과장 표시	–	–	–	–	–	–	–	1	–	–	–	–	1	2
수출입 질서저해	63	1	–	–	–	1	–	–	–	–	–	–	–	65
계	232	9	5	5	6	5	4	6	8	15	7	10	8	320

그동안 접수된 320건 중 107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표 3-3-11〉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제재조치	무혐의 처 리	관련기관 이 첩	조사종결 등 기타	조 사 진 행 중	총 계
107	90	40	81	2	320

나. 관세청

세계무역기구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TRIPS)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을 이루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관은 관세법 제235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인 특허권 ·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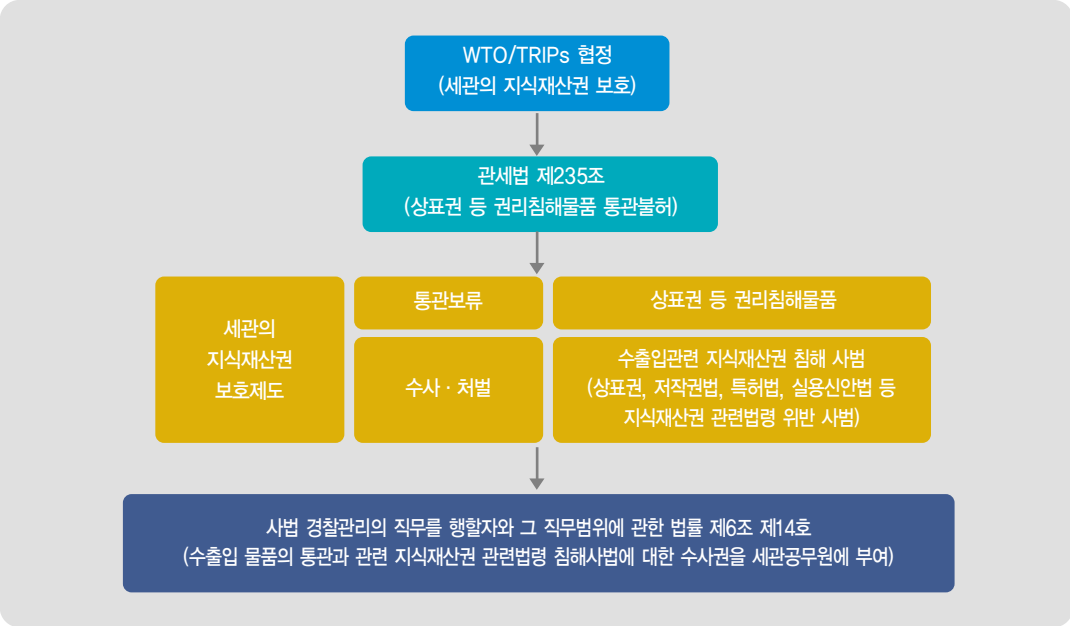

〈그림 3-3-2〉 세관의 지재권 보호절차 도해

1) 침해물품 통관보류절차

세관에 신고한 지식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수출입신고 사실을 지재권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신고인의 요청(담보 제공)에 의해 통관을 보류할 수 있고,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지재권 침해우려물품에 대하여는 권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직접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권리 침해가 명백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보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표법 등 관련법령 위반혐의로 송치된다.

2) 침해물품의 조사와 처벌

관세법에 의한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외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출입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세관 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상표권, 저작권 침해사건은 물론 특허권 등 수출입 관련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서도 개별법 위반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있다.

3) 관세행정심판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처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관세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세관장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다시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제4절 지식재산 보호기술의 고도화

1. 저작권 보호기술의 고도화

가.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부터 스마트폰 앱 저작권 보호, e-Book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호환, 저작권 침해예방 및 점검 S/W,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등 저작권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3월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저작권 기술 R&D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4개의 R&D 과제를 추진하였다. 2012년도 저작권 기술 R&D 사업은 국가 R&D 예산 대비 평균 실적을 상회하는 특허출원 32건, 특허등록 1건, 기술이전 및 상용화 16건 등을 달성하였다.

〈표 3-4-1〉 2013년도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현황

구분	연구개발 과제명	'13년 예산	사업기간
저작권 기술 개발	클린 클라우드를 위한 내용 기반 이용제어 기술 개발	15억 원	3년('12~'14)
	저작권 침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점검 SW 기술 개발	8.8억 원	3년('11~'13)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반 모바일 앱 불법복제 방지 기술 연구 개발	8.6억 원	3년('11~'13)
	바이너리코드 동적 고유정보 기반 SW 유사성 감지 기술 개발	4억 원	3년('12~'14)
	저작물 전송 관련 로그정보의 신뢰성 제공을 위한 저작권 기술 연구 개발	5억 원	2년('12~'13)
	북스캔 어문 만화 저작물 식별 및 복제방지 기술	5억 원	3년('13~'15)
	소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메시업 도구 요소기술 개발	4억 원	3년('13~'15)
	비트토렌트 불완전체로부터의 저작물 식별 기술 개발	2억 원	2년('13~'14)
	저작물 관리 유통 분배 정산에 대한 혁신 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	5억 원	3년('13~'15)
기술실용화 지원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DRM)이 적용된 ePub 3.0 기반의 다양한 전자책 콘텐츠를 지원하는 통합 멀티뷰어 시스템 개발(자유공모 과제)	1.5억 원	1년('13)
과제기획, 평가, 성과관리	R&D 과제기획, 선정 · 평가 및 성과관리 등	2.1억 원	1년('13)
합 계		61억 원	

나.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와 적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관련 별표 2의2에는 웹하드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른 기술적 조치와 저작권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이 중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조치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적용해야 한다.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는 오디오 · 비디오 인식기술을 활용한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에 대한 평가로 기술업체별로 기술의 상이함과 기술적 조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평가와 필드평가로 나누어 수행한다. 기술평가가 개발된 기술의 성능을 평가 한다면, 필드평가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된 기술이 성능저하 없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표 3-4-2〉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평가 대상 및 범위

구 분		내 용	비 고
성능평가	기술평가 (1단계)	• 알고리즘 등의 기술평가 후 기준 부합 시 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 (웹하드 등록요건)
	필드평가 (2단계)	• 기술평가 확인받은 기술이 실서비스에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평가 ※ 통과 조건 : 기술평가 인식 콘텐츠 3초 이내 100% 인식	실서비스 적용 시 기본 1회 ※ 필요시 수시평가
제한조치		• 제한조치 사항 발생 시 성능평가 신청제한 및 결과 홈페이지 공지 ※ 제한조치 대상 : 확인서 발급조건 미준수, 시정요청 불응 및 누적 횟수 3회 초과	유효기간 만료부터 1년 동안 신청 제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의 성능평가 기준 및 지침을 수립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 말 4개 업체의 기술이 성능평가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2012년에는 5개 업체의 기술이 성능평가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

1)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저작권 정보 수집 · 제공 및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이 가능하도록 2007년부터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저작물에 대한 복잡한 저작권정보를 통합 구축 ·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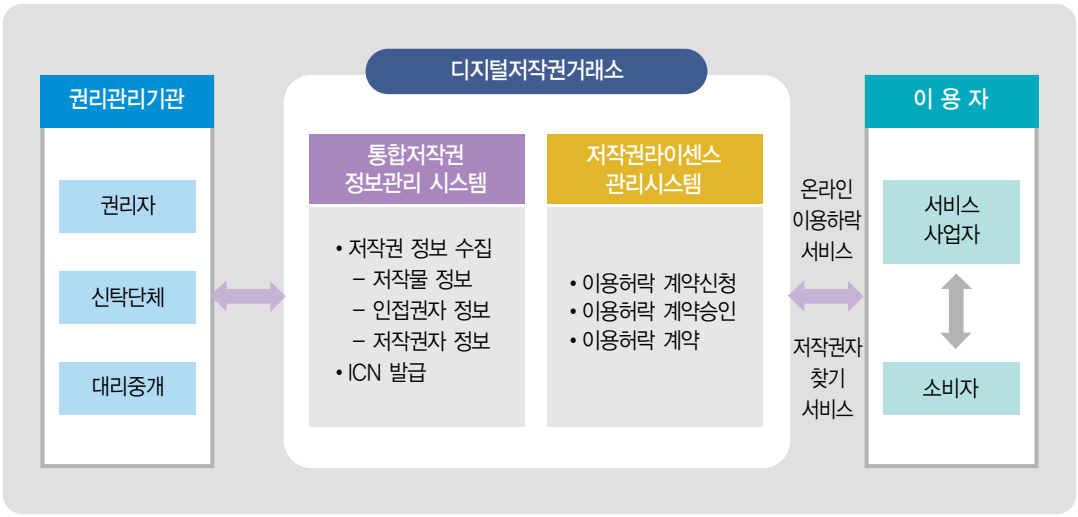

〈그림 3-4-1〉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시스템 구성도

2) 활동 및 성과

① 통합 저작권 정보 수집 · 제공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통합저작권관리번호(Integrated Copyright Number, 이하 'ICN' 이라 한다)' 를 개발하고 관련DB를 구축하여 나가고 있다.

〈표 3-4-3〉 통합 저작권 정보 DB 구축 및 ICN 발급 건수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음 악	국 내	370,000건	15,000건	158,428건	58,031건	1,427,781건	2,029,240건
	해 외	–	100,000건	323,930건	0건	0건	423,930건
어 문		400,000건	400,000건	49,432건	259,109건	30,550건	1,139,091건
방송대본		–	10,089건	–	6,766건	20,071건	36,926건
뉴스		–	–	–	2,409,269건	1,400,588건	3,809,857건
영화		–	–	–	30,000건	–	30,000건
이미지		–	–	–	6,139건	–	6,139건
방송		–	–	–	–	5,255건	5,255건
공공		–	–	–	–	27,943건	27,943건
미술		–	–	–	–	210건	210건
합 계		770,000건	525,089건	531,790건	2,769,314건	2,912,398건	7,508,591건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신탁관리단체, 유통사업자 등의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는 2007년 음악 및 어문분야에서 4개의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9년 2개, 2010년 6개, 2011년에는 5개, 2012년에는 4개 기관이 추가되어 현재 총 21개의 협력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2012년에는 방송 및 미술 분야로 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아리랑국제방송, 한국미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온라인 음원 유통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음악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및 5개 음악유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②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지원

권리자와 이용자 간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과 이용내역 관리를 원스톱으로 하기 위하여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 (CLMS: 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을 개발, 2008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표 3-4-4〉 온라인 계약체결 이용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이용건수	173건	353건	561건	816건	988건	2,891건

CLMS는 2008년 음악의 전송분야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음악의 복제, 공연, 방송분야, 2010년에는 음악보상금(방송/공연), 뉴스의 이용허락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2012년에는 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과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을 통합하여 디지털저작권거래소(www.kdce.or.kr)로 재구축하였고, 음악 복제권 이용허락 시스템을 개선하여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다.

③ 음악 전송로그 수집 · 분배 시스템 구축

음악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이 2012년 6월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개정됨에 따라 유통시장의 투명한 저작권 사용료 정산과 분배에 대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 12월에 음악 전송 로그 수집 · 분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권리자단체 3곳, 음악서비스 사업자 5곳 등은 2012년 10월 음원 사용료 표준(안)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다.

④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findcopyright.or.kr) 운영

「저작권 찾기 사이트」는 권리자에게 저작권 정보와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 목록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저작권자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저작권위원회는 2012년 10월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 및 관리 저작물 의무 등록제도 시행에 맞추어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 및 시스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스템 운영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와 관리저작물 등록 안내를 실시하여 저작권 찾기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위탁관리저작물 533,553건을 접수하여 미분배 보상금 대상 531,906건을 수행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거뒀다.

라. S/W 임치제도 운영

컴퓨터프로그램 임치제도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신뢰성 있는 제3의 수치기관과 합의하여 당해 프로그램(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수치기관에게 임치된 프로그램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8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법제도의 정비, 임치서비스의 개선, 지속적인 홍보 활동, 온라인 임치 시스템(전자계약)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노력을 실시한 결과 총 1,880건의 임치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종류별로 살펴보면 신규 계약 745건, 갱신계약 784건, 사용권자 등록 257건, 최신본 임치계약 94건이 체결되었다.

〈표 3-4-5〉 연도별 임치계약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1~6월)
신규	121	155	151	149	116	53
갱신	65	97	126	182	212	102
사용권자 등록	59	47	53	62	22	14
최신본의 임치	14	17	13	20	21	9
소 계	259	316	343	413	371	178

2002년 4건에 불과했던 임치 서비스 이용건수는 2003년 13건, 2004년 68건, 2005년 88건, 2006년 88건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2007년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도의 시행을 기점으로 150건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SW 산업이 국가 미래산업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과 중소 SW 개발자의 권리보호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SW 임치의 필요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임치 서비스 이용실적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마. ICOP(불법복제물 추적 · 관리 시스템)

ICOP은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의 약어로, 자동 검색 및 특징점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복제 · 전송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보호센터에서 구축한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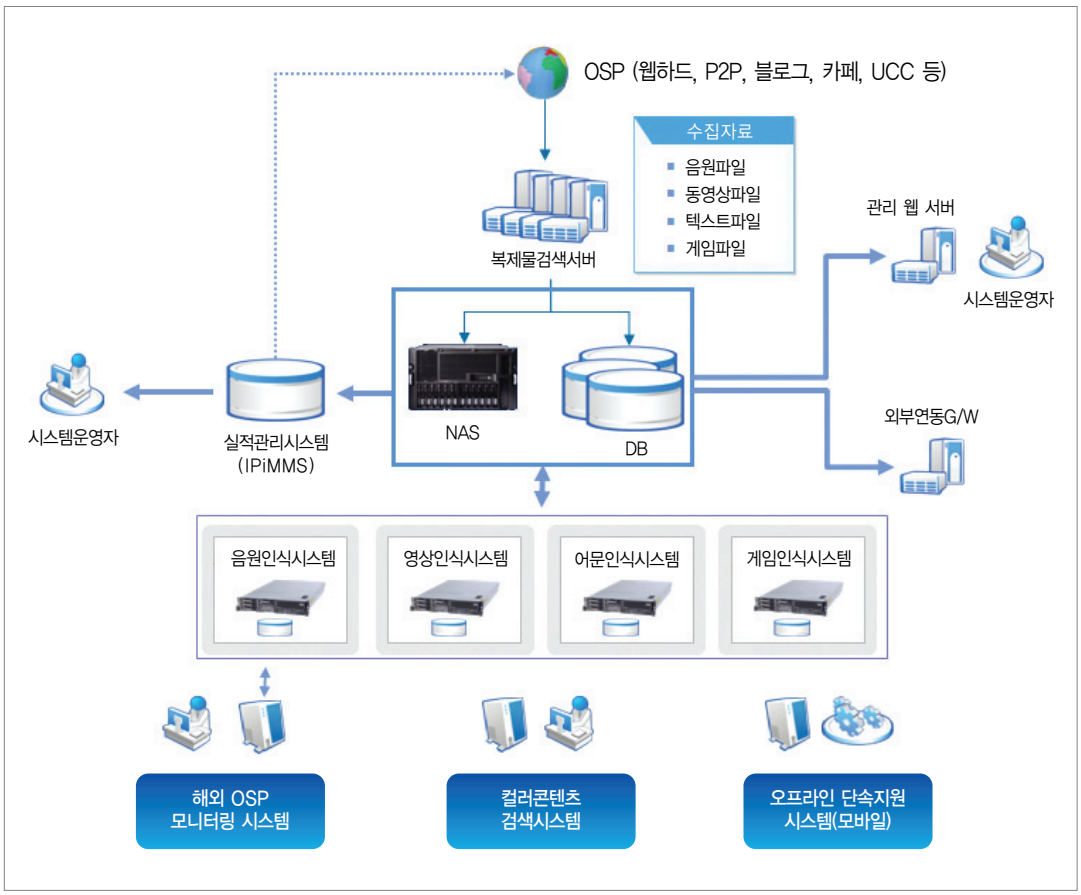

〈그림 3-4-2〉 ICOP 시스템 구성도

「저작권보호센터」는 ICOP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불법복제되어 유통되고 있는 음악 · 영화 · 방송 · 출판 · 만화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찾아서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ICOP은 불법복제물 자동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현황 데이터와 실적 정보를 도표와 그래프로 제공하여 체계적인 실적 관리 기능도 수행한다.

〈그림 3-4-2〉는 ICOP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 주고 있다. ICOP은 크게 특수유형 OSP 및 블로그, 카페, UCC 사이트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과 검색결과 및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를 저장하는 DB, 콘텐츠를 인식하는 인식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ICOP을 활용하여 2009년 음악장르를 시작으로 2010년 영화, 2011년 방송 · 출판 · 게임, 2012년 만화 · 소프트웨어까지 장르를 확장하면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주요 7개 장르를 모니터링하였고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조치를 수행하였다.

〈표 3-4-6〉 불법복제물 삭제 조치실적

구 분	대 상	건	점	증 감
2009	음악	3,188	173,767	-
2010	음악, 영화	17,799	472,439	172% 증가
2011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82,621	3,161,355	569% 증가
2012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SW	491,253	65,132,086	1960% 증가
2013(10월말)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SW	169,744	51,144,691	21%감소

2012년에는 국내 OSP외에 다양한 침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OSP모니터링 시스템, 킬러콘텐츠 조기경보시스템, 오프라인 단속지원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 시스템들의 관리 및 실시간 연계를 위한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통합운영실을 구축하였다.

2. 영업비밀 보호기술의 고도화

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기술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란 전자문서로 보관중인 영업비밀이 도용 · 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원본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홈페이지 방식과 Agent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PC Agent 및 Server Agent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림 3-4-3〉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방법

나. 영업비밀원본증명 서비스 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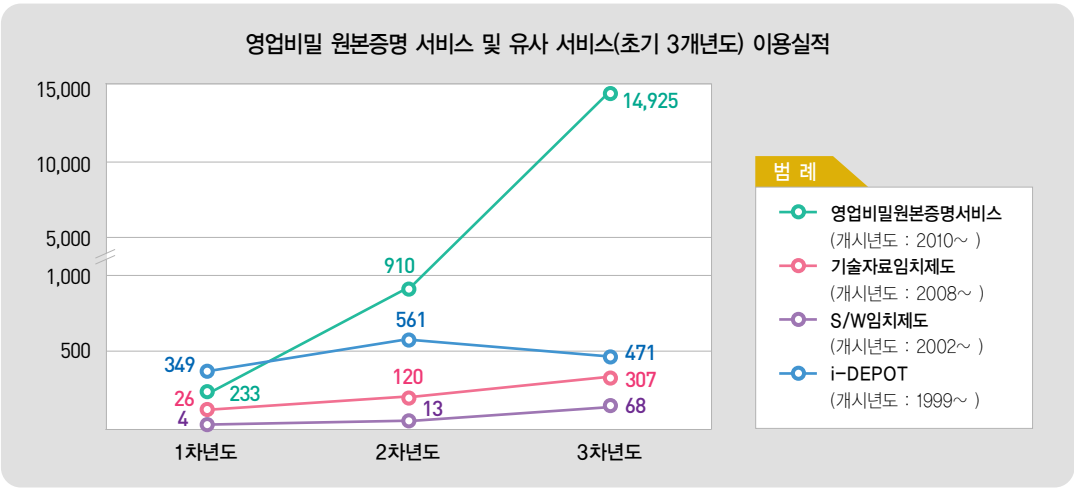

– '10년 11월 서비스 개시 이후 '12년 말까지 총 16,068건의 원본이 등록

*'13년 10월 말 기준 39,755건 등록

– 국내 · 외 유사 서비스의 개시 초(3개년도) 대비 이용건수는 높은 수준임

*(국내) 기술자료임치제도, S/W임치제도, (해외) i-DEPOT

••• 제5절 예방 및 인식제고

1. 산업재산권 분야

가.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

상표권자가 존중받고 고품격 상품들이 원활하게 유통, 소비되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정보기술(IT) 개발과 함께 산업재산권 생태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는 산업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소비자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과 합리적인 소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소비자 주도형 가두캠페인을 매년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서울 및 6대 광역시 등 전국 15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하여 위조상품 구매근절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소비자 캠페인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 확대를 위해 홍보대사(영화배우 박신혜)를 활용하고 다수 언론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정책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그림 3-5-1〉 홍보대사 온라인 활동

〈그림 3-5-2〉 2013 소비자 캠페인

또한,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 홍보함으로서 20~30대 계층의 정책에 대한 호감도 상승과 정품사용 실천인식을 확산시켜왔다. 2013년에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 · 운영하여 지식재산 보호의식 함양과 정품 소비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홍보대사 박신혜와 함께 방송 공익광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 및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SNS 활동 등 위조상품 소비예방을 위한 홍보를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3-5-1〉 소비자 인식제고 사업 활동 현황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9월
소비자 캠페인 언론홍보	28회	15회	35회	64회	310회
소비자 교육 횟수	8회	15회	20회	21회	13회/21회
청소년 체험학습 횟수	-	-	1회	4회	9회/10회
블로그 방문자수(연간 누적)		64,000명	715,387명	1,667,120명	2,320,420명
SNS 관심자수(연간 누적)*	-	-	1,650명	9,560명	10,492명

* SNS 관심자수는 트위터의 '팔로워 수'와 페이스북의 '팬(좋아요)의 수'의 합

나.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 교육

대다수 소비자들의 위조상품 구매이유는 '저렴한 가격으로 정품과 동일한 디자인을 원해서(44.1%)'와 '정품의 가격이 비싸서(29.4%)' 등 금전적 요인인 '가격' 때문에 위조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위조상품 구매자 대부분이 대리만족, 정품 구매자와의 동질감, 경제적 부유함 과시 등의 이유로 잘못된 소비 행위를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구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현명하고 올바른 소비의식 함양을 위해 학부모, 대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식별요령, 위조상품에 의한 피해방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 등 관련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변리사, 특허청 심사관, 일선교사 등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고 다양한 시청각 콘텐츠를 활용하여 서울 및 6대 광역시 등의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품사용 실천유도와 합리적 소비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올바른 소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DVD, 만화도서 등의 제작 · 활용을 통해 지재권 보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일선학교 교사에게도 학습용 지도서를 제작 · 보급하였다.

또한,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위해 위조상품의 불법성,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 등 이론교육과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 중심형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소비의식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3년도에는 홍보대사가 일일교사로 참여하여 언론과 교육기관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지식재산 보호 교육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급증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

〈그림 3-5-3〉 체험학습 운영 전경

지식재산 교육 전문기관인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출원방법, 권리화, 보호방법 등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저작권 분야

가. 침해 예방교육

저작권 침해 예방교육은 청소년 및 성인대상 교육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실시된다.

1) 청소년대상 교육

①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저작권 체험교실은 일선 교사와 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을 강화하고자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특별활동 시간에 일정 시간(6시수 이상)의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창작활동을 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3-5-4〉 저작권 체험교실 활동 현장

2006년 수도권 소재 20개 교실을 시작으로 2013년 6월 현재는 전국 200개 교실로 점차 확대 운영하고 있다.

〈표 3-5-2〉 연도별 체험교실 운영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계
교실 수		20개	20개	79개	117개	198개	99개	100개	200개	833개
교육 인원	학생	921명	745명	3,479명	4,095명	10,669명	5,827명	6,997명	–	32,751명
	교사	20명	20명	79명	120명	151명	79명	74명	148명	692명

②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

저작권 연구학교는 학교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청소년 저작권 교육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저작권 연구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의, 연구반 운영, 토론회, 가두캠페인, 글짓기 대회, 표어 및 포스터 그리기, UCC 제작 활동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수도권 15개교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수도권 및 전남지역 23개 교로 확대 운영하였다. 2009년에는 운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운영학교도 전국 10개 시도, 27개 교로 확대하였으며, 2010년부터 운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표 3-5-3〉 연도별 연구학교 운영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계
학교수		15개교	23개교	27개교	50개교	43개교	39개교	9개교	206개교
교육 인원	학생	12,000명	18,400명	21,600명	42,856명	34,400명	31,200명	–	160,456명
	교사	600명	920명	1,080명	67명	1,720명	1,560명	–	4,518명
	합계	12,600명	19,320명	22,680명	42,923명	36,120명	32,760명	–	164,974명

〈그림 3-5-5〉 저작권 연구학교 활동 현장

③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학교, 기업체와 관련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표 3-5-4〉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학생)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계
교육인원	14,265명	74,938명	254,130명	294,035명	354,868명	117,651명	1,109,887명
교육횟수	19회	130회	2,028회	3,008회	3,016회	2,984회	11,185회

초 · 중 · 고등학교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양성한 저작권 청년강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3-5-6〉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장

④ 온라인 청소년 저작권 교육

2011년 6월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전국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인 '저작권과 친구될래요'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청소년들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학교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공공장소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구성하였다.

2) 성인대상 교육

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성인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 실무현장에서 요구되는 저작권 교육을 위해 대상별 맞춤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3-5-5〉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성인)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계
교육인원	7,340명	19,039명	28,726명	21,473명	18,844명	7,660명	103,082명
교육횟수	103회	244회	431회	403회	358회	163회	1,702회

② 온라인 대학생 및 일반인 저작권 교육

온라인 대학생 및 일반인 과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운영하였다. 본 과정은 대학가에서 논문, 리포트 베끼기 같은 지식절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대학생이 저작권 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2012년까지 900명(2010년 361명, 2011년 258명, 2012년 281명)이 수료하였다.

③ 온라인 학부모 저작권 교육

학부모들이 가정 및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일으킬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 학부모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2011년 6월부터 운영하였다.

온라인 학부모 교육 과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 사이트에서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라는 상시 무료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작권! 정말 쉽네요 △저작자를 존중해요

△저작물을 바르게 이용해요 등 초·중등 학부모 대상으로 각 3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과정별 1차시당 20분이 소요되고 교육기간은 3일이며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개설 첫해인 2011년에는 329명, 2012년에는 855명의 학부모가 수료하였다.

나. 저작권 홍보 활동

1)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조성

① 세계지식재산권의 날(4.26) 기념행사

2012년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 보호 거리캠페인'을 명동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저작권 보호 거리캠페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과 연예인들이 시민들에게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림 3-5-7〉 2012 세계지식재산권의 날 행사

② 포털사 공동 캠페인

365일 1년 내내 36.5도의 건강한 저작권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실시한 '저작권 36.5 캠페인'은 주요 온라인 포털사(다음, 네이트)의 포털 메인화면과 아고라, 네이트온 메신저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또한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자는 내용을 주제로 한 캠페인 웹툰을 제작하고 '다음 만화 속 세상'에 게재하여 어렵게만 여겨지는 저작권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5-8〉 다음(Daum) 웹툰 / 포털사(Daum, NATE) 업무제휴 협약식

③ 저작권 SNS 기자단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페이스북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SNS 기자단'과 위원회 공식 페이스북을 운영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확산을 통한 저작권 인식제고를 도모하였다. 2012년 1기 '저작권 SNS 기자단'은 5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7개월간 저작권 체험활동을 한 후 SNS 및 개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저작권에 대해 널리 홍보하였다. 2013년 2기 '저작권 SNS 기자단'은 7월 발대식을 거쳐 23명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한 정보전달, UCC등 영상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한 저작권 인식제고 노력에 힘쓰고 있다.

또한 공식 페이스북은 온라인 사용이 활발한 일반 대중의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쉽고 친근한 저작권 개념 전달과 저작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국민 소통 채널로서 저작권 인식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2) TV 등 대중매체 활용 캠페인

가족과 함께하는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지하철 영상광고와 '저작권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며 미래'라는 메시지를 담은 라디오(KBS(R), SBS(R), YTN(R), TBS, TBN 등)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대국민 저작권 의식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한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홍보 콘텐츠(동요 제작)를 케이블 어린이 채널 대교, 챔프, 애니원, 애니박스와 공동으로 송출하였다. 이는 정규 편성이 아닌 필러(Filler · 방송사고 때 대체하

는 프로그램)로 운영함에 따라 프로그램 사이 수시편성 및 방영을 시도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정기적 · 산발적 홍보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림 3-5-9〉 저작권인식제고 캠페인(지하철광고)

〈그림 3-5-10〉 케이블 텔레비전(어린이 채널 저작권 홍보)

3) 영화 '굿 다운로더'(Good Downloader) 캠페인

'굿 다운로더 캠페인'은 온라인 불법복제와 유포로 인한 영화 부가시장 붕괴에 대응하여 2007년 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미디어플렉스,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만화영상산업협회등 5개사가 주축이 되고, 128개 유관업체가 참여하여 구성된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가 시작한 캠페인이다. 영화를 포함한 콘텐츠의 합법적 유통 및 이용을 촉진하고 이와 관련 대중적 인식제고를 촉진하고자 2009년 영화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림 3-5-11〉 2013년도 굿 다운로더 캠페인 관련 자료

••• 제6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 지원

1.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지원

가. 해외 지재권 피해 실태조사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피해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기초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매년 지재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우리기업의 산업재산권 피해 실태조사를 분쟁 경험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피해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나. 해외 산업재산권분쟁 예방·대응 컨설팅 지원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발생 또는 분쟁피해 예상시, 수출품 사전분석, 특허보증요구, 라이선스, 권리행사 등에 대한 다양한 분쟁대응전략을 컨설팅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2012년에는 110개사가 해당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았으며, 2013년 10월까지 128개사가 지원을 받았다. 40백만원 한도의 컨설팅 비용 중 중소기업은 최대 70%(중견기업은 50%)까지 간접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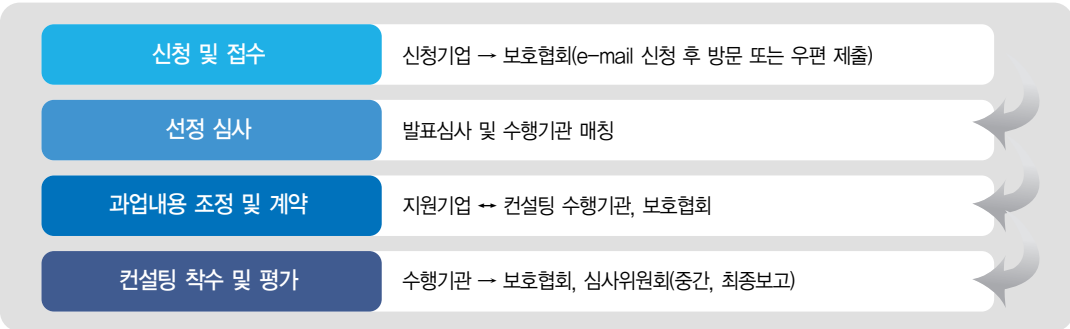

〈그림 3-6-1〉 컨설팅 진행 절차

또한 대·중소기업 및 동종업계 기업군이 공동으로 지재권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교육, 자문서비스 등)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은 5개 분과(자동차공조, 의료기기 등)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 10월까지 LED 조명, 셋톱박스 등 16개 협의체를 지원하였다.

〈표 3-6-1〉 컨설팅 분야별 주요 지원 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수출 전 사전분석 컨설팅	수출 전 또는 수출 중인 제품에 대한 경쟁기업과의 분쟁발생 위험 사전분석 및 회피설계 제공
특허보증 대응 컨설팅	구매자의 특허보증요구 대응을 위한 분쟁 위험성 분석, 회피설계, 특허보증조항 검토 제공
전시회 참가 전 분쟁예방 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시 예상되는 분쟁의 예방을 위해 문제특허 분석 지원
분쟁확대 예방전략 컨설팅	해외기업의 경고장 수령 시 소송 등으로의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라이센스 전략 컨설팅	라이센싱 타결을 통해 분쟁 확대를 막고 불평등 조건의 합의로 인한 로열티 피해방지 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권리행사 전략 컨설팅	자사 해외권리 유효성, 침해주장 가능성 분석 및 단속방안 컨설팅, 악의적 선등록상표 및 지리적 표시 무효화
분쟁피해 예방전략 컨설팅	해외에서 행정 · 법률 절차 대응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검토 및 기술검토 컨설팅

다.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국내기업이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지재권 분쟁이 예상된다면 지재권소송보험을 사전에 가입하여 분쟁발생 시 법률비용에 대한 보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는 우리 중소 · 중견기업이 지재권 소송보험을 통해 지재권 분쟁에 대한 법률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는 29개 기업에 소송비용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50개 기업에 대한 지원목표가 상반기 중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한편 보험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보험료 재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하향조정(매년 10%씩 하향) 및 우선순위표에 의한 지원순위 하향조정을 하고 있다.

지재권 소송보험 상품내용

▷ 보험상품별 보장내용에 따른 법률비용의 80% 보상

보험상품	보 장 내 용	보장한도
소제기(기본)	보험가입자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협상, 침해소송, 세관 · 행정조치	가입시 설정금액 (최대5억원)
권리보호(선택)	보험가입자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재심사, 무효 · 취소(심판)소송, 확인(심판)소송	가입시 설정금액 (최대5억원)
피소대응(선택)	제3권리자의 보험가입자 상품에 대한 경고장 발송대응, 라이선스협상대응, 침해소송대응	가입시 설정금액 (최대5억원)

▷ (보장지역) 전세계 또는 대륙별로 선택가입 가능
▷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 (지원비율) 가입보험료의 최대 70% 지원(중견기업 50%)

라.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정보 제공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는 분쟁정보 조사 · 수집이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분쟁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제 지재권 분쟁동향, 소송사례 및 NPEs(Non-Practicing Entities)[41]의 활동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일일단위 분쟁속보, 월간뉴스레터, 분기별 분쟁이슈보고서의 형태로 우리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와 NPEs의 특허자산운용현황보고서 및 해외 지재권판례 정보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재권 판례는 IP5 국가에 대한 범용 판례를 2013년 말 기준으로 15,800건 구축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진출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지재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현지 법령 및 제도를 소개하는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상국가는 현재까지 총 27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기업 수요와 FTA 대응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우선대상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다.

〈표 3-6-2〉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작 및 발간 예정 현황

구 분		발 간 현 황('06~'12)	발간계획('13)
대륙별 (24)	아시아(13)	말레이시아('06), 필리핀('06), 대만('06), 러시아('06,'11), 인도('08), 중국('05, '09), 일본('06, '09), 태국('07, '09), 베트남('06, '09), UAE('10), 홍콩('11), 싱가포르('11), 인도네시아('12)	인도(개정)
	유럽(5)	터키('07), 영국('08), 독일('07, '09), 네덜란드('11), EU('12)	프랑스(신규)
	아메리카(4)	브라질('07), 칠레('08), 미국('06, '09), 멕시코('11)	미국(개정)
	아프리카(1)	남아공('08)	
	오세아니아(1)	호주('12)	
특성별(1)		수출기업 체크포인트('10)	EU권 보호 실무핸드북

2. IP-DESK 운영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및 해외 무역투자 전문기관인 KOTRA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주요 시장국에 IP-DESK를 설치 · 운영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사전예방을 도

41) NPEs(Non-Practising Entities) :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 거래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 이 중 공격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회사들을 '특허괴물'이라고 지칭하기도 함

모하고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해결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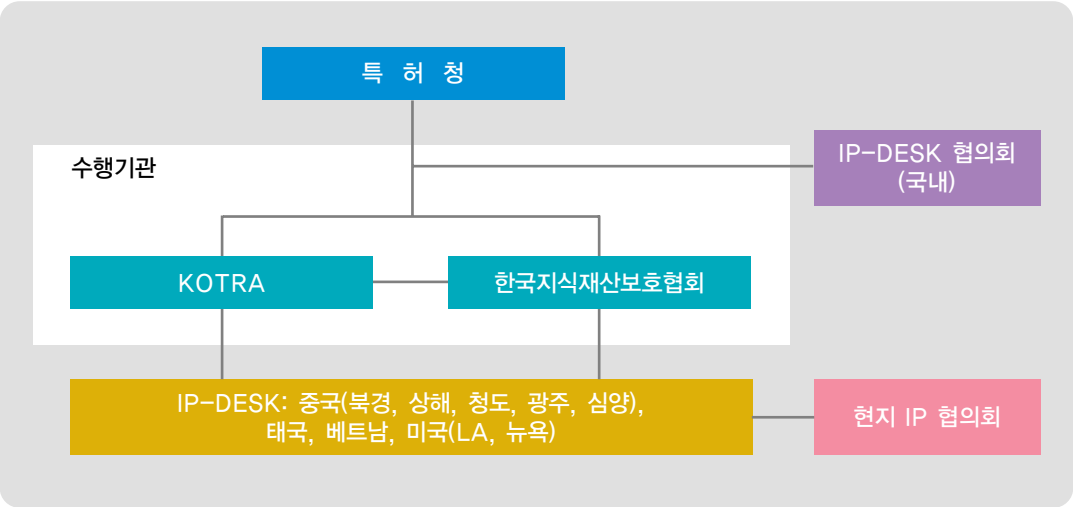

〈그림 3-6-2〉 IP-Desk 추진체계

가. 지재권 종합상담 지원

IP-DESK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IP 수준을 진단 · 분석하고 해당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1년 1,924건에서 '12년 3,107건으로 62% 증가했으며, '13년 10월 현재 3,037건의 상담을 수행함으로써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나. 상표 · 디자인 출원 지원

중국 · 태국 · 베트남 · 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지에서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 · 등록할 경우 대상기업에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13년 10월 기준 누계 188개사 410건). 진출국에서의 산업재산권 확보는 안정된 기업 활동의 전제조건이며, 현지인이 동종의 산업재산권을 선(先)등록할 경우 현지 수출 및 투자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다. 침해조사 지원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IP-DESK는 피해 기업의 신청 또는 자

체 기획에 의해 피침해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행정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연간 실적은 매년 약 20회이며, 협회의 해외지재권분쟁지원사업(컨설팅 및 협의체, 소송보험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확대 · 제공 중이다.

라. 협력채널 구축

KOTRA 해외무역관(81개국, 119개)중 분쟁빈발 지역(미국 등) 무역관에 지재권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KOTRA 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현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지 지재권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위조상품 식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국, 태국 및 베트남 지재권 공무원을 각각 연1회 국내에 초청하여 국가 간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기업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대표단을 2009년 이후 매년 중국 지재권 유관기관에 파견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그림 3-6-3〉 중국 피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사례

〈그림 3-6-4〉 태국 기획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사례

해외 언론 보도('12.12.17) 태국 법무부 특별수사국

"최근 한류열풍과 더불어 한국산 화장품이 태국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모조화장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사용할 경우 피부암 등 신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태국 소비자를 보호하고, 한국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태국내 한국화장품 공식 에이전트들과 협의해서 모조품으로 인하여 태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방콕, IP-DESK)

3. 「해외저작권센터」 운영 등 해외 보호기반 강화

가. 해외 저작권 실태와 「해외저작권센터」 운영

2010년대 한류 열풍을 계기로 국내 문화산업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한류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문화산업 시장에서 콘텐츠 수출의 저해 요인으로 불법복제와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외 저작권 보호와 합법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을 위해 다양한 중점과제를 추진해 왔다. 그 중 하나가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및 합법 교역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진행해온 '해외 저작권보호 프로젝트'이다. 2006년 4월 중국 베이징, 2007년 5월 태국 방콕에 「해외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요 한류 지역에 대한 보호 기반을 구축한 데 이어, 2010년 10월 중국 상하이문화원에 저작권 전문관 파견, 2011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2012년 12월 베트남 하노이에 저작권센터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주요 한류 콘텐츠 진출 지역에서 저작권 보호와 시장 진출을 위한 상시지원 체계를 강화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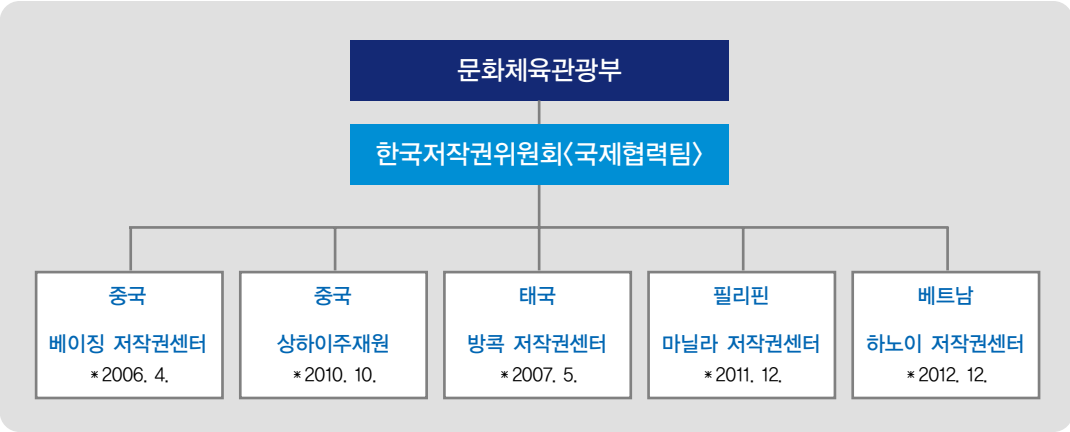

〈그림 3-6-5〉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최근의 신한류 열풍에 맞춰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현지 보호를 위한 법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해외저작권센터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한국 콘텐츠의 불법 유통이나 침해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법

적 조치를 위한 증거 보전과 경고장 발송, 민 · 형사 소송 시 법률지원, 행정처벌 신청 등 일련의 구제조치를 하면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지에서 우리 저작물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및 주요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유지에 힘을 기울여 왔다.

나. 현지 침해대응 지원과 합법 유통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저작권센터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한국 콘텐츠의 불법 유통이나 침해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 보전과 경고장 발송, 행정처벌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시 법률지원 등 일련의 구제조치를 진행해왔다.

2007년 서비스를 시작한 해외저작권 법률상담은 매년 약 2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며, 최근의 신한류 열풍에 맞춰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늘고 있고 현지 보호를 위한 법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해외저작권센터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현지 국가에서 온라인상의 한국 콘텐츠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 침해 정보를 국내 콘텐츠 업계에 제공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권리자들과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해 왔다.

정부는 온라인 유통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2008년부터 경고장 발송, 증거보전, 행정처벌 신청 등 2012년까지 총 1,041건의 구제조치를 지원하였으며, 불법음원사이트, 불법 IP TV 서버, 한국 동영상 불법유통 사이트 벌금 부과 등 실질적인 침해 대응 효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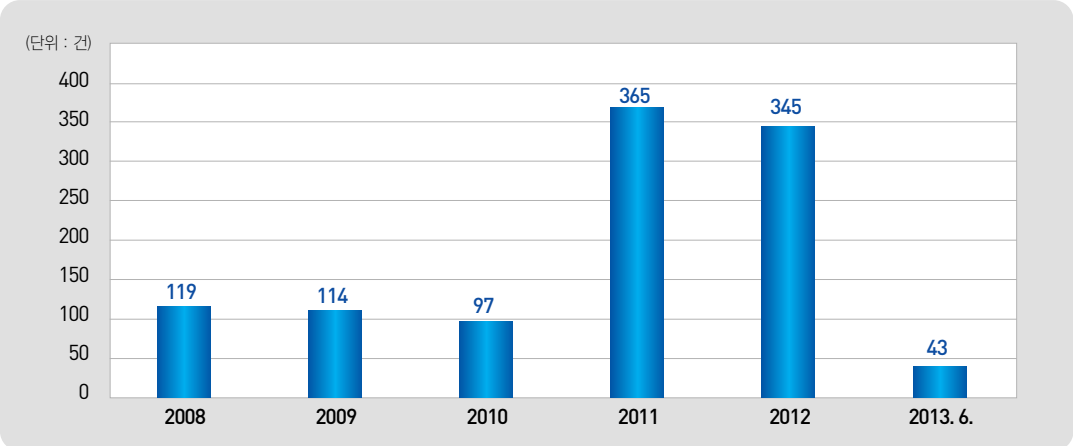

〈그림 3-6-6〉 해외 침해 구제조치 지원 현황

특히, 2011년부터는 온라인 유통실태 조사를 통한 침해대응 조치와 함께, 중국내 불법저작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중국판권 보호 중심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주요 한국콘텐츠 침해에 대한 실시간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영화 '만추', 드라마 '볼수록 애교만점', 국내 웹툰 등 151개 작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총 2,053개의 불법영상물을 삭제 조치하였다. 이중, 영화 '만추'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삭제조치 지원을 통해 중국진출 한국영화 역사상 최고 흥행기록인 약116억원의 입장수익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룩하기도 하였다. 2013년에는 영화, 드라마는 물론 만화, 음악, 서적 등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12년의 경우 해외 저작권 침해대응 지원범위를 게임분야까지 확대하고 관련 모니터링과 구제조치를 지원하였으며, 중국온라인게임연맹, 한국게임산업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리니지 등 3개 게임에 대한 중국내 사설서버, 치팅프로그램 사이트, 결재서비스를 차단 및 폐쇄하기도 하였다.

또한 권리자 단체의 저작권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저작권센터를 통한 현지 침해 공동 대응과 함께,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지상파 방송3사, 게임 · 음악 등 각 분야 콘텐츠업체들이 참여하는 '해외저작권 보호협력회의'를 201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실시한 유통실태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각 콘텐츠 업체와 관련기관을 통한 현지 수권계약 확인, 미수권 저작물의 현지 불법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효과적인 해외 침해 대응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다.

지난 5년간 해외 침해에 대한 현지 법률컨설팅과 유통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인 침해대응 지원, 민관협의체를 통한 관련 정보공유와 협력 대응을 통한 정부와 권리자들의 노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저작권센터의 자체 조사 결과, 지난 2007년 최대 91%에 이르던 한국 드라마의 중국 내 주요 온라인사이트의 불법유통비율은 2012년에는 14.8%로 크게 낮아졌으며, 영화의 경우도 같은 기간 불법유통비율이 88%에서 39%로 약 50%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자체 조사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저작물의 합법유통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제7절 국제협력 확대

지식재산 관련 논의는 양자, 다자, 국제기구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국 지재권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기를 원하는 각 국의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통상협상에서 지재권 분야를 핵심 의제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을 높임으로써 자국에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대부분 FTA에서 지재권 분야는 하나의 독립적인 장(章)으로 구성되어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지재권이 해외에서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들과 지재권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FTA 등을 통해 주요 교역국들과 지재권 보호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다. 아울러 WIPO의 지재권 규범 논의와 IP5(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5대 지역 특허청 협력체제) 및 TM5(5대 지역 상표청 상표, 디자인분야 협력체) 중심의 글로벌 지재권 시스템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개도국과 최빈국의 지재권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선 · 후진국간의 지재권 격차해소를 위해 ODA, 국제지재권연수사업 등 국제협력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지재권 위상과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1. 산업재산권 분야 국제협력 확대

가. 개발도상국 대상 지식재산 인식제고활동 지원

특허청은 WIPO내 '한국신탁기금' (Korea Trust Fund) 출연을 통해 개도국 및 최빈국의 지식재산분야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에티오피아와 말레이시아에서, 2012년에는 필리핀에서, 2013년에는 베트남과 잠비아에서, 개도국에서의 일상생활 문제해결 및 특허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또한 뽀로로 등 어린이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이용한 지재권 교육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개도국 심사관을 대상으로 한국의 특허 · 상표 제도, 심사 실무, 특허품질관리, PCT 제도, 마드리드 시스템 등의 교육과 현장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은 공공개발원조(ODA)사업을 통하여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 2010년 335만불의 규모로, 몽골특허청 관계자의 역량 배양을 위하여 국내초청연수를 진행하고, 2011년

에 검색, 심사, 등록, 공보발간, 수수료 관리 등의 기능을 보유한 몽골특허시스템(IPOMnet) 구축을 완료 하였다. 420만불 규모의 아제르바이잔 특허정보화사업도 2013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특히 전자출원 기능을 구현하여 아제르바이잔 특허청의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18개 영어권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 간 지식재산 협력기구인 아프리카 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정보화 협력기반 구축을 위하여 2010년 특허청과 ARIPO 기관장 간의 포괄적 MOU를 체결하였으며, 특허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ARIPO-WIPO 기술협력 MOU를 2011년 체결하였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2013년 10월 비로소 2년간 580만불이 투입되는 ARIPO 특허 정보화 시스템 개선 사업이 착수하게 되었다.

한편, 특허청은 2010년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상표권 획득 지원을 통하여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허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사업으로, 2010년 아프리카 차드 지역에 사탕수수 숯 제조 기술 및 2011년 캄보디아에 가정용 정수기를, 2012년에는 과테말라에 조리용 스토브 및 네팔에 대나무 주택 단열 건축기술을 개발하였으며, 2013년에는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각각 파푸아뉴기니에 워터펌프 및 필리핀에 오일 추출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대나무 섬유, 칠레의 과일 칵테일, 캄보디아의 붉은 쌀 및 용안(열대과일) 등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표권리화를 지원함으로써, 개도국 상품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재권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나. WIPO와의 협력 성과

WIPO는 1,281명의 인력으로 국제 지재권규범 형성, 지식재산권 등록, 개도국 기술지원, 국제분류 표준 등 정보 인프라 강화, 지재권 인식제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허청은 2001년 WIPO와의 기본협력 체결 후, 2004년 한국신탁기금(Fund-In-Trust) 설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6년에는 특허청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WIPO 공식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그 결과 2011년에는 교육분야 한국신탁기금(FIT-Edu) 설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한국인 최초로 WIPO 국장에 진출하였으며, 특허청 인력 3명이 PCT 방식팀장 및 방식심사관으로 임명되었다. 아울러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IP 교육프로그램인 'IP 파노라마'를 인도 및 러시아에 출시하였으며, 특허심사 및 대민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WIPO PCT 데이터와 특허청 특허데이터 교환에 합의하였다.

〈표 3-7-1〉 글로벌 지재권 인식제고 콘텐츠 현황

구분	IP 파노라마	IP 익스피다잇	IP 이그나이트
특징	비즈니스 관점에서 지재권 활용전략 소개	특허DB 검색 · 분석 등 특허정보 활용방법 소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재권(법) 개론 소개
개발시기	'05~'06년(모듈1~10), '08년(모듈11,12), '10년(모듈13)	'06~'07년(모듈1~14)	'09년(모듈1~6), '11년(모듈7~12)
협력기구	WIPO 중소기업국	APEC	WIPO 국제교육원
투입예산	5억 원	4억 원	2.4억 원
저작권 보유	KIPO, WIPO 공동 (발명진흥회 : 무상사용, 수익권)	KIPO, APEC 공동 (발명진흥회 : 무상사용, 수익권)	협의 중
주제(수)	13개	14개	12개
특이사항	영어판, UN 공용어 (아랍어 · 불어 ·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판, 자국어(14개어)판 *	일반편, 실전편 *(Ⅰ · Ⅱ) * 특허정보활용인력양성사업의 오프라인 강의자료의 콘텐츠 개발	WIPO측과 콘텐츠 명칭, 출시행사, 운영방안 및 저작권 협의 중

WIPO내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보호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GC; Inter-Governmental Committee)에서 유전자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1998년 총회에 의해 구성된 SCP(특허법 상설위원회)에서 2000년 특허법조약(PLT)이 타결되고, 2008년 이후 특허시스템 전반에 대한 분석작업 진행에 특허청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특허실체법조약(SPLT)의 경우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논의 되었으나, 선진국 및 개도국 간의 대립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그리고 1998년 총회에 의해 구성된 상표 · 디자인법 상설위원회(SCT)에서, 2006년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가 타결되었으며, 특허청은 현재 국제 디자인 제도의 통일을 위한 디자인법 조약(DLT; Design Law Treaty) 채택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다. APEC[42]에서의 지식재산권 협의

APEC 지식재산권 전문가 회의(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는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의 산하 전문가 그룹으로 회원국간 지재권 발전과 상호협력을 비구속적 협의체 형태로 추구하고 있다. 1996년 이후 2013년까지 총 37회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지재권 이러닝 컨텐츠('APEC IP Xpedite') 개발, 특허취득절차에 관한 APEC 협력구상 공동제안 및 채택, IP 활용 및 촉진에 관한 APEC 구상 제안, IP 익스피다

42) APEC은 단기적으로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장기적으로는 아 · 태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결성되었으며, 동아시아 12개국, 미주 5개국, 대양주 3개국, 유라시아 1개국 등 21개국을 회원국으로 보유하고 있다.

잇을 활용한 APEC 특허정보 활용 인력사업,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IP기반 지식나눔 등 지재권 교육 및 정보화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APEC 지재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적정기술 워크샵을 제안하여 2014년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라. 다자간 포럼에서 지식재산권 협상

국제기구 중심의 지재권 분야 규범 제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OECD, CBD(생명다양성 협약), UNFCCC(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기구 협력 확대 및 논의에 특허청은 적극 대응하고 있다. OECD 산하 위원회 중 OECD 세계 생명공학포럼, 생명공학작업반 정기회의 및 특허통계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10년 CBD 협약으로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최종 채택됨에 따라, 국내 이행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마. 주요국과의 지식재산권 분야 FTA 추진현황

통상 환경의 글로벌화 및 지재권의 통상 무기화에 따라 FTA 논의중 지재권 협상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10개국과의 FTA가 타결 또는 발효된 상태이며, 현재 11개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상이 진행 중인 11개국에는, 캐나다,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 우리나라의 주요한 무역파트너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중국과는 2013년 9월 7차 협상에서 협상지침이 타결됨에 따라 2단계 협상이 추진 예정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손해배상, 유명상표 보호확대, 부분디자인 보호제도 등 우리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표 3-7-2〉 발효 및 타결된 FTA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한 · 칠레 FTA ('04.4.1. 발효)	• 칠레가 우리나라의 인삼, 김치, 보성녹차를 지리적 표시로 보호키로 합의 • 한국은 Pisco(포,증), Pajareto(포, 증), Vino Asoleado(포) 3가지 지리적 표시에 대해 독점권 부여
한 · 싱가포르 FTA ('06.3.2 .발효)	• 한국특허청을 싱가포르 PCT국제출원에 대한 ISA/IPEA 지정 • 한국 특허출원과 동일한 싱가포르 출원의 빠른 심사 처리

〈표 3-7-3〉 발효 및 타결된 FTA 주요내용 〈계속〉

구 분	주 요 내 용
한 · EFTA[43] FTA ('06.9.1. 발효)	• '08년까지 로마협약 등 3개 국제조약에 가입 및 준수 • GI의 보호, 미공개 정보(undisclosed information)의 보호
한 · ASEAN FTA ('07.6.1. 발효)	• 지재권 보호 강화 • 지재권 분야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한 · 미 FTA ('12.3.15 발효)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 공지예외 적용기간 12개월 연장 • 소리 · 냄새상표 인정 및 증명표장제도 도입 •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지재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권한 강화
한 · 인도 CEPA ('10.1.1. 발효)	• PCT ISA/IPEA 지정, 특허절차 간소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 • 양국 특허청 간 별도 협력 MoU 체결 추진
한 · EU FTA ('11.7.1 잠정발효)	• GI는 협정부속서에 기재하여 보호 (사용이 확립된 선행상표는 계속 보장) • 의약품 분야 특허기간 연장, 자료 독점은 기존 제도 유지
한 · 페루 FTA ('11.8.1 발효)	• GI는 부속서 교환방식으로 보호 • 유전자원(GR)/전통지식(TK)은 CBD Text의 선언적 내용 등으로 타결
한 · 터키 FTA ('12.3.26 가서명)	• GI는 부속서 교환방식으로 보호, 향후 추가 가능 • 유명상표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및 TRIPS 의무 준수
한 · 콜롬비아 FTA ('12.6.26 타결 선언)	• 공중보건도하 선언에서 수립된 원칙들의 중요성 인식 • 소리 · 냄새 상표등 비시각적 상표 보호 • 상표권, 저작권 침해 의심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등

위조품 거래방지 협정(ACTA)의 현황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TRIPS 협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협력 체제로서 ACTA(Anti-Counterfeiting Agreement,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가 대두되었다. ACTA는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상표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의 국제적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WTO/TRIPS 보다 강력한 지식재산권 집행 및 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ACTA의 경우 TRIPS협정과 비교하여 국경조치의 대상의 확대가 논의되었다. TRIPS협정상 국경조치는 수입은 의무적, 수출은 임의적이었는데, ACTA는 수출입과, 통과중인 화물 및 자유무역지대와 같이 세관의 관할 하에 있는 경우에도 국경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ACTA는 기존의 지재권 국제협약인 TRIPS의 집행분야를 보완하며 지재권 집행에 관하여 한층 강화된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범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종 협정문은 지재권 침해에 대한 국경조치(통관보류조치), 민사절차 및 형사집행 분야에 있어서 TRIPS보다 강화된 수준의 규범을 채택하고 있다.

43)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서유럽국가 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ACTA는 2006년 일본과 미국이 주도한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위한 최초의 복수국간 협정으로 2008년 6월 협상이 개시된 후 총 11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11년 10월 동경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모로코 등 8개국이 공식서명하였으며, 2012년 1월에는 EU 중 22개 회원국이 추후 서명하였다. 하지만 EU 시민단체들은 시민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결국 2012년 7월 유럽 의회에서 비준 동의안은 부결되었다. 한편, 2012년 9월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ACTA 비준을 승인하여 첫번째 ACTA 비준국이 되었다. ACTA의 발효를 위해 6개 국가의 비준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일본만이 비준한 상황이다.

바. 양자간 협력 노력

1) 특허청

특허청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주요국과 양자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출원 및 등록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하고 지재권 분쟁으로부터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이 주요한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면서, 특허청은 우리 기업 진출 및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차세대 유망 경제권 국가를 중심으로 지재권 외교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자 국내 기업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과는 '12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청장회담을 통해 정보화 협력, 베트남 심사관을 위한 교육과정 제공, 강사 파견 및 베트남에서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등에 합의하여 양국 지재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13년에는 기획재정부의 KSP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특허청의 정보화 현황 및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시스템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양측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또한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싱가포르와는 지재권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12년 10월 제네바에서 체결하였고, '13년 1월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실시하였다. 싱가포르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위한 지재권 협력 인프라가 대폭 개선되었고, ASEAN 국가와의 지재권 교류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지역 거점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와는 '12년에 제3차 한-UAE 경제공동위원회 및 두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특허심사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지재권교류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하였고, '13년 10월 제네바에서 한-UAE 고위급 회담을 통해 UAE의 심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심사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중동 지역 특허협력기구인 걸프협력회의특허청(GCCPO)의 심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허심사관 연수과정을 제공하는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였다. 남미 지역의 경우 멕시코와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하는 MOU를 체결('12년 3월)하여 남미 지역과 특허심사협력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12년 9월 제네바에서 브라질과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지재권 협력을 발전시킬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13년 10월 칠레와 지재권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남미 지역에서의 지재권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2) 기타

2012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방송사업자 저작권 보호 및 방송콘텐츠 해외수출 확대를 위하여,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 불법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UPOV(국제식물품종보호동맹)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특별총회, 기술위원회, 총회 및 자문위원회, 실무기술회의(TWA, TWV, TWC, TWF, TWO), 동아시아 식물품종보호 포럼회의에 참석하여 품종보호에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 저작권 분야 국제 협력 확대

가. 국가 간 협력 강화

2012년에 8회를 맞은 '한중저작권포럼'(9월)과 4회째를 맞은 '한일저작권포럼'(12월)을 통해 한중, 한일 간 저작권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의 저작권 이슈를 선도하는 국가 간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밖에 한-필리핀, 한-라오스, 한-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와 해당국의 저작권 제도 발전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하였다.

한편, 국제 학술행사인 '서울저작권포럼'은 2012년 '고아저작물의 창조적 활용'을 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 이용활성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이어갔으며, 베이징, 상하이, 방콕, 마닐라 등에서 개최한 각종 현지 저작권 설명회와 음악회, 홍보활동 등은 저작권 분야에서 한국의 역동적인 변화 모습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나. 개발도상국 대상 저작권 지원 사업

우리 정부는 WIPO 차원의 개발도상국 저작권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WIPO에 신탁기금을 공여하고 있다. 특히,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하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Republic of Korea'를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참여 국가의 저작권 법제도 및 관리체제의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12년에는 13개국 14명으로 대상 국가와 참가자를 확대하여 기존의 동남아 국가는 물론 멕시코, 자메이카 등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각국 저작권 정책담당자들에게 한국의 저작권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또한, 2012년 11월에는 각국 저작권 보호 및 집행 분야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아시아, 남미 지역의 저작권 보호 전문 인력 12명에게 저작권 보호 · 단속과 관련된 우리의 선진기술을 전파하였다.

다.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 개최

2012년 9월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하고, ICOTEC 조직위원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 2012'가 상암동에서 이틀간 개최되었다. ICOTEC 2012는 '비지니스, 빅데이터, 컨버전스, 표절, 클라우드'를 주제로 국내외 저작권 관련 저명인사들의 연설, 포럼, 토론회 등으로 꾸며졌다. 콘퍼런스에서는 국제 저작권 보호 정책 및 저작권법, 제도 등 저작권 기술과 관련된 최신 이슈들이 논의되었으며,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림 3-7-1〉 2012 WIPO STUDY VISIT (2012. 12)

〈그림 3-7-2〉 WIPO 연계 국제저작권보호인력개발 프로그램(2012. 11)

••• 제8절 부처 간 협업 확대

1. 법무부

법무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여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26개 검찰청에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전담부장 및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합동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대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한 · 미 통상현안 회의 및 EU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안을 중심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대학가 주변 교재 및 서적 불법복제, 음반 · 비디오물 등 영상물 불법복제 · 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공판 활동 강화 등을 통해 관련 사범을 엄단하고 있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지재권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상 지재권 침해 단속 대책을 수립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10년 연중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81,854명을 입건(1,446명 구속)하고, 2011년에는 연중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82,966명을 입건 (1,334명 구속)하는 단속실적을 거두었다.

〈표 3-8-1〉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죄명 / 연도	상표법,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영화및비디오진흥법위반, 음악산업진흥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계
2006	11,990 (380)	18,545 (1)	4,915 (8)	39,755 (2,400)	2,208 (0)	77,413 (2,789)
2007	8,880 (195)	25,355 (5)	5,751 (10)	6,191 (285)	2,432 (3)	48,609 (498)
2008	10,398 (213)	91,840 (24)	5,855 (2)	46,415 (1,925)	2,285 (0)	156,793 (2,164)
2009	10,251 (220)	89,684 (9)	3,874 (3)	54,642 (2,315)	2,436 (0)	160,887 (2,547)
2010	8,192 (192)	29,644 (12)	123 (0)	41,655 (1,242)	2,240 (0)	81,854 (1,446)
2011	6,293 (188)	37,082 (8)	38 (0)	38,106 (1,137)	1,447 (1)	82,966 (1,334)

2. 특허청

특허청은 위조상품 범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0년 9월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를 출범시키고 3개 지역사무소에 단속인력을 배치하여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형사입건을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단속을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운영하는 IPOMS라는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판매 사이트 차단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표 3-8-2〉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단속실적

구 분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도입 전				도입 후			합 계
	2007	2008	2009	'10.1.~8.	'10.9.~12.	2011	2012	
형사입건(명)	116	34	122	15	45	139	302	773
압수물량(점)	27,594	88,724	57,005	2,860	28,629	28,589	131,599	365,000

* '07~'10.8은 검 · 경찰과의 합동단속 실적임
* 출처 : 산업재산정책국 주요통계(특허청, 2013. 2)

또한, 특허청과 경찰청은 매년 1회 2일간, 지식재산권 보호담당 사법경찰관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식재산권 수사관련 전문교육 실시 및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해당 워크숍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수사기법 교육 및 최근 범죄동향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대」를 운영하고 검찰청과 협력하여 저작권법 위반사범 단속 · 수사 및 사법처리, 온오프라인 불법저작물 및 소프트웨어 사용단속 등, 저작권 침해 대응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대, 검찰, 경찰에 지원하여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의 지능화, 다양화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저작권위원회 및 민간 방송사업체와 연계하여 해외 저작권 침해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력사례 : 캐릭터 합동단속

2013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관세청 등 합동으로,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법 캐릭터 복제물에 대한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고부가가치 핵심 창조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산 캐릭터 산업이 2011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7조 2000억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지만, 이중 30%에 육박하는 2조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캐릭터 관련 협회, 캐릭터 저작권자 및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주요 캐릭터별 단속팀을 구성해 주요 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순환단속을 실시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저작권 및 상표권 위반 제품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였다.

중국 등 해외에서 반제품 형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불법 캐릭터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국산 캐릭터 상품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해 세관검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4.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의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중기청 등으로 구성된 산업보안 정책협의회, 검찰, 경찰, 기무사 등으로 구성된 정보수사기관 「산업보안 협의회」를 결성하여 기술유출에 대응하고 있다.

5.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의심되는 우편물을 관세청에 인계하고 있다. 또한 불법 지재권 침해대응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관세청, 검찰, 경찰, 지자체 등과의 공조협력 강화 및 IP-DESK와의 연계 등 국제협력 강화를 천명하였다.

6. 외교부

외교부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지원 및 이를 통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단체를 포함)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현지 주재 재외공관에 지원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재외공관은 지재권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황조사, 해당 외국 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벨기에, 중국, 네덜란드, 호주,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대만, 이탈리아, 덴마크, 뉴질랜드, 독일, 캐나다, 스웨덴, 이스라엘 주재 우리 대사관에 지식재산권 담당자를 배치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분쟁예방 및 국제협력 강화를 주재국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지재권 정책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지재권 관련 정책 및 국제 지재권 관련 규범 형성 동향 등 지재권 침해대응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공관에 지재권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인하여 모든 공관에 지재권 담당관을 파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발생시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등과 관련하여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세청과 협력하여 보호품종의 통관단계 국경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수출입 제한을 원할 경우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 신고하면, 세관은 침해의심물품의 발견시 신고인에게 통보후 통관보류 등의 직권조치를 취하거나 신고인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 4 장

지식재산 보호현안과 향후 대응방향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등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09년 이후 미국의 지식재산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등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결실을 맺어오고 있다. 또한, 한-미 FTA 및 한-EU FTA를 거치면서 지식재산 보호집행제도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한 2013년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60개국 중 40위를 기록 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집행 측면에서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12년 경찰청의 산업기술 유출사범도 국내유출이 113건, 해외유출이 27건으로 140건에 달해 전년 대비 2배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다.[44]

'12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약 3,05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법복제물로 인해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도 약 2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온라인 불법복제물 및 위조 상품의 불법유통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불법복제물과 위조 상품의 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한편, 신지식재산의 보호체계 수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각 국과의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품종에 대한 로열티 부담 증가 등 신물신품종 보호권에 대항 침해 및 분쟁대응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생물자원의 경우, 의료, 에너지, 식량 등 자원 주권으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보유 생물자원의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고, 생물자원의 발굴, 확보 및 종합적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밖에 전통식품, 전통의약, 전통 문화표현물 등 전통자원에 대해서도 국제적 보호 강화 노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으나, 지식재산 보호체계가 여전히 미흡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 사회적 손실을 입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ⅰ) 위조 상품의 제조 · 유통 등 부정경쟁 행위로 인한 권리자 및 소비자들의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ⅱ) 한류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의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비, (ⅲ) 한-미, 한-EU FTA 협상 등 시장 개방화에 따른 외국품종 유입확대로 로열티 부담 증가, (ⅳ) 기업의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 등의 유출 사례 증가에 따른 국부의 해외 유출 등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진화된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44) etnews.com 2013. 10. 11자(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 제출 자료).

••• 제1절 국내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1. 권리화 단계에서의 보호 강화

부실 권리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추후에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보호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권리화 단계에서 부실 권리가 양산되지 않도록 심사품질과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처리 기간은 '12년 기준으로 14.8개월로 주요 선진국(미국(28.0), 일본(25.9), 유럽(25.1))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르다. 그러나 심사관 1인당 연간 특허심사처리건수는 271건으로 미국 78건, 유럽 47건, 일본 233건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심사 부담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이, 1인당 심사처리건수가 높다는 것은 그 만큼 부실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최근 특허 무효율이 높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결과, 서로 동일한 디자인이 저작권과 디자인권으로 권리화된 후, 서로 저촉되거나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의 권리화 단계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실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향후 지식재산분쟁을 예방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식재산의 국제적 심사협력을 강화하여 현재의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면서 심사품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품질관리의 대상을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건과 심사 착수 건까지 확대하여 심사전주기에 걸친 품질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유명 캐릭터 등을 모방한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권리화 전단계에서 지식재산을 보호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지식재산권 소송체계의 선진화

가. 지식재산권 재판 실효성 및 전문성 확보

1) 증거수집절차 개선을 통한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해도 손해배상액이 청구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오히려 침해를 부추긴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고,[45]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관련 실태조사 결과 또한 특허권자의 청구액 대비 인용금액이 매우 낮다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46][47]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낮다는 인식하에 여러 가지 방안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48], 서류제출명령에 대한 제재 수단의 도입, 손해액추정규정의 개정 및 대리인 비용전환제도, 입증책임전환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시스템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려면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정확하게 계산된다는 전제 하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전보배상이 일정 정도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권리자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제조 수량, 판매량, 매상고, 원가, 비용 등의 수치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통상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에 있기 때문에 권리자가 이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 예컨대, 특허법상의 서류제출명령을 통하여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막대한 양의 문서들을 회계 전문가가 아닌 법관이나 변호사가 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제출된 문서는 그 명칭도 회사별로 각양각색이며, 독자의 부호나 약어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컴퓨터로 관리된 장부류의 데이터인 경우도 있다.

한편, 지식재산 분쟁에서 침해의 입증이나 손해배상의 입증은 모두 권리자가 부담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재판 실무 상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매출액', '권리자의 이익율', '기여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각 요인들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반영됨에 있어서 입증자료들이 어느 정도 제출될 수 있는가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와 법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손해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 결과, 특허법 제128조 등 산업재산권법과 저작권법 제125조에서는 손해액을 추

45) 특허권침해소송의 손해배상액 인정과 관련하여 1심에서는 원고 청구액을 기준으로 약 37%의 인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을 거치게 되면 인용율은 8.5%에 불과하다(조용식, "지적재산권 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법조광장, 2009. 7. 2일자).

46) '00~'09년 기준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 인용액은 5천만은 이하인 사건이 전체 침해사건의 절반이상으로 낮은 편이고, 평균 손해배상인용액은 1억원 내외에 불과하다(배상철, 「침해소송 관련 특허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소송현황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특허청, 2009, 146면).

47) 우리나라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09년부터 '10년 평균 건당 7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건당 250만 달러에 달했던 미국의 4분의 1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이진호, "21세기형 지식재산 강국 닿이 올랐다", ET News, 2012. 1. 31일자 보도).

48)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재권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절성 확보 방안 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66면.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125조의 2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성립여부와 손해배상액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법은 한 · 미 FTA 협정문을 반영하여 저작권법 제129조의 2에 실체법상 정보제공청구권이 도입되었으나, 특허법에서는 현행규정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정보제공청구권은 침해 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유통 등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허법의 서류제출명령의 경우에는 손해의 계산에만 한정되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의 서류제출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92조, 제344조, 제347조, 제367조 등으로 인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의 계산과 관련해서는 증거수집절차의 개선이 필요한데, 손해배상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에 있어서 인카메라 심리(In-Camera)[49]를 실시할 경우에 손해의 계산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등 손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전문 감정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활성화

지식재산권 분쟁은 분쟁형태가 다양하고 침해가 매우 용이한데 비해 구제는 매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그 결과 소송기간이 길고, 소송비용도 높다. 이에 반해,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이하, 'ADR')는 신속하고(중재는 약4 · 6개월, 조정은 약3개월), 저렴하며 단심제로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또한,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기회가 보장되고 전문가가 판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므로 지식재산 분쟁에 있어서 ADR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70건으로 한해 평균 약 5건에 머문 것으로 집계되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저작권 위원회의 조정은 1988년부터 2012년 까지 총1,463건 접수에 연평균 59건을 수행하였고, 조정 성립율은 평균 51% 정도이다. 최근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괄목할만한 실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식품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에 대한 조정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는 '직권조정결정

49) 인카메라 심리(in camera inspection)란 정보공개소송에서 공개청구대상에 포함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직접 보고 확인하여 판단하기 위해서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공개가 청구된 대상정보를 판사실에 가져올 것을 명하고, 법관만이 당해 정보를 열람하는 데 이를 인 카메라 심리라고 한다(김승조, "비밀정보에 대한 사법심리방법", 「법학논고」(제40집), 2012. 216면).

제도'[50]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로서 중재를 들 수 있는데, 현재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모두 중재법상 임의 중재는 가능하나 기관 중재는 불가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ADR제도의 활용은 분쟁의 조기 해결과 소송비용 절감 등 그 효과는 소송에 비해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재산 분쟁에서 ADR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정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기술별 · 분야별로 확대하는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 분쟁의 경우에는 국민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현실에서 임의중재가 아닌 상설기관에서 중재를 담당하는 기관중재제도[51]의 도입하여 분쟁을 조기해결을 도모하는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3) 소송관할 집중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소송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52]과는 달리 관할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특허 등의 무효여부를 다루는 심결취소소송[53]은 특허법원이 관할하고, 침해 여부를 다루는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하고 있다. 그 결과, 서로 상반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54]에서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특허권침해소송 담당 법원으로서… 전제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 ·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재심사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

50) 직권조정결정제도란 피신청인이 침해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종자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배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줘 소송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51) 기관중재제도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중재를 부탁할 (상설) 중재기관을 당사자 간에 합의 · 결정해 두는 것을 말한다. 기관 중재는 자체의 독자적인 중재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중재 관리를 그 규칙에 따라 행할 수 있고, 사무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도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중재 당사자들이 시설의 이용과 행정적 봉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일정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52) 일본은 1심은 도쿄 · 오사카 2개 지방법원으로 집중(2004)하고, 2심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신설(2005)하였고, 미국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설립하여 항소심 관할 집중(1982)을 하고 있다.

53) 행정소송의 경우 1심 격으로 특허심판원이 담당하고, 2심 격으로 특허법원(사실상 1심)이 관할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의 경우 1심은 각 지방법원 · 지원(57개원)이 담당하고, 2심은 각 항소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23개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다.

54) 대법원 2012.1.19.선고 2010다95390 판결("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 ·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고 있다. 따라서, 특허 · 디자인 등 무형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의 선진화가 시급한 상황이고, 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 침해소송의 관할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 이광형 KAIST 교수)는 지식재산권 소송 중 제1심은 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을 제외한 기타 지식재산소송은 지방 관할 법원[55]과의 중복관할[56]을 허용하고, 제2심의 경우는 산업재산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소송의 일부에 대한 항소심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자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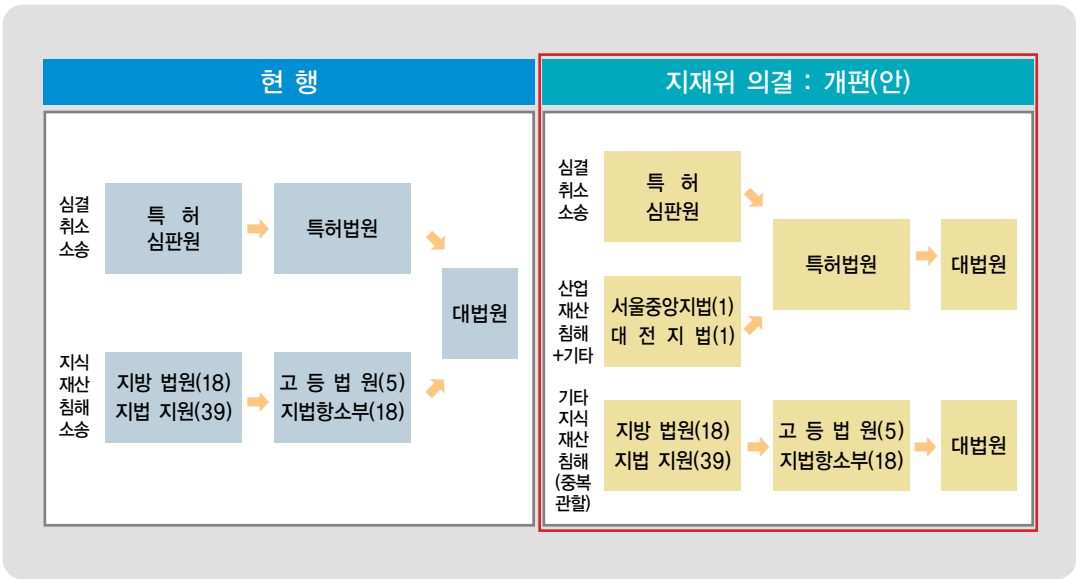

〈그림 4-1-1〉 지식재산권 소송관할제도 개전 전 · 후 비교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 집중은 당해 분야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문화형성 및 국제적 추세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55)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3조를 근거로 함.

56) 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자는 검토가 있었다(민사소송법 제24조 ②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인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산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또는 광주고등법원인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외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4) 특허침해소송 대리의 전문성 강화

특허침해소송은 의료 소송에 버금가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특히, 특허침해소송은 쟁점 기술에 대한 실체적 내용은 물론, 특허법 등 기술 관련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가 요구되므로 소송대리인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야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변호사만이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가 가능하고, 변리사의 경우는 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재권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거듭한 끝에 특허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되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가 논의와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는 구체적 제도 마련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남아 있어 아직 우리나라 특허소송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특허 변호사의 자격 요건 및 권한을 비롯하여, 관련 제도개선 등 논의되어야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향후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 관련 법률 · 기술 전문성이 확보되어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익 보호 가능하고, 또 미국 · EU 등과의 FTA 체결로 인한 국내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외국계 로펌의 법률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강화

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확대 및 권한 강화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은 그 나라의 국제 신뢰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지재권 감시대상국 5년 연속 제외('09~'13년)되는 등 보호 수준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도 있으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하, 'IMD')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서는 2013년 총 60개국 중 40위로 발표되는 등 아직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 불법복제물 등의 제조 · 유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악의적인 헤비 업로더나 대량의 위조상품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 상시적 단속이 필요하며, 일회적 · 우발적인 침해자에 대해서는 홍보와 계도를 통해 침해 근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비록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위조 상품 및 불법 복제물의 집중 단속이 이루어져 형사입건 된 침해자 수 및 적발 수량의 증가 등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 분야(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별 사법경찰의 인력을 확충하고,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수사기법 마련,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역량 강화와 수사 영역을 확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특허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의 현실화를 위한 관련 소송의 선진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나. 기술탈취 및 유용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특허나 상표와 같은 보이는 지식재산과 함께 기술정보(산업기술)나 노하우(영업비밀)와 같은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에 의하여 좌우된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에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경쟁력있는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최근 3년간 누적 피해 금액이 5조 28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4-1-1〉 연도별 중소기업기술유출현황

(단위 : 건, %, 억원)

구 분	건수(평균)	기술유출경험비율	피해액(건당평균)
2008년	1.8	15.3	9.1
2009년	1.8	14.7	10.2
2010년	1.6	13.2	14.9
2011년	1.6	12.5	15.8
2012년	1.6	12.1	16

*출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한표의원 국정감사자료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대한 기술탈취 문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을 가로 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0년 7월 「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22.1%가 대기업에 의한 기술요구 경험이 있으며, 이 중 80%가 일부 또는 전체를 대기업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3.2%가 기술유출 경험이 있으며, 그 피해액은 건당 14억 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술탈취 등에 대해서는 기업의 관련 담당자의 교육과 보안시스템 확충해 주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가야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술임치제도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서면요청 절차를 강화하고, 기술탈취나 유출한 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는 등 법적 제재수단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할 것이다.

4. 국내 부처간 · 기관간 협력 강화

지식재산과 관련한 창출 · 활용 · 보호활동은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의 가치와 산업재산권, 저작권 분야 및 신지식재산분야에 대한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한 범부처적인 협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상표, 저작권 및 디자인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은 중기청과 특허청, 전통지식과 문화표현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처간 · 기관관 교차가 발생하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관련 유관 부처간 · 기관간 정보공유, 지식재산 합동 단속 및 계획 수립 등 수사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가칭) '지식재산권보호집행기관 정책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하여 각 부처간,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의 종합보호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지식재산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정보공유, 지식재산보호가 미흡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침해대응 지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합동 단속 등을 들 수 있다.

••• 제2절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보호체계 강화

1. 온라인 환경의 저작권 및 콘텐츠 보호 강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은 지식재산의 새로운 제작 및 유통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존의 콘텐츠를 가공 · 편집하는 것이 용이하고, 시간적 ·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이나 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디지털화된 콘텐츠(저작물)는 기존과는 달리 인터넷을 통하여 유형매체의 매개 없이 송신 또는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 저작권 등 권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정의 검토 및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이다. 둘째, 저작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불법복제 및 유통의 추적 및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정보 유통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실질적인 기술적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가. 법령 정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모든 국민을 저작자 혹은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이는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도 저작권(콘텐츠)의 잠재적 침해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이와 같이,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권 및 콘텐츠를 보호를 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어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고, 또 침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저작권 보호와 침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나. 온라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구축되었지만, 와레즈, P2P 사이트 등을 통한 무분별한 콘텐츠 불법복제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는 특히 영화나 음악,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활동이다. 저작권 침해 단속활동을 통해 저작권 침해 처리사범은 '11년 1,116명에서 2012년 1,803명으로 61.6%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저작권 단속 활동과 행정조치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주요한 수단의 하나이므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12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에 대한 유통경로별 비중을 살펴보면, 주요한 침해유통경로는 '토렌트',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에 대하여 시정권고, 계정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심의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침해사이트에 대한 행정명령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침해 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Digital Copyright Forensics)[57] 기술을 활용하여 저작권 위반 및 불법유통의 혐의가 있는 P2P, 웹하드 등에 대하여 콘텐츠 거래 장면의 스크린 샷, 거래된 해당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웹소스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 자료에서 불법 콘텐츠의 유통경로, 업로더 IP와 계정정보 및 불법적 활동 등을 분석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물의 유통을 방지함에 있어 디지털 콘텐츠보호기술은 극히 유용한 수단이므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향상된 보호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환경의 저작권(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보호방안 수립되어야 한다.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의 역할을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저작권 침해예방과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작권침해사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저작권침해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설치 · 구성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57)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디지털 저작물들을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 또는 도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디지털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해당 데이터가 디지털 증거로서의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집, 분석, 보관, 보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방지 강화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 규모 세계 12위, 무역 규모 8위, 국가 브랜드 9위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위조상품 시장 규모는 약 260억 달러(27조 4천여억원)로 세계 11위에 해당한다.[58] 관세청이 최근 5년간 가짜 가방과 시계 등의 밀반입을 적발한 건수는 1528건(2조 2,074억원)에 달한다. 2008년에 328건(3,407억원), 2009년 325건(7,117억원), 2010년 319건(2,704억원), 2011년 231건(3,371억원), 2012년 225건(5,475억원)이 적발되었다.

〈표 4-2-1〉 위조상품 밀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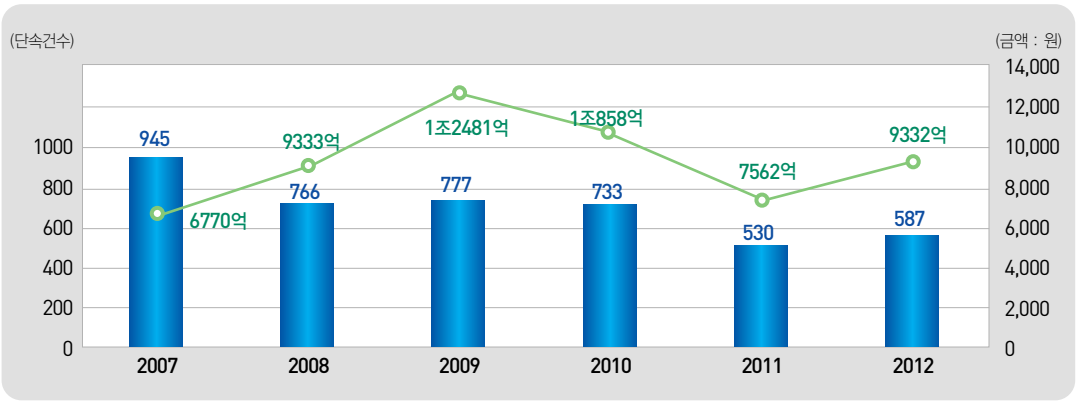

〈표 4-2-2〉 '12년 적발된 위조상품 품목별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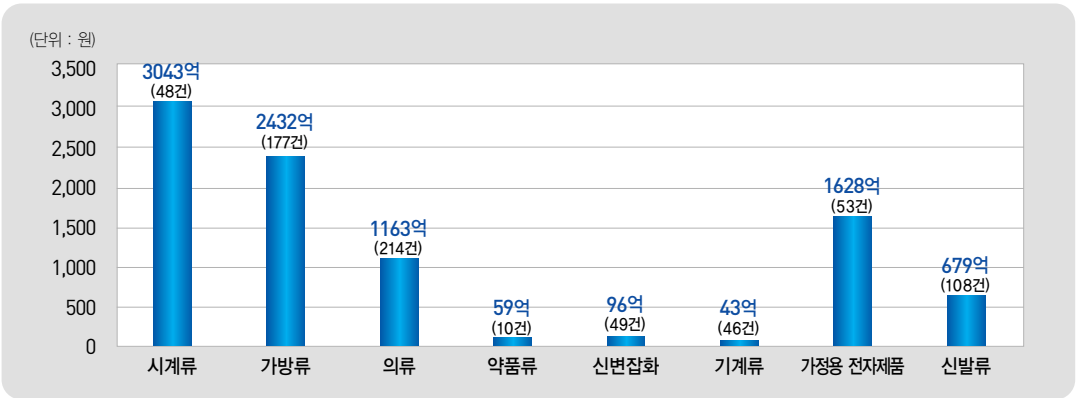

*출처 : 관세청

58) 서울신문 13. 1. 12자 1면.

지식재산권 보호지수(IMD) 순위도 '13년 세계 59개국 중 40위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국내 위조상품 적발 규모는 1조 1986억 원으로 단속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 결과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액은 연간 약 17조원에 달해, 위조 상품 유통과 구매근절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집계한 '12년 온라인 쇼핑몰(종합쇼핑몰 · 오픈 마켓) 거래액은 20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함께 오프라인 위조상품 거래가 점차 온라인 쇼핑몰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위조상품은 해외의 유명상표를 부착하여 오픈 마켓이나 일반 사이트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 위조상품 판매자는 타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무단도용하거나 허위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므로,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시스템의 개선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 등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전담수사기구의 신설을 통해 위조 상품 수사체계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제3절 소프트웨어 보호수준 강화

소프트웨어의 보호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11년 국내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율은 40%로 '02년 50%에서 크게 낮아져 국제평균 42%보다는 낮지만 OECD 국가 평균(26%)을 여전히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등록제도의 활용성 강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계도와 불법복제 예방,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강화하는 등이 필요하다.

1. 프로그램 등록제도의 활성화

저작권법은 제53조(저작권의 등록),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 · 효력), 제55조(등록의 절차 등)의 규정 등을 통하여 저작물을 제한하고 보호하는 것과 함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등록제도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반적 사항과 권리자에 대한 정보를 프로그램 등록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해 외부에 공시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저작자, 창작연월일, 개요, 배타적 발행권 설정, 양도, 질권 설정 등이 기록되며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추정 받으며, 프로그램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등 해당 사실을 등록하면 법에서 부여하는 추정력을 받게 된다. 또한 권리변동 사실 등을 등록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프로그램을 등록하였다면 원고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등록된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등록제도'에 대한 절차 및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권리자가 스스로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 침해에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계도와 불법복제 예방

한 · 미 FTA 협정 체결된 후 저작권법 개정 및 관련 규정을 제 · 개정하는 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다.[59]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이며 그 규모 또한 크다.[60]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예산 구조의 경직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자칫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별 복잡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으로 인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시 의도하는 바에 일치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체결에 어려움이 따른다.[61]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이라는 의식과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국가산업 발전과 권리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자발적인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한 기본 개념 교육은 개인별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등 관련 조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기본 개념 교육 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교육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투자를 증대시켜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 의식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 공익광고 등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 공공기관, 학교 및 기업체와 같은 조직체 내부에서 불법복제 문제는 예산배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으므로, 수요조사 실시 및 제도개선을 통한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 책정 및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을 의무지출로 편성하여 우선 배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합당한 가격정책과 무료 업그레이드 등의 마케팅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관들이 소프트웨어 관리를 전담할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부서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 일체를 '소프트웨어관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집중

59) 협정문(제18.4조9호)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 정부기관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관련 사용권에 의하여 허락된 대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적절한 법 · 명령 · 규정 · 정부지침이나 행정 또는 집행 포고령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부 사용을 위한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을 제공한다.

60) 2011년 소프트웨어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규모는 2,14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이며, 다음으로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이다.

6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 관리 방안 연구", 2012, 1면.

적인 소프트웨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문서화된 정책을 수립하여 소프트웨어 취득, 인도, 설치, 이동과 통제, 폐기 등을 위한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모든 증거를 보유, 기록 및 저장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3.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 강화

정부는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복제로 인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개발의욕 저하와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투자위축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국내 주요기관, 기업, 학원, 유통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활동과 정품 사용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합동으로 주기적인 불법복제 단속 활동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S/W 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소프트웨어 종류가 다양해지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계약 및 마케팅 전략이 매우 복잡해지는 반면, 상당수의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이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예방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복제를 적발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배상액을 불법 사용자의 배상액이 개발자의 피해보상액보다 초과하는 정책을 취하도록 하며, 개발자가 불법복제를 감시하고 억제하는데 지불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체계(SAM; S/W Asset Management) 강화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소프트웨어 관리 소홀 및 정품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 중소기업은 소프트웨어 대한 관리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소프트웨어의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 ·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관리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을 강화하는 한편, S/W 자가 점검 도구의 기능을 개선하고 배포를 확대하여 사전에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침해의 예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5. 소프트웨어 산업의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

소프트웨어 산업은 소비자의 수요패턴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고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극히 짧은 특성을 갖는다.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제품 기획능력, 기술개발, 품질관리, 표준화 등의 기술 수준이 열위에 있으며 그 격차도 큰 편이다. 고부가가치의 시스템 설계 · 구축 등 컨설팅 부문보다는 설계에 기초하여 상세 설계 및 코딩 등 노동집약적 부문이 발달되어 있다.[62]

한편, 시장측면에서는 선진 외국계 소프트웨어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이들 제품을 사용하여 대기업 중심의 내부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형성되고, 하도급 소프트웨어 기업의 계약 협상력은 크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에 기인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협력기업을 중심으로 하도급 소프트웨어 기업의 점차 대형화 · 위계화 되고 있다.[63]

이처럼 불공정한 하도급이 지속되는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투입인력 중심의 대가 산정을 벗어나지 못해 고급 인력양성이 어렵고, 시스템 품질 저하되며, 기업의 소프트웨어개발 품질관리 역량이 취약하게 되고, IT서비스 수 · 발주 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아 해외진출의 장애로 작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업의 수익구조 악화 및 공정경쟁 기반의 조성이 어렵게 되어 소프트웨어 내수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어 소프트웨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64]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관련 부처의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정기적인 하도급실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하도급계약 교육, 승인된 하도급계약의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적극적인 홍보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질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62) 이상수, “소프트웨어 하도급계약 관련 법제 동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책연구센터, 2008, 59면.
63) 김주일, 하도급 구조와 고용관계 토론회 발제문, 한국노동연구원, 2005, 136면.
64) 최경진, “소프트웨어 산업의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20~21면.

6. 소프트웨어 공동 활용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나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영세중소업체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구입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13년 국가연구시설 · 장비의 운영 활동 고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국가연구시설 · 장비 총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 관련기관 및 범부처적 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에 관한 범부처적 협력시스템이 구축되고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장비, 시설 등에 대한 민간업체(특히 중소업체)에 대한 공동 활용 정책이 추진된다면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제4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조성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기업과의 지식재산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외국기업의 특허공세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제소 대비 피소 건수는 '07년 이래 '12년 5월까지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콘텐츠가 한류를 타고 확산되면서 해외에서 불법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음악, 드라마, 영화 등 한국 저작물의 불법이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에 대한 침해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 대상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및 분쟁대응방안 등에 기한 기초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이 낮은 개도국에서의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기술 부족, 권리자 단체의 역량 저하 등으로 적절한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다.

우수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수요자에 맞는 분쟁단계별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 지재권 분쟁 및 침해 대응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 관점에서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 지재권 침해실태 조사 및 동향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의 지식재산에 대한 해외 분쟁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별 분쟁대응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해외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인식제고를 위한 상담 및 컨설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는 출발점은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법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권리취득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2. 침해대응 현지지원 확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침해발생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 정보, 관련분야의 전문 소송대리인 정보 등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재산권 분야는 IP-DESK를 설치하고 있고, 저작권 분야에서는 해외저작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한류를 동반한 저작권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에서 침해되는 사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유럽 등으로 거점의 확대를 추진하고, 국내에서 실시중인 분쟁예방 컨설팅, 소송보험가입유도 등 분쟁지원 서비스를 해외 기업들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IP-DESK와의 연계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저작권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일본, 유럽 등으로 설치지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침해 발견 시 신속하게 관련 기업과 해외 지식재산센터나 해외저작권센터로 통지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경찰과의 연계와 인터폴을 활용한 침해 단속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국제 공조체계 확립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의 당면문제이다.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국 지재권 집행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국제공조체계를 얼마나 공고히 하느냐가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의 초석을 마련하는 길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국제공조체계는 두 가지 방향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식재산권 유관기관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공조채널을 강화하여야 한다. 해외 지재권 보호네트워크 구출을 위하여 정보 및 민간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의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외국 기관 등의 현지 지재권 관련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하여 교육 연수를 해 주는 등 국내 지식재산 보호시스템을 전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친지재권 환경 조성을 위해 WIPO와의 협력 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제 인터폴과 공조하여 주요 침해국가에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지식재산권 당국 간 협력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증진하여야 할 것이다.

••• 제5절 지식재산권의 국제협력 확대

1. WIP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논의 참여 확대

가. 지식재산분야 국제규범 형성에의 적극 참여

국내규범의 국제화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다자간 논의는 주로 WIP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작권에 관한 주요 의제를 다루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에서는 2012년 11월 제25차 회의에서 2013년 외교회의에서의 채택을 목표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by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조약안을 작성하였으며 2013년 채택되었다.

한편, 신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의제를 다루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 표현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G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는 2013년 10월 개최된 제51차 WIPO 총회(WIPO Assemblies)에서 논의기간을 2014-2015 회계연도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014년 2월 제26차 회의에서는 유전자원, 2014년 4월 제27차 회의에서는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 2014년 7월에는 교차이슈(cross-cutting session)에 대해 논의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논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현재까지 도출된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단일문안을 바탕으로 국내 법제도와의 충돌여부 등을 검토한 후, 2014년 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WIPO를 중심으로 한 협력 활동 이외에도, 글로벌 지식재산 논의의 다변화에 따라, 특허와 보건분야(WHO), 기후변화협약(UNFCCC) 관련 지재권 이슈, APEC의 지식재산전문가그룹(IPEG) 회의 및 기업인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에서의 지재권 논의 및 OECD 지재권 업무관련 위원회 협력 강화 등 지식재산권 논의에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신규 가입에 따른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특허청에서는 특허의 절차적 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기 위한 특허법조약(PLT)의 취지를 반영하도록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제51차 WIPO 총회 기간, IP5 특

허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선진 5개국 특허청간 특허심사 하이웨이(IP5-PPH)[65] 시행에 합의하였다. 이에 특허청은 IP5가 향후 다자간 PPH가 가능하도록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표준 요건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난 2012년 상표 · 디자인 제도의 국제적 통일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이하, '싱가포르 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싱가포르 조약을 반영, 2011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기간 미준수시 구제수단 신설하였다. 2011년 위성으로 송출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불법적인 배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이하 "브뤼셀 협약")"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신규 조약 가입에 따라 관련 국내 지식재산권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위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규범이 다양한 다자간 포럼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국제규범에 대한 아젠다를 개발하는 등 이를 국제규범 형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나. 지식재산분야 국제협상의 총괄 · 조정 메커니즘 구축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 등 지식재산권 각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논의를 총괄 ·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의 논의는 각 권리별 · 이슈별로 국제기구, 양자조약, 다자조약 등 다차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세계 통상환경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 보호집행을 위한 정책방향을 각 지역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에 따라 다르게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범부처 차원의 협력 매커니즘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 협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공통된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협상방향을 도출하여야 한다. 그 후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신지식재산권 등 각 권리별, 협상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보호 및 집행수준을 결정하여 일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65) 특허심사하이웨이(PPH)란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개발도상국 지식재산권 제도 지원

가. IP-ODA를 통한 제도 구축 및 집행수준 향상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ODA 기본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 시행령을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원조 수요가 많은 8대 분야[66]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공적개발원조[67](이하, 'IP-ODA')를 국제개발협력회의와 연계(ODA 목록에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로 연계될 수 있는 최빈 · 개도국 지식재산 나눔사업 공동수행을 위한 특허청-삼성전자 간 MOU 체결(2011년 1월) 등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민-관 파트너쉽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이 추진한 대표적인 IP-ODA는 최빈 · 개발도상국에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개도국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주는 적정기술 보급사업[68], 우수상품의 브랜드 획득 지원 사업이다. 또한 특허청은 국제구호 NGO인 "굿네이버스", 과학기술자들의 모임인 "나눔과 기술(Sharing and Technology Inc.)" 등과 함께 지식재산 나눔운동 추진한 바 있다.[69]

현재 IP-ODA 사업이 특허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작권 분야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전분야로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역량에 맞는 IP-ODA 모델을 개발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할 필요가 있다.

나. 개발도상국 내 현지 센터를 통한 집행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WIPO와 공동으로 "WIPO Study Visit"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6) 주요 지원 분야인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 에너지, 범분야(환경, 여성 등)이다.

67)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에 관여하는 국제기구)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차관(Concessional Loan)을 말한다.

68) 특허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 사례로는 2010년 아프리카 차드의 "사탕수수 숯 성형탄 사업" 및 "건망조 제조기술 제공"이 대표적이다.

69) 2012년 특허청과 국제 비정부기구(NGO) 해비타트는 네팔 떠라이지역에 대나무 주택의 단열성능을 높일 수 있는 건축 기술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개발도상국과의 저작권 제도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WIP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 프로그램을 저작권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경우 2005년 "해외저작권센터 본부"를 설치하여 중국 북경 저작권센터, 태국 방콕저작권센터, 필리핀 마닐라저작권센터, 베트남 하노이저작권센터를 두고 있고,[7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희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하여 해외 진출기업이 직면한 현지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정부 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현지의 지식재산 센터를 통하여 개발도상국과의 법제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의 '통합 IP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통한 IP센터'에서는 현지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및 컨설팅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실태 등 분쟁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지식재산 분쟁 다발지역의 분쟁지원 체제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공통 지식재산권 분쟁이슈를 갖는 관련 기업들 간의 분쟁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해 당사국의 지식재산권 집행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전담 해외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해외 주재원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현지 당국과의 협력 및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증진해야 한다.

70) 이들 현지센터에서는 현지 무료 법률 컨설팅 및 구제조치 지원사업, 한국 저작물의 중국 내 인증 및 등록지원, 현지 주요단체와의 네트워킹 및 교류협력, 저작권 관련 최신 정보제공, 불법 저작물 유통 피해 실태 관련 조사 · 연구, 저작권 보호 매뉴얼 제작 등 활동을 하고 있다.

••• 제6절 신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1. 식물신품종 심사체계 및 침해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

식물신품종의 육성은 종자산업 발전의 시발점으로서 농업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식물신품종에 대한 법적 보호를 통해 육종가의 육종의욕을 촉진시킴으로서 우수 품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품종보호제도는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또 다른 육종가가 새로운 품종육성을 위한 육종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빠른 기간 내에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육종가 간에 더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고, 기존의 품종과 다른 특성을 가진 품종을 육성토록 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품종 및 종자에 대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촉진하게 할 수 있다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품종보호 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종래 특허로만 보호가 가능하던 식물에 대해 품종보호제도의 이용이 증가와 함께 관련 분쟁사례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효율적인 법집행과 운용을 해 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현재 UPOV의 식물품종 데이터베이스인 PLUTO(Plant Varieties in the UPOV system : The Omnibus)에는 각 품종의 품종명칭, 품종보호 등록일 및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식물의 생리 형태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없어 특허성 여부 판단에 사용하기 미흡한 점이 있으나 WIPO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71] 향후 식물의 생리 형태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요청하여 식물신품종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는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고, 지식재산 창출 및 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 및 활용 가치가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생물자원은 의료, 에너지, 환경, 식량 등 인류

71) 특허청, 「최근 UPOV 회의동향 및 주요국 식물품종 보호체계 연구」, 2012, 54면.

의 난제를 해결할 핵심 요소로서 국가 자산으로서의 잠재적, 실제적 가치 보유하고 있어서 생물다양성협약 등에서 개발도상국은 자원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이익 공유를 주장하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인식한 선진국은 국가 전략적 생물자원 확보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대표 생물자원기관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생물자원 최대 보유국으로 자국의 자생생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물자원을 대량 수립 · 축적하고 있고, 유럽은 생물자원 주도권 확보를 위한 "EU 생물다양성보전 2010 계획(Biodiversity Action Plan)"을 통해 유럽연합 국가 간 연계를 구축하였고, 일본은 생명다양성 국가전략(환경성, 1995)을 수립하고 국립과학관 및 생물다양성센터를 주축으로 한 국가 중심의 생물자원종합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 OECD는 "인체자원은행과 유전학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접근 이용 등에 관한 권고안(OECD Guidelines on Human Biobanks and Genetics Research Database)"을 채택하였다.

〈표 4-6-1〉 생물자원의 종류와 소관부처 및 관련 법률

생물자원의 종류	소관부처	관련 법률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산업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분야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분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연구 · 개발분야	미래창조과학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러한 통합기관은 특히 ABS 의정서[72]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 국가 생물자원보유 현황의 실태조사를 총괄하여, 국제사회의 자원주권에 대응하여 자생자원에 대한 기초 생태정보 조사 강화를 통한 국내 유용 생물자원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서비스(KOBIS)의 연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생물자원 정보의 추가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2013년 10월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구축한 특허 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72)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73] 생물자원 목록 데이터베이스화와 더불어 생물자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계통수(족보) 작성 및 유전체 다양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바이오산업(Biotechnology Industry)[74]의 발전에 따라 국내외 생물자원을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생물자원 연구 성과물 기탁 및 등록제도 강화와 생물자원의 분양 ·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공유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전통지식 ·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체계 구축

전통식품, 전통의약, 전통예술 등 전통자원의 부가가치가 점차 부각되고 있으나, 국내 전통자원의 발굴 · 현황 파악 및 국제적 대응 기반 미흡하므로 전통지식 ·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전통지식(TK; Traditional Knowledge) 보호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통지식의 보호관점에 따라 건강의 관점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문화 및 지식재산권 관점에서는 유네스코(UNESCO), 환경의 관점에서는 국제환경회의(UNEP) 및 생물다양성협약(CBD), 지식재산권 관점에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국제신품종보호동맹(UPOV), 무역 · 개발의 관점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국제개발회의(UNCTAD), UN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통지식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제도의 역할은 국제적인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전통지식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은 식량, 농업, 환경(특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전통의약품 관련 보건 등 무역 및 경제발전 측면에서 다양하게 논의된다. 이와 같이 전통지식에 관한 논의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나, 방어적 보호와 적극적 보호 두 가지 보호방안[75]으로 정리될 수 있다.

---

73) 특허 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는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이용하는 특허 생물자원들의 현황을 파악 ·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 KIPO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생물자원 특허정보 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10월에 특허 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을 완료하였다. 특허 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는 최근 2년 반 동안 공개된 특허들 중에서 식물, 미생물, 동물, 바이러스, 곤충 등 생물자원에 관한 약 7,973건의 특허들을 추려 해당 특허의 내용을 분석 · 가공했으며 생물자원의 종료, 용도, 입수경로, 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74) 바이오산업(Biotechnology Industry)은 바이오기술(Biotechnology,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 내지 '생물유전자원' 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 진단 · 치료 등에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한국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 「바이오산업과 나고야의정서」, 2011, 4면).

75) 방어적 보호는 관습적으로(customary)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전통지식 관련 지식재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적극적 보호는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즉, 적극적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어적 보호의 방법으로 국내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다. 그 핵심은 전통지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 등에 관한 DB는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76] 이를 통합 ·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간행물 및 DB의 소유권 근거, 기술내역, 분류방법 등의 기술표준화 연구가 선행되어, 전통지식 ·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를 위한 분류체계 설정 및 지표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통지식 ·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여부 및 방식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이 필요하다.

4. 지리적 표시의 국내 · 외 권리보호 강화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란 일반적으로 상품의 특정 품질 ·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해 지리적 근원을 나타내주는 표시를 말한다. 이는 신지식재산권의 하나로 재산권의 관점에서 보호되고 있으며, WTO TRIPS는 지리적 표시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여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TRIPS 협정 제24조 제9항). 지리적 표시는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 또는 원산지 표시), 원산지 명칭(appellation of origin)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지리적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 보호 및 집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이외에도 해외에서의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오 · 남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수집 ·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정부차원, 기업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 · EU 및 한 · 미 FTA 체결 시에도 주요 관심사였듯이, 지리적 표시(원산지)가 물품의 가치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대한 국민의 요구 급증하고 있으므로 주요 세관별로 빈번성, 심각성 등을 고려한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등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직원 교육 강화 및 민간전문가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미, 대EU 중소 수출기업은 FTA 지리적 표시 관리능력 ·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서 제외될 우려가 상존하므로, 대미, 대EU 수출업체별 관세사 등 컨설턴트 인력 풀을 형성하여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76) 국가문화유산 종합 DB, 기록물포털 (내고장 역사찾기), 지역정보포털, 민속아카이브, 전통향토음식자원포털, 전통의학정보포털, 한의학 지식정보 자원 DB, 한국전통식품포털, 한국전통소리문화 DB, 문양원형 콘텐츠, 한국고전종합 DB, 한국가사문학 DB, 한반도 단오문화 DB 등.

5. 빅데이터(Big Data), 퍼블리시티권 등의 보호정책 수립

빅데이터란 소프트웨어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정도의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로서,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정도 크기의 대용량 데이터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가 대용량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체계화를 위한 도구, 플랫폼, 분석기법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변화하고 있다. 즉,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을 말한다.[77] 빅데이터의 활용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그 이유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현상을 감지하거나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거나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78]

빅데이터가 어떠한 형태로 구현되는가에 따라 어떠한 권리로 보호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면 BM 특허가 될 수 있으며, 빅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특성정보를 구축하는 등 경영상 정보 등으로 활용된다면 영업비밀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는 적절한 활용은 지식재산권 영역과도 관계가 깊고, 이를 활용하고 보호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리키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겁다. 개인의 인격적 징표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은 문화산업 · 스포츠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퍼블리시티 대상도 초상, 음성, 서명, 성명(예명, 애칭 등), 그룹명, 필적, 경력, 스포츠 선수 일러스트 · 캐리 커쳐, 경기장면, 의상, 소품, 애완동물 등 이용가능한 모든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퍼블리시티 대상도 변화할 것이 명백하다.[79]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법적, 경제적 관점에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보호정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77) 강만모 · 김상락 · 박상무, "빅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정보과학회지 30(6)」, 한국정보과학회, 2012, 25면.
78) 윤미림, "빅데이터 비즈니스 활용과 과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Issue Report, 2012, 11~13면.
79) 홍승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실태 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179면.

부 록 (Appendix)

1. 전문용어

2. 주요통계

3. 참고문헌

1 전 문 용 어

1 제1장 지식재산 보호집행 정책 현황

-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1967년 설립되었으며 1974년 12월 17일 제29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3346(ⅩⅩⅠⅩ)호에 의거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 Online Service Provider)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이용자가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송신하거나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자를 말하며 저작권법 제2조 30호에 의해 규정

2 제2장 지식재산 보호환경

- 웹하드 등록제 : 웹하드 사이트와 p2p 서비스를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문제가 되어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는 것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규정을 강화한 것
- BSA(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Business Software Alliance) : '안전하고 합법적인 디지털 세상' 이란 슬로건 아래 1988년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만든 연합체로서 전 세계 85개 국가가 가입
- 신지식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설계,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 UPOV(국제신품종보호동맹,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은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간 기구로서 지난 1961년 식물의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된 후 1968년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을 중심으로 식물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가맹각국이 보장하자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창설

- WTO/TRIPS(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자간 규범에 관한 협정. 기존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 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었었고, 이에 따라 국제적인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한 가지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됨
- 골든시드 프로젝트(GSP; Golden Seed Project) :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총 사업비 491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R&D사업이며, 대상품목은 채소 · 원예 · 수산 · 식량 · 종축 등 5개 분야 임
- FTA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

3 제3장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성과

-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 디지털 포렌식이란 범죄수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기법의 일종으로, 각종 디지털 데이터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
- ICOTEC(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 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협력, ICOTEC조직 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 컨퍼런스로서 다양한 저작권 기술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 지역의 지식재산보호의 활성화 및 변리서비스의 접근 용이성 제공 등을 목적으로 특허청이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

- ADR(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엄격한 소송절차에 따른 법관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에 의하지 않고 조정 · 중재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제도
- US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운영상 독립성을 가진 준(準) 사법기관으로서, 미국의 대외교역이 국내생산, 고용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 간의 거래 및 관세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대통령, 의회 및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

4 제4장 지식재산 보호현안과 향후 대응방향

- 인카메라 심리(In-Camera inspection) : 정보공개소송에서 공개청구대상에 포함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직접 보고 확인하여 판단하기 위해서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공개가 청구된 대상정보를 판사실에 가져올 것을 명하고, 법관만이 당해 정보를 열람하는 심리
- 직권조정결정제도 : 피신청인이 침해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줘 소송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제도
- 기관중재제도 :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중재를 부탁할 (상설) 중재기관을 당사자 간에 합의 · 결정해 두는 것을 말함

2 주요통계

1-1 산업재산권보호 주요 통계

1 해외지재권보호센터(IP-Desk) 상담실적

● 2012년도 주요 해외지재권 상담실적

구 분		합계	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	방콕	하노이	호치민	LA	자카르타
지재권 상담		3,107	365	298	577	565	334	250	13	70	627	8
상표 출원	접 수	548	81	79	95	75	49	48	4	39	71	7
	출원완료	395	73	52	88	54	22	36	13	15	39	3
침해조사		22	2	10	2	2	3	2	–	1	–	–
설명회 개최		38	3	8	5	6	2	2	–	2	9	1
협력채널 구축		158	17	22	4	22	22	64	4	1	2	–
정보제공		255	60	19	13	18	52	26	3	16	48	–

● 연도별 해외 지재권 피침해 신고, 상담 현황

(단위 : 건)

연도	'08	'09	'10	'11	'12	'13.9.
총계	68	94	141	116	138	272
북경	15	13	16	24	8	6
상해	7	19	20/19	36	26	50
청도	13	18	33	17	10	76
광주	20	21	45/44	11	46	48
심양			7	9	5	5
방콕	13	8	6	11	9	6
하노이			14/16	3	3	
호치민		15		5	8	1
자카르타					2	
LA					21	78
뉴욕						2

● 2012년도 행정단속 주요사례

기업명	제품	피침해권리	침해조사지원 결과	몰수가액
B사	의류	상표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17,627벌 몰수)	1,800백만원
Z사	아동복	상표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10,750벌 몰수)	920백만원
E사	화장품	상표 (온 · 오프라인)	'11년 기획침해조사 후속조치로 행정단속 지원 (12,000개 몰수)	200백만원
H사외 3개사	자동차 부품	상표	'11년 기획침해조사 후속조치로 행정단속 지원 (2,800개 몰수)	130백만원
J사	홍삼	상표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1,058세트 몰수)	90백만원
M사	콘텍즈렌즈 케이스	상표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400박스 몰수)	50백만원
S사	손톱깎이	상표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4,800개 압수)	30백만원
L사	바닥재	상표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41개 압수)	20백만원
D사	유압 작동유	상표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88통 몰수)	20백만원
B사	미역	상표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포장지 9,760개 몰수)	10백만원
S사	화장품	상표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150개 몰수)	5백만원
소 계				3,275백만원

2 상표권 위반 주요 단속 통계

● 특허청(특별사법경찰대)의 위조상품 단속 실적

(단위 : 명, 점)

구 분		'10.9~12월	'11년	'12년	'13.9월	계
형사입건	인원	45	139	302	300	786
	압수물품	28,629	28,589	131,599	221,915	410,732

● 관세청(특별사법경찰대)의 위조상품 단속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10.12월		'11년		'12년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상표권 침해	40	677	485	5,965	508	7,642	1,033	14,284
저작권 침해	3	68	37	1,590	66	1,604	106	3,262
특허권 침해	–	–	–	–	1	66	1	66
기타 권리 침해	–	–	8	6	13	20	21	26
계	43	745	530	7,561	588	9,332	1,161	17,638

● 검찰청의 위조상품 단속 실적

(단위 : 명)

구 분	'10년	'11년	'12년	계
단속인원	81,831	82,966	84,001	248,798

● 경찰청의 위조상품 단속 실적

(단위 : 건, 명)

구 분	발생건수	검거인원	기 소
'10년	3,172	4,466	3,642
'11년	2,178	2,831	2,093
'12년	1,640	2,378	1,732
계	6,990	9,675	7,467

● 해양경찰청의 위조상품 단속 실적

(단위 : 건, 명, 억원)

구 분	검거건수	처 리				금 액
		구속	불구속	이첩	계	
'10년	38	7	53	–	60	247
'11년	52	6	67	–	73	82
'12년	42	3	59	–	62	547
'13.10월	25	13	54	2	69	263
계	157	29	233	2	264	1,139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의약품 단속 실적

(단위 : 개, 명)

구 분	'10년	'11년	'12년	계
온라인게시물 삭제	822	2,409	10,912	14,143
고발 · 수사의뢰	48	15	14	77

● 지방자치단체의 위조상품 단속 실적

(단위 : 명, 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9월	계
시정권고	3,570	2,044	2,325	1,778	9,717
시정여부 확인	–	–	92	359	451
적발물품	19,234	10,821	9,246	8,596	47,897

●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실적

(단위 : 건)

구 분	'10년	'11년	'12년	'13.9월	계
오픈마켓(판매중지)	2,890	3,566	4,256	3,081	13,793
쇼핑몰(접속차단 · 폐쇄)	207	364	505	682	1,758
계	3,097	3,930	4,761	3,763	15,551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쟁해결 지원

●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법률상담 연도별 실적

구 분	지재권 관련 상담					서류 작성	기타	합계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내방자 상담	순회 상담	소계			
'07년	2,348	904	915	540	4,707	405	48	5,160
'08년	2,736	1,142	1,122	719	5,719	458	63	6,240
'09년	3,269	1,175	1,261	682	6,387	462	74	6.923
'10년	3,658	1,085	1,155	710	6,608	500	13	7,121
'11년	4,445	1,290	1,652	622	8,009	652	9	8,670
'12년	5,883	1,565	2,289	582	10,319	801	12	11,132
'13.10	10,488	751	2,014	406	13,659	599	7	14,265

●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직접대리 지원 실적

(기준 : 2013.10.31)

구 분	'11년	'12년	'13.10.
지원 건수	27	29	14

● 침해 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실적

(기준 : 2013.10.31,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10.
지원 건수	19	21	14
지원 금액	103	111.25	73

4 대체적 분쟁해결(ADR) 지원 현황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및 감정 현황

〈 연도별 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건수 〉

분야 / 연도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2차적 저작물	저작 인접물	데이터 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계
1988~2007	315	118	5	192	7	154	31	7	46	2	33	3	211	1,124
2008	9	15	–	5	–	10	3	–	4	–	1	2	13	62
2009	10	3	1	7	–	11	–	–	2	1	4	–	16	55
2010	18	6	–	12	–	7	2	1	1	–	7	–	8	62
2011	26	1	–	11	–	7	5	2	–	–	11	–	19	82
2012	17	13	–	1	–	4	–	–	–	–	10	–	33	78
2013.6	12	2	1	5	–	3	3	–	–	–	6	–	23	55
계	407	158	7	233	7	196	44	10	53	3	72	5	323	1,518

〈 연도별 감정 의뢰 현황 〉

구분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기타
2008년	1	–	–	–	–	–	–	–	47	–
2009년	–	1	–	–	1	–	–	–	42	–
2010년	8	1	–	5	1	–	–	–	38	1
2011년	4	1	–	3	1	–	1	–	27	–
2012년	7	2	–	7	–	1	1	–	40	1
2013년	1	2	–	3	–	–	–	2	22	2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

〈 연도별 조정 신청과 성립 현황 〉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신청	4	2	13	15	7	5	3	15	5	5	5	5	5	4	4	3	2	2	104
성립	2	–	7	4	3	–	–	2	1	1	–	1	1	–	1	–	–	2	25
불성립	2	2	6	11	4	5	3	13	4	4	5	4	4	4	3	3	2	–	79

*출처 : 특허청 2009 지식재산백서, 2009년~2012년 자료는 정보공개시스템 공개정보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

〈 연도별 분쟁상담 및 신청 · 조정 처리현황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분쟁조정 상담건수		10,696	13,583	17,993	22,829	24,915
분쟁조정 신청건수		3,681	3,307	4,521	4,546	5,596
신청철회		148	143	290	367	920
조정불능/기타*		871	679	924	791	777
타 기관 이첩		99	26	159	384	351
분쟁 조정건수		2,513	2,459	3,148	3,004	3,548
분쟁 해결	합의종료	2,017	1,911	2,586	2,527	3,029
	조정안 수락	107	175	24	20	21
	소 계	2,124	2,086	2,610	2,547	3,050
분쟁 미해결	조정안 불수락	27	25	19	9	7
	조정절차 거부	362	348	519	448	491
	소 계	389	373	539	457	498
분쟁해결율**		84.5%	84.8%	82.9%	84.8%	85.9%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 현황

〈 2005년 ~ 2012년까지의 신청 · 조정 처리현황 〉

처리 결과	이전	말소	기각	당사자 이전 합의에 의한 취하	수수료 미납 등에 의한 취하	소제기로 인한 조정절차 중지	총 건수
사건 수	92건	163건	18건	41건	13건	1건	328건

5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처분

● 무역위원회(KTC)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현황

〈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현황 〉

(단위 : 건)

구 분		'01이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지재권 침해	상표	88	1	–	–	4	–	1	–	1	3	1	3	102
	특허	6	2	4	3	1	4	1	1	2	7	3	5	39
	실용신안	–	–	–	–	–	–	–	1	–	2	1	–	4
	디자인	7	–	–	1	1	–	1	1	2	1	–	–	14
	저작	12	–	–	–	–	–	–	–	–	–	–	–	12
	영업비밀	2	1	1	–	–	–	–	–	–	–	–	–	4
	소계	115	4	5	4	6	4	3	3	5	13	5	–	167
원산지 위반		54	4	–	1	–	–	1	2	3	2	2	2	71
허위과장표시		–	–	–	–	–	–	–	1	–	–	–	–	1
수출입질서저해		63	1	–	–	–	1	–	–	–	–	–	–	65
계		232	9	5	5	6	5	4	6	8	15	7	10	312

1-2 저작권보호 주요통계

1 SW 불법복제 방지 활동

● 연도별 단속 · 점검 현황

구 분(단위, 건)	'09	'10	'11	'12	'13.6	계
점검 기관수	809	1,161	1,028	602	205	3,805
SW 체크리스트	822종	1,200종	1,273종	1,392종	1486종	–
단속기관 SW설치수량	59,087	108,669	81,943	54,799	11,723	316,221
불법복제율(%)	35.77	24.56	30.12	35.37	41.20	–

● 연도별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구 분(단위, 건)		'09	'10	'11	'12	'13.6	계
오프라인	신고접수	83	71	268	42	61	525
	처 리	45	58	263	42	61	469
온라인	신고접수(오픈모니터링 포함)	262	2,085	13,859	115,610	30,272	162,088
	처 리(시정권고)	3,480	19,816	29,566	201,295	52,325	306,482

2 해외 저작권 지원 현황

● 2012년 구제조치 지원 현황

2012년	북경 (345)	경고장 발송(322)	322	• 한국영화 '오직그대만' 불법 유통 저작물 삭제조치 사례(5건) • 한국웹툰 불법유통 저작물 삭제조치 사례(1건) • 한국영화 '만추' 불법유통 저작물 삭제조치 사례(20건) • 한국영화 '건축학계론' 불법유출 저작물 삭제조치 사례(4건) • 한국영화 'I AM' 불법유통 저작물 삭제조치 사례(5건) • SBS콘텐츠허브 행정처벌 신고 지원 • MBC "볼수록애교만점" 등 불법유통 저작물 삭제조치 사례(1건) • 사진작가 정은진 사진저작물 불법유통 경고, 삭제조치 사례(30건) • 마일랜드 만화(웹툰)저작물 경고, 삭제 조치 사례(1건) • 영화 '추적자' 등 4부 불법유통 저작물 삭제조치 사례(23건) • 웹툰 '다이어터' 불법유통 저작물 삭제조치 사례(1건)
		증거보전(0)	–	
		행정처벌(23)	23	
	방콕 (13)	경고장 발송(13)	13	
		증거보전(0)	–	
		행정처벌(0)	–	
	마닐라 (0)	경고장 발송(0)	–	
		증거보전(0)	–	
		행정처벌(0)	–	
	합 계		0	

● 2012년 해외 합법이용 계약 지원 현황

구 분		건수	계약금액 (천원)	내 용
2012년	북경 (30)	41	비공개	• 한국 드라마, 영화 등 488개 작품 저작권 인증 유통 지원
	방콕 (0)	–	–	
	마닐라 (1)	1	–	• YTN와 필리핀 SKY Cable사간 YTN방영권 계약 통역 지원(9월)
	상해 (1)	1	4,000 (판매액 6%)	• 원수연 작가 만화 '풀하우스' 상해 연극공연 저작권 계약 (2월)
	힙계	43	4,000	

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2013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구 분	연수일	지 검	장 소	이수자(명)	비 고
제1차	2.26(화)	서울	저작권교육원	72	성인
제2차	3. 5(화)	서울	저작권교육원	90	성인
제3차	3. 7(목)	의정부	저작권교육원	106	성인
제4차	3.14(목)	부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87	성인
제5차	3.19(화)	인천	저작권교육원	80	성인
제6차	3.26(화)	수원	저작권교육원	100	성인
제7차	4.10(화)	수원	저작권교육원	55	성인
제8차	4.25(목)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47	성인
제9차	5. 7(화)	의정부	저작권교육원	48	성인
제10차	5.16(목)	춘천	원주역사박물관	45	성인
제11차	5.21(화)	인천	저작권교육원	60	성인
제12차	5.23(목)	창원	창원문성대학교	51	성인
제13차	5.30(목)	대전 · 청주	예람인재교육센터	55	성인
제18차	6.29(토)	수도권	저작권교육원	81	성인
계				896	

4 저작권 등록 현황

● 저작권 등록 현황

종류 \ 연도		'08	'09	'10	'11	'12	'13년 6월	계
저작물	어 문	1,878	2,309	3,776	3,612	3,742	1,843	17,160
	음악	744	987	1,387	1,261	1,446	715	6,540
	연극	16	27	25	20	24	14	126
	미술	4,278	5,075	4,632	5,179	7,092	4,297	30,553
	건축	99	117	84	246	57	38	641
	사진	2,993	378	447	281	507	243	4,849
	영상	247	238	676	374	505	220	2,260
	도형	506	400	742	567	528	180	2,923
	편집	1,414	1,082	1,330	1,562	1,823	850	8,061
	2차적	199	279	451	907	645	254	2,735
	프로그램	11,192	11,856	12,483	13,858	14,101	5,706	69,196
저작 인접물	실연	4	93	24	3	30	0	154
	음반	73	1,366	705	230	565	117	3,056
데이터베이스		35	18	86	54	101	21	315
총 계		23,678	24,225	26,848	28,154	31,166	14,498	148,569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계

3 참 고 문 헌

1 제1장 지식재산 보호집행 정책 현황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2011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12
- 특허청, 「21세기 지식재산비전과 실행전략」, 2009

2 제2장 지식재산권 보호환경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3
- 특허청, 「제2차 국가지식재산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 201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지식재산 조사 및 성과분석」, 2012
- 농촌진흥청, 「식물분자육종 기술동향분석 및 기획과제 도출」, 2012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동향」,제23권
- 국립종자원, 「종자관리 주요통계」 , 2013
- 특허청, 「2012년도 지식재산백서」, 2012
- 특허청, 「2013년도 지식재산백서」, 2013
- 특허청, 「2012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 현황」, 2013년
- 특허청, 「신지식재산의 동향분석 및 법적 보호 방안 연구」, 2011
- 특허청, 「신지식재산의 동향조사 및 효율적 정책 대응 방안」, 2010

3 제3장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성과

- 법무부, 「2012년 법무연감」, 2012
- 특허청, 「2012년도 지식재산백서」, 2013
- 특허청, 「'12년 위조상품 소비자 인식도 조사」, 2012
- 경찰청, 「2012 경찰백서」, 2012
- 해양경찰청, 「2012년도 해양경찰백서」, 2012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강국의 주춧돌을 놓다」, 2013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백서」, 2012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 2013. 6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3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ADR(대안적 분쟁해결),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한 현명한 선택」, 2013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2013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도메인이름분쟁백서」, 2012
- 지식경제부, 「2010년 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 및 제조개선 연구(Ⅱ)」, 2010
- 특허청, 「국제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지원방안」, 2006
- 특허청, 「지식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2009

4 제4장 지식재산 보호현안과 향후 대응방향

- 김승조, “비밀정보에 대한 사법심리방법”, 「법학논고」(제40집), 2012
- 강만모 · 김상락 · 박상무, “빅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정보과학회지 30(6)」, 한국정보과학회, 2012
- 배상철, 「침해소송 관련 특허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소송현황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특허청, 2009
- 윤미림, “빅데이터 비즈니스 활용과 과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Issue Report, 2012
- 이상수, “소프트웨어 하도급계약 관련 법제 동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책연구센터, 2008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재권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절성 확보 방안 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 최경진, 「소프트웨어 산업의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 특허청, 「최근 UPOV 회의동향 및 주요국 식물품종 보호체계 연구」, 2012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 관리 방안 연구」. 2012
- 한국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 「바이오산업과 나고야의정서」, 2011
- 홍승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실태 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보고서 집필진

기획 · 편집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고기석 단장 | 권규우 지식재산진흥관 | 이해돈 보호정책과장 | 권영지 전문관

집 필 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조국현 지재권보호경영본부장 | 추형준 분쟁대응팀장 | 황규철 기반정보팀 미국변호사 |
박재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변리사 | 박광호 예방전략팀 대리 | 이훈범 보호지원팀 대리 |
배상엽 보호지원팀 대리 | 차상훈 보호지원팀 주임 | 이현영 경영기획팀 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법제연구팀 책임연구원 | 정석철 침해심의정보팀장 | 신동명 저작권기술팀장 |
박정림 심의조정팀 과장 | 전재림 법제연구팀 주임

저작권보호센터

김좌현 조사홍보팀 팀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성태 IP 법제연구팀 팀장

감 수

외교부 경제공동체과 최윤철전문관 | 법무부 상사법무과 강상묵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김동은사무관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이윤숙사무관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김우석경감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유용신사무관 |
해양경찰청 외사과 조남득반장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이범천사무관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